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55-01

2023년도 학생인권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2023. 12.

- 연구수행기관 : 평화인권교육센터  
연구책임자 :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활동가)  
연구원 : 김대석 (평화인권교육센터 선임연구원)  
연구원 : 이승미 (한국학술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박범철 (경문고등학교 교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글 차 례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가. 연구 배경 .....	3
나. 연구 필요성 .....	8
다. 연구 목적 .....	10
2. 연구 방법 .....	11
가. 연구 절차 .....	11
나. 학교규칙 점검 .....	14
다.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 조사 .....	19
라.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및 사례 학교 면접조사 .....	23
마. 전문가/업무 담당자 자문 .....	26

## 제2장 문헌 및 사회 환경 조사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	29
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	29
나. 국내 제도 및 교육 정책 및 활동 .....	35
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	54
2. 학생생활규정 점검 조사 .....	58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 항목 비교 .....	58
나. 점검 요약 .....	70
3. 소결 .....	74

## 제3장 학생생활규정 조사

1. 연구 절차	79
가. 학생생활규정 조사 방안 구성	79
나. 분석 방법	85
2.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2023년 12월 31일 기준)	88
가. 항목별 결과	88
나. 지역 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	122
3. 추이 분석	139
가. 2016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139
나.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변화	142
4. 소결	154

## 제4장 학교규칙 인식조사

1.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온라인 조사	161
가. 설문 진행	161
나. 조사 결과 : 학생	163
다. 인식조사 : 보호자	204
라. 인식조사 : 교사	212
마. 참여자별 정책 제언	222
바. 추이 및 비교 분석	226
2. 학교 구성원 집단면접조사 등	231
가. 학생	231
나. 보호자	237
다. 교사	242
라. 모범사례 방문조사	248
3. 소결	251

## 제5장 결론과 제언

1.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	257
가. 2017년 정책권고에 기반한 학교규칙의 변화 .....	257
나. 지역별 차이의 확인 .....	259
다. 교육부 고시에 의한 변화 .....	260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	261
가. 2016년 대비 제한적 인식의 변화 .....	261
나. 2023년 인식조사 요약 .....	261
다. 면접조사 요약 .....	263
3. 제언 .....	265

## 참고 문헌 및 부록

1. 참고 문헌 .....	273
2. 부 록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표 .....	275
나.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학생용) .....	283
다.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보호자용) .....	291
라.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교사용) .....	297

# 표 차례

〈표 I-1〉 학교규칙의 구분 .....	3
〈표 I-2〉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	14
〈표 I-3〉 생활규정 점검 항목 .....	15
〈표 I-4〉 학교구성원별 인식조사 항목 (숫자는 문항수, 서술형 제외) .....	19
〈표 I-5〉 대상별 참여자수 추이 .....	22
〈표 I-6〉 [학생인권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집단면접조사 가이드라인 (학생용) ·	23
〈표 II-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	47
〈표 II-2〉 학교현장 학생인권보장 인식조사 항목_학생용 (인권위, 2016) .....	59
〈표 II-3〉 고등학교 학교규칙 모니터링(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7) .....	62
〈표 II-4〉 학교단위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표 (서울시교육청, 2020) .....	63
〈표 II-5〉 대전 학생생활규정 점검 (대전시 인권센터 등, 2021) .....	66
〈표 II-6〉 충남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청남도교육청, 2021) .....	68
〈표 III-1〉 요소별 차이에 따른 비교분석 표기 .....	87



## 그림 차례

〈그림 I-1〉 중·고등학교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연구 진행	11
〈그림 I-2〉 층화포집을 통한 학교 표본 구성	12



## 연구요약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 등에 학교생활에서의 자유권 침해 등에 관련된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규칙이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에 대해 학생, 교사, 보호자 대상 인식조사 및 전국 13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을 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칙운영매뉴얼을 개정하여 안내하였으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매뉴얼에서의 내용 개정 및 학교규칙운영 길라잡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교규칙의 개정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별 개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연구의 필요성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교육기관의 정책 활동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교규칙의 학생생활규정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학생이 얼마나 체감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학생생활규정의 변화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요소에 따른 개선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관련 정책의 전개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이외에도, 2023년 S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학교에서 슬픈 사건들이 있었으며,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 해당 고시에 의한 생활규정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였다. 해당 고시가 학교규칙의 개정에서의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특정 지침(분리조치 등)을 권고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정책이 학교규칙 변화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또한 학생 인식조사를 통해 학생이 체감하는 학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 및 학교 구성원간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학교규칙의 변화라는 규정의 변화로 부족한 지점이 있다. 이러한 부족한 지점이나 과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규정의 변화 외 필요한 정책을 구성해보고자 하였다.
- 특히 이러한 학교규정과 학교문화의 차이를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기반한 정책안을 구성해보기 위해, 학교구성원별 면접조사 및 모범사례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풍부한 해석과 정책으로의 연결점을 구성해보자 하였다.

###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관련 정책이나 활동을 사례를 통해 찾아보았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및 권고에 따른 학교규칙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 둘째, 학교규칙 내 학생생활규정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규정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규정이 실제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 셋째, 학교규칙 내 생활규정 중에서 개선이 지체되는 항목과 규정과 인식간 차이가 큰 항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항목이 지체되거나 인식 격차가 생기는 이유를 학생, 보호자와 교사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 넷째, 시·도교육청의 학교규칙에 관한 정책을 파악하고, 학교별 학교규칙의 변화와 학교규칙의 변화가 학교인권문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및 활동 방안을 찾아보았다.

##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의 점검 및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하는 두 가지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1) 표본 구성

- 전국 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로서, 전체 5,732개교의 10%에 해당하는 총 538개교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두 조사를 동일한 표본으로 진행하였다.
- 표본은 학교요소와 지역요소를 고려한 층화포집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였다.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학교요소 -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 ✓ 학교요소 - 설립유형: 국립+공립/ 사립
  - ✓ 학교요소 - 고등학교유형: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자율형고
  - ✓ 학교요소 -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 ✓ 지역요소 - 광역시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가나다순)

## 2) 학교규칙 점검

- 2016년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였다.
  - ✓ 규정 체계 : 학생인권/기본권 명시, 차별금지 명시 등  
: 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등
  - ✓ 학생자치활동: 임원자격제한 여부, 학생회 의결사항 승인요구,  
: 학생생활지도 활동
  - ✓ 용모/ 복장 : 모호한 제한  
: 두발 길이, 퍼머, 염색 등 제한  
: 화장/ 장신구 제한 등
  - ✓ 휴대폰/소지품: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 휴대폰 일괄수거 등
  - ✓ 상벌점제/징계: 상벌점제 운영,  
: 징계 근거, 반성문/서약서 등
- 점검결과(12월 31일 기준)를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 ✓ 학교요소 및 지역요소별 1차 분석을 하였으며, 요소별 유의확률(0.01미만)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 ✓ 2016년 결과와의 항목별 추이분석을 하여 별도로 해석하였다.
  - ✓ 9월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1차점검 결과(7월1일 기준)와 비교하고 해석하였다.

## 3)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학교규칙 인식조사

- 표본학교의 학생/보호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 20,262명, 보호자 5,221명, 교사 2,800명이 참여하였다.
- 학교규칙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인식조사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참여 대상별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 ✓ 학생 : 학교규칙/ 용모.복장/ 휴대폰 사용/ 자치활동 및 참여권/ 상벌점제  
: 학교의 차별환경
- ✓ 보호자 : 학교규칙/ 용모.복장/ 휴대폰 사용/ 보호자 참여
- ✓ 교사 : 학교규칙/ 용모.복장/ 휴대폰 사용/ 자치활동 및 참여권/ 상벌점제  
: 학교의 차별환경

#### 4) 면접조사

- 학교규정 점검 결과와 인식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학생/보호자/교사 그룹별 집단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점검 결과와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 또한 2개 학교를 방문하고, 시·도교육청 방문 및 전화면담을 통해, 학교규칙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정리하였다.

## 제2장. 문헌 및 사회 환경 조사

학생들의 학교생활 규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국제 기준 및 국내 법률과 국가인권위 권고 및 교육기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관련 조사를 항목 비교 및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 국제적 기준 및 국내 관련 법의 개정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주에 속하며,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모든 권리를 학교생활에서도 누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논평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와 함께, 학생의 복장 및 용모에 대한 제한을 자유권 침해로 보고 있다.

이러한 권고와 함께,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 ○ 학생생활규정에서의 인권침해 비교 항목 구성

일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단체들은 지역내 학교의 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교 규칙의 개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로 모호한 표현과 자의적 기준 및 권위주의적 규정의 해소, 학교규칙 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을 다루었으며, 다른반 출입 금지, 온라인 단체방 개설 제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 사회변화에 따른 제한을 추가 점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기존 실태조사 항목을 상호 비교하여, 본 연구 중 학교규칙 점검 항목 구성에 반영하였다.

## 제3장. 학생생활규정 조사 결과

### 1) 2016년 결과와의 비교

- 2016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생활규정 전반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규정에서의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 차별금지조항의 구성이 70% 가까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용모 및 복장에 제한도 90%대에서 60%대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30~40%정도의 학교에서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항목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그 외 항목 중 하나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적었다.
- 청소년 정치참여권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20% 정도의 학교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법류 위반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요소별 비교

-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고, 지역별 경향이 항목에 상관 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즉, 학생인권/기본권 명시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은 규



정의 학생참여, 용모/복장의 제한 없음과 같이, 다른 항목에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항목의 답변이 많았다.

- 학생인권조례 관련 지역별 비교에서는, 규정 점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제정시도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와 광역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 유무 외에도 제정 과정에서의 지역 내 노력과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학교요소별 비교에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규정이 중학교에 비해 학생자치활동이나 제한이 적은 편이나,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은 중학교가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항목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제4장. 학교규칙 인식조사 결과

### 1) 2016년 결과와의 비교

- 2016년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학생생활규정을 알고 있으며 (94%), 상벌점제 운영하는 학교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 교육청에서 상벌점제 대체방안에 대한 안내 및 교육적 지도 방법에 대한 정책을 전개한 바 있다.
- 반면 규정의 개정에서의 학생참여 및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다.

### 2) 규정에 없는 교내 활동에 대한 제한의 등장

-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제한규정은 (1) 학교나 교사 임의로 제한하고 있고, (2) 학생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제한이며, (3) 해당 제한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 또한 생활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제한이라는 점에서도, 가시화되지 않는 제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3) 학생 - 보호자/교사 사이의 새로운 갈등요소인 휴대폰 사용

-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문항이었다.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높은 보호자와 교사 그룹과 그러한 인식이 적은 학생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교육3주체가 합의하여 만드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인식차는 갈등요소가 되기 쉽다. 교사나 보호자의 휴대폰 사용은 대상이 아니기에, 학생에 대한 일방적 통제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
- 면접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차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우려를 표현하고 상호 논의하는 자리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막연하게 상대에 대한 반감을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 제5장. 제언

### ○ 학생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 및 최소한의 제한 필요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교육받을 권리 포함) 및 기본권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학생의 학교생활규정에서의 제한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생활지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 ○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제한의 구성 원칙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라도,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한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에 학생의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의결권이 포함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 민주적 시민공간으로서의 학교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생활규정의 규정이 중요함에도, 체감하는 학교문화가 충분히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지역 내 논의가 학교규정 및 학교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생활규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형성은, 지역의 논의와 활동이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역 내 단체 및 학교구성원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학교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학생생활규정 중 특정 주제별 변화를 중심으로 안내 및 개정을 유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 학생 자치활동 및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2023년 학교규정 점검에서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정치활동보장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74%로 매우 높았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초대이지만, 시민으로서의 학생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 보장을 넘어, 학생들의 정치참여권의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권 보장은 자기 공간에서의 참여부터라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자기반, 학교에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우리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생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활동 및 외부 사회활동을 권장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01

##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가. 연구 배경

#### 1) 학교규칙과 학생의 학교생활

##### ○ 학교규칙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sup>1)</sup>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규칙은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생생활규정”)’이다.

〈표 1-1〉 학교규칙의 구분

구분	주요 내용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7호는 학생 징계, 용모, 소지품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호와 제9호는 참여권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규칙의 개정절차와 학교자

1) 2024. 2. 1. 시행,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일부개정.

치활동 운영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우선 확인되는 바는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9조제1항7이, 학생들의 자유권과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한 근거가 시행령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 따른 권리 제한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의심하고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규칙의 조항은 헌법에서 제시한 자신과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공공복리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공공복리는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목적인 학생의 성장과 발달 및 민주시민양성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의 경우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교육청, 아나가 학교 3주체(학생/보호자/교사)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견해가 없다.

#### ○ 폭력회피를 위한 학교규칙의 정의

학교규칙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학교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정의<sup>2)</sup>하기도 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을 규제나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학교규칙은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최소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넘어 직접 관련 없는

---

2) Doyle, W.(1990). Classroom management techniques, In O. C. Moles(Ed.) *Student Disciplinary Strategies : Research and Practi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15.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호하고 권위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표현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손하게 인사하기’, ‘단정한 용의 복장’ 등이 있다.

이처럼, 금지규정으로서의 학교규칙을 구성할 경우, 규정의 정의와 범위, 위반시 제재에 대해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대한 안내 자료와 교육이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마이애미주 브룩스고등학교의 경우 70여 쪽의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학기 초에 학생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집에는 구체적인 제한 행동과 제한 이유 및 처벌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sup>

### ○ 학생생활지도와 교사-학생 간 갈등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의적 생활지도에 대한 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학생은 학교와 학교규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뿐더러,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교육 과정의 장애를 초래하고, 중국에는 학생들이 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가지는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학생인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규칙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학교규칙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는 학교생활에서 비롯된다. 학교생활은 기본적으로 학교규칙에 제시되어 있고, 학생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러한 학교규칙에 근거해 일상을 보낸다. 학생들의 학교규칙에 대한 태도를 확인(또는 측정)하고, 학교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확장될지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지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도 방향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20314/44747976/1>

## 2) 학교규칙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학생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서의 참여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학생과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규칙에서 학교규칙의 구성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의 수준이 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의견조사에서부터 의안에 대한 의결참여나, 의안제안 및 의결권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서 학교규칙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견조사 수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규칙에서는 학생과 보호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89%정도의 학교에서 학교규칙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사항은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의 참여가 형식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규칙의 제정과정에 참여와 더불어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인 학교규칙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켜가는 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이는 그러한 긍정적 참여 경험과 능동적 수범 태도는 향후 기타 사회 규범에 대하여도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서의 능동적 참여 경험이, 학생을 우리사회의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 학생자치활동과 생활규정

또한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서의 참여범위와 학생들의 제반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그래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활성화 및 독립성, 그리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시민으로서의 학생

학교 내 참여권 및 학생자치활동은 사회에서의 학생(청소년)의 참여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권의 확대 및 기후위기를 포함한 사회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은 성장하는 존재이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초대되었으며, 이러한 역량강화가 학교의 목적이기도 하다.

### 3) 학교규칙에 대한 사회적 변화

학교규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학생이라는 사회적 요구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단체 등이, 학교규칙예시안과 개정매뉴얼, 운영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학교규칙 점검 및 인식조사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휴대폰/디지털 기기의 확산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나. 연구 필요성

### 1) 학교규칙의 변화 확인

####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의 변화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이후 후속 정책활동에 의한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고한 항목별 변화 정도 및 지체된 경우 지체이유를 파악하여, 학교별 학교규칙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및 학교의 협력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 2023년 교육부고시에 의한 변화

2023년 9월1일자 교육부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고시는 분리조치 및 보호자 책임 강화와 같은 특정 지침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행정절차 완화조치를 포함하여 고시되었다. 해당 고시로 인한 학교 내 학교규칙의 변화 및 학생인권관련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정 조치와 절차를 포함한 고시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 전국단위의 확인

2016년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중학교 34개교 등 표본의 규모가 적어, 지역별 비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학교규칙 점검 및 인식조사에서 통계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 표본의 규모 확대, (2) 표본의 구성에서의 편중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 2) 학교규칙과 인식조사와의 관계 확인

학교규칙과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인식간의 연계성 및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규칙의 변화가 학생들이 체감하는 가를 확인하고, 규정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감하는 인식과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의 항목에 따른 차이와 학생 및 교사가 체감하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문화된 규정, 새롭게 필요하거나 개별적으로 제한되는 규정으로 인한 혼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학교 구성원이 체감하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사 및 학생인권전문가, 학생 당사자들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 3) 학교규칙 및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요소의 확인

선행 학생인권관련 조사에서 파악된 학교요소에 따른 학교규칙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인권에 통계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학교설립형태(공립/사립) 및 남녀공학여부 등을 구분하여, 학교규칙 점검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별 비교를 통해 지역별 학교규칙 권고의 수용도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식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학교요소 및 지역별 차이는 학교규칙 정책의 전개에서 학교맞춤형 정책을 구성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이 학생의 학교생활, 특히 학생인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규칙에 관련된 정책 및 활동을 찾아보고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학교규칙 관련 정책의 변화 확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및 권고에 따른 학교규칙의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의 정도 및 성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규칙의 개정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참고하여, 지속적이고 매년 진행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지원한다.

### ○ 학교규칙이 실제 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확인

학교규칙중 학생생활규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에서 지체되고 있는 항목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정과 인식간의 차이, 구성원간의 인식차가 나타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 지체 항목의 발견

학생생활규정에서 개선이 지체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이 지체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나 인식 격차가 생기는 이유를 학생, 보호자와 교사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 이러한 조사 결과와 분석을 통해,

### ○ 학생생활규정 개정 현황의 파악 및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개선 방안 마련

관련 활동 전반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연구결과 및 담당자 및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규칙 개정방안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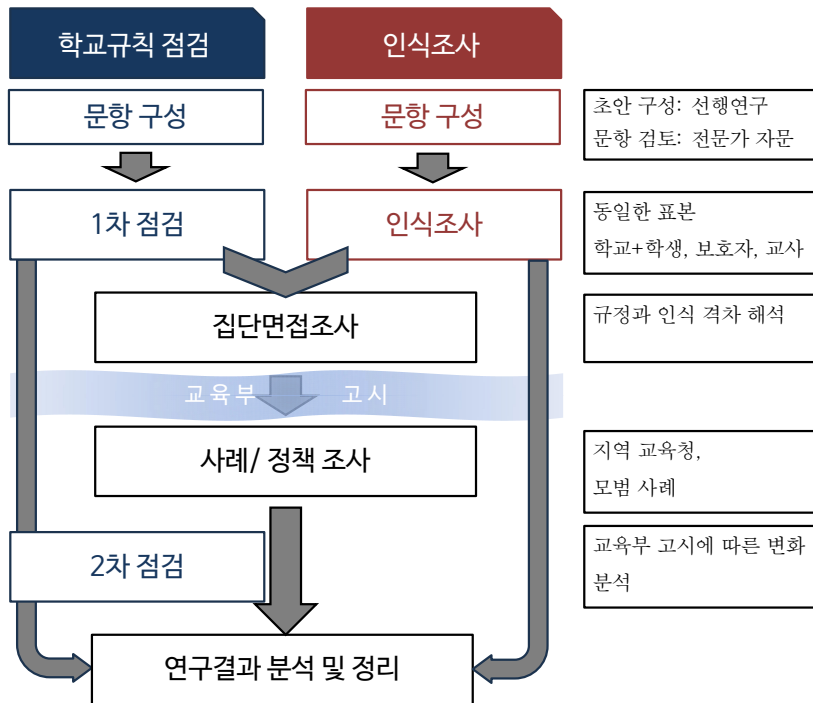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

### 가.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국 학교의 학교규칙의 실태 및 규칙이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학생들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검토 및 (2) 학생 및 보호자, 교사의 학생인권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점검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 교사 그룹에 대한 집단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점검 및 인식조사 항목 구성을 포함한 연구 전반에서 수시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다. 추가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생활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범사례 학교를 방문조사 하였고, 지역 교육청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체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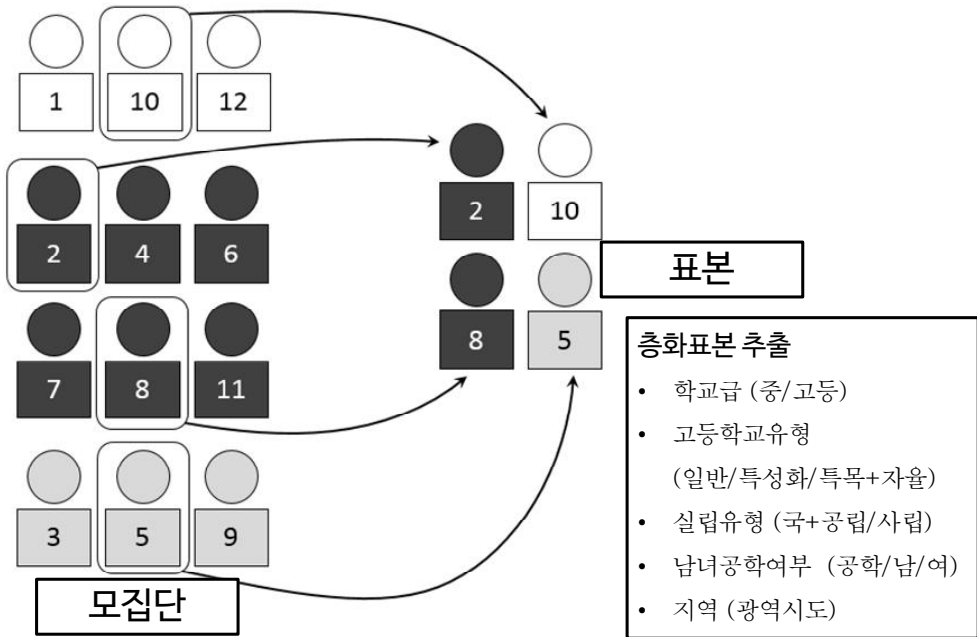


〈그림 1-1〉 중·고등학교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연구 진행

○ 사전 연구 표본의 구성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체 연구는 학교규칙 점검과 인식조사라는 두 개의 실태조사를 기반하고 있으며, 이어 두 조사 간의 비교가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 규정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학교규칙 점검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처럼 조사간 2가지 비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표본학교)을 고정하여 전체 연구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학생 및 보호자, 교사이며, 현재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는 총 5,732개교이다(중학교 3,359개교, 고등학교 2,373개교, 2022년 말 기준).



〈그림 1-2〉 총화포집을 통한 학교 표본 구성

표본은 전국의 학교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학교의 학교규칙의 점검 및 해당 학교의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규모는 전체 학교 수의 10%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였다.



학교요소(학교급, 고등학교유형, 설립형태, 남녀공학여부)와 지역요소(광역시도)를 고려한 층화포집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표본 구성을 통해, 결과 수치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나. 학교규칙 점검

### 1) 학생의 학교규칙 점검표 구성

#### 가) 초안 구성 - 선행연구 비교 검토

점검표 구성에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와의 연속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총 136개교의 학교규칙을 대상으로 점검한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해당 항목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학교규칙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2〉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영역	번호	항목	예	아니오
1. 기본권 보장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4	사생활 침해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8	학생 선도(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5. 규범의 형식 (용어와 개념)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 출처 : 김현수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 국가인권위원회, 141면.

이를 기초하되, 지역별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관련되었다고 보는 용모/복장, 휴대폰 사용, 교내외 활동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나) 점검표 구성 - 전문가 회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항목별 구체적 점검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sup>4)</sup>

〈표 1-3〉 생활규정 점검 항목

I. 규정 체계등	
1. 규정 목적	1) 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으로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차별금지 규정이 있다.
2. 규정 구성에서의 참여	1)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 위원 참여 조항이 있다.
	2)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에서 학생이 1/3 이상이 된다.
II. 학생 자치활동	
1. 학생 자치 활동	1) 학생회 입후보 조건에서 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장 승인이 요구된다.
	2)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독립적 공간이 있다.
	3)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보장한다.
	4) 학생회는 학기당 3회 이상 열린다. (월 1회 정도)
2. 교내외 활동	1) 다른 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 정치 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디지털 활동	1)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온라인 인권피해 보호 및 구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III. 용모/복장 등	
1. 용모/복장	1) 머리 퍼머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머리 염색에 대한 제한이 있다.

4) 부록 참고: 전체 점검표 및 점검 기준

---

3)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

4) 귀걸이/피어싱에 대한 제한이 있다.

---

## 2. 휴대폰

1) 휴대폰 교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등교시 일괄 수거한다.

## IV. 기타

### 1. 상벌점제

1) 상벌점제가 있다.

---

2)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 퇴학처분을 구성하고 있다.

---

3)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

## 2) 1차 점검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학교규칙을 점검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sup>5)</sup> 및 학생자치규정, 상벌점제 규정 등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다루었다.

앞서 구성된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등재된 학교규칙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하였다.<sup>6)</sup>

또한 일부 점검항목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간 교차 점검을 통해 연구자간 편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 3) 2차 점검

2023년 7월 이후 발생한 여러 건의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2023-28호)를 9월 1일자로 고시하였다. 해당 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내 관련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1차 점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의 해당 학교규칙을 재점검하였다. 표본 학교 중 198개교(36.8%)가 개정하였으며,<sup>7)</sup>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확보하여 점검하였다.

본 보고서에 정리된 학교규칙 점검은 2차 점검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4) 분석

2차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 ○ 학교규칙 점검 기초 및 요소 분석

항목별 분석 및 학교요소 및 지역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5)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명칭이 학교생활규정, 선도규정 등으로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생활규정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6) 학교알리미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였다.

7) 일부 학교는 개정중이거나 개정하였다는 공지 등이 있었으나, 개정된 자료가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2차 점검시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집단면접조사에서 논의자료로 사용되었다.

○ 추이분석

2016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여, 항목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 교육부고시에 따른 변화 분석

1차 점검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부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 다.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 조사

### 1) 문항 구성

#### 가) 문항 구성 기준

문항 구성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성하였다.

하나는 학교규칙 점검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확인 문항이다. 이는 학교규칙과 학생/보호자/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규정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다른 하나는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문항이다. 여기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중 학생대상 인식조사 문항도 포함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중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고, 주요 주제별 (규정 목적 및 규정에서의 참여, 자유권 침해, 학생의 자치활동 등)로 나누어 설문 구성하였다.

#### 나) 학생/보호자/교사별 인식조사 문항

학생인권에 영향을 주는 생활규정 및 참여권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보호자/교사별 인식조사 항목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학교구성원별 인식조사 항목 (숫자는 문항수, 서술형 제외)

분류	학생	보호자	교사
<b>I. 학교규칙</b>			
규칙 인지	2	1	2
규칙 필요성	4	1	4
제·개정 참여	2	보호자 2	교사1/ 학생2
학교의 차별환경	4	-	4
<b>II. 복장/용모등 제한</b>			
머리 제한	2	1	1
화장/장신구 제한	3	1	1
복장 제한	1	1	

분류		학생	보호자	교사
교내외 활동 제한		6	-	6
제한 적절성		1	1	1
휴대폰 사용	제한	2	1	2
	관계	1	2	-
	학습	2	2	2
<b>Ⅲ. 학생 자치 활동 및 참여권 보장</b>				
자치활동 독립성		2	-	2
학생에 의한 생활지도		1	-	1
의견 반영		1	보호자 1	교사1/ 학생1
(보호자/학교간) 소통		-	4	-
<b>Ⅳ. 상벌점제</b>				
상벌점제 운영		1	-	1
반성문 제출		1	-	1

대상별로 문항의 차이가 있으며, 주요 분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8)</sup>

○ 학생생활규정 인지

- 학생생활규정의 인지 및 필요성 여부 및 필요한 이유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의 학생/보호자/교사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
- 학교 내 차별 환경 : 학교생활에서의 직·간접 경험으로서의 성별/성적/장애 등에 관련된 차별 환경에 대한 인식

○ 복장·용모 등 제한

- 학교내 생활에서의 제한을 중심으로 확인 문항
- 휴대폰 사용 제한 :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 및 학습/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치 활동 및 참여권 보장

- 학생회 활동 및 구성에서의 독립성
- 학생회 및 학생의견의 학교운영에서의 반영

8) 부록 참고 : 학생/보호자/교사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 학교운영에서의 보호자/ 교사의 의견 반영
- 보호자의 학교 및 보호자간 소통

○ 상벌점제 등

- 상벌점제 운영 여부
- 반성문/서약서/성찰적 글쓰기 등의 제재 항목 확인

## 2) 인식조사 진행

### ○ 조사 대상

학교규칙 점검을 위해 추출한 표본 학교와 동일한 학교의 학생/보호자/교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규정과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체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식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였다.<sup>9)</sup> , 온라인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실제 대상별 참여자수는 다음과 같으며, 2016년 실태조사<sup>10)</sup> 대비 3배 정도 참여하였다.

〈표 1-5〉 대상별 참여자수 추이

대상	참여자수
학생	20,262 명
보호자	5,221 명
교사	2,800 명

### ○ 조사 시기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학기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 기간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2023년 10월 23일(월) ~ 11월 11일(토))

## 3) 분석

### ○ 기초 및 요소 분석

- 학생 인식조사를 기준으로 기초분석을 하였으며, 규칙 점검시와 동일한 학교요소 및 지역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하여 제시하였다.
- 학생 인식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자 및 교사 인식조사를 참여자별 비교분석을 하여 제시하였다.
-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집단면접조사에서 논의자료로 사용되었다.

9) 부산 및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각 교육청을 통해 협조 공문 및 가정통신문 예시 등을 함께 제공하였다.

10)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 국가인권위원회

## 라.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및 사례 학교 면접조사

학교규칙 점검 및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의 차이의 해석 및 학생 생활규정에 관련된 학교에서 체감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별 집중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공동체협약이나 학생 주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과 담당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실천 사례를 정리하였다.

### 1)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집중면접조사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학교규칙 점검 결과와 대상은 중·고등학생, 보호자, 교사 3개 그룹으로 진행하며, 한 그룹당 4~5명으로 진행하였다.

집중면담조사는, (1) 학교규칙 점검 및 인식조사 결과를 사전 배포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2) 2023년 학교에서의 경험, (3) 학교규칙의 내용에서 배제되거나 예외로 다루어지는 대상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보완, (4)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면접조사 진행내용에 대해 대상자별 질문 가이드로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진행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진행 및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아래에 학생들에게 제공된 질문 가이드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1-6〉 [학생인권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집단면접조사 가이드라인 (학생용)

진행 순서	항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의 목적 등에 대한 간단한 안내</li> <li>○ 개인 정보에 대한 안내</li> </ul>
아이스브레이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소개 RT</li> <li>○ 2023년 학교 경험: 자신의 학교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간단한 질문</li> <li>○ 2023년 학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이나 학교에서의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는?</li> <li>- 선생님과 학생, 학생간 갈등을 일으키는 제한은 있는가?</li> </ul> </li> </ul>

진행 순서	항목
-------	----

-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학교 규정 제.개정에서의 학생의 참여
    - 규정에서는 81%에서 보장 - 학생들의 인식조사 57% 보장
    - 교사대상 조사: 학생 참여 보장 - 90%
    -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 학생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학교 일반에서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 규정 - 인식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

긍정답변비율(%)		규정	학생	교사
교내 활동	다른반 출입	95	32	54
	교내 게시	87	35	46
	온라인방 개설	100	69	81
정치 활동	정치활동제한	76	53	66

- 실제 참여자들이 느끼는 제한은 어떠한가?
-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 해당 제한에 대한 대안 등을 포함한 방안은

○ 휴대폰 소지/ 사용

- 학생- 보호자/교사간의 의견 차이
- 학교/가정을 포함하여, 전반적 휴대폰 사용에서의 자신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 자신과 친구의 경험을 포함하여 휴대폰 사용이 학습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점과 장애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해 학교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는가?

○ 학교에서 학습용 태블릿 등의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학습/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학교에서의 머리/복장/장식 등 용모 제한

-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 귀하가 해당 규정을 만든다면, 규정의 내용은?

**(3)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 2) 사례 학교 면접조사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운영에서 인권적이고 학생참여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통해, 학생생활 담당교사 및 학교장과의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면담 목적 및 전반적인 질의 문항을 제공하고 진행하였다. 아래에 안내 자료를 예시한다.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 모범사례 면접 조사 안내

이번 연구는 학교규칙중 학생생활에 대한 규정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규정 관련 이슈와 상담 사례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2017년 교육부 및 교육청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3년을 기준으로 변화를 추적하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과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생활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및 휴대폰/디지털 기기의 사용 제한을 추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는 2006년 개교하여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혁신학교로 전환하여 학교 제도 및 문화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생활을 포함한 전반에서의 (1) 학생의 참여, (2) 인권친화적 문화를 위한 제반 활동 및 어려움 및 성과 등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설계, 의도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의 배경이 되는 \*\*\*학교의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의견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여러 과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아니 사회 전반의 과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위한 교육 부문 및 타 정부 부처 및 사회 전반에 제시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도, 활동 등에 대한 사례나 의견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세요.

첨부자료는 이번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점검 및 인식조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 마. 전문가/업무 담당자 자문

### 1) 연구 전반에서의 전문가 참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문헌을 근거하여, 주요 인권 항목을 구성하였다. 연구 전반에서 여러 차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결합하여 연구 핵심 과정에 참여하도록 진행하였다.

학생생활규정에서의 학생인권요소에 대한 최근 점검 조사는 2021년 대전지역 실태조사이며, 이 조사에 참여한 이들을 전문가위원으로 연계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제 발견된 사례를 청취하여, 이를 실태조사 및 학교 점검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를 포함하여, 최근 학교 현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 앞서 사전 전문가회의를 배치,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① 설문조사 내용 및 구성에 반영하고, ②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 연구의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소통 채널로 구성하여 연구진과 협업하는 형태를 가지도록 하였다.

### 2)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 자문

2016년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별로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서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을 만들어 안내하였으며, 2022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외에도 교육청별로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제·개정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단위의 제·개정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별 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담당자와의 방문을 포함한 자문<sup>11)</sup>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사례 및 관련 정책의 전개에서 고려해야할 점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11) 대전, 서울 교육청은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타 10개 시·도교육청은 전화면담을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나누었다.

# 02

## 문헌 및 사회환경조사

---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2. 학생생활규정 점검 조사
3. 소결





## 제2장 문헌 및 사회 환경 조사

### 1. 학교생활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 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본 연구 대상인 학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교생활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 안에서 학생의 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학교규칙과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따라야 한다. 특히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규정인 아동권리협약 제28, 29, 30, 31조에 따라야 한다.

이에 해당 조항에 관련된 기준 및 일반논평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sup>12)</sup>를 정리하였다.

####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일반논평 1호(교육의 목적)을 발표한 이후, 아동권리협약 조항이나 주제들에 대한 해설을 일반 논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논평 중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 일반논평 8호 (2006) : 체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족이나 학교 및 그 밖의 환경에서 용인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체벌 등 폭력을 감소시키고 근절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당사국들에게 “시급한 문제로서, 협약의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훈육의 형태를 포함하여 가족과 학교 내에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입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sup>13)</sup>

12)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9.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82차 회기에서 채택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폭력(그 예로 “적당한” 혹은 “알맞은” 징벌이나 교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 일반논평 17호 (2013) : 휴식, 여가, 놀이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문화생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활동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놀이와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향유를 위해, 다음의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학교생활 관련).

- ✓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 ✓ 사회적 유해 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 ✓ 그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휴식의 가용성;
- ✓ 자신의 상상력과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 ✓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및 예술적 유산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
- ✓ 필요한 경우 훈련된 촉진자 또는 코치의 지원을 받아 다른 아동과 함께 게임, 스포츠 및 기타 오락 활동에 함께 참여할 기회;

#### ○ 일반논평 25호 (2021) :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의 권리

생성형 AI 및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환경 등은 디지털 환경을 강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안전하고 평등한 활동을 지지하고 촉진하며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며 그 영역에서도 비차별적 수혜가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13) 아동권리위원회, 가족과 학교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 논의의 날, 제28차회기 보고서, 2001년 9월, 10월, CRC/C/111, 제 710항-제745항

- ✓ 공공 정보 및 시민적 및 정치적 사안, 아동 권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접근 보장
- ✓ 잘못된 이야기와 정보, 불법적 혹은 유해한 활동, 반인권적 정보에 대한 필터링 등을 통해 유해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
- ✓ 사이버폭력과 위협, 검열, 데이터 침해 및 디지털 감시로부터의 보호
-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

##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9월에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국내 학생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 가) 이행 평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취한 다음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학생/학교 관련)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 ✓ 아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

### 나) 주요 권고 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및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분야에서 국내의 여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 내지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 관련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정리한다.

## ○ 비차별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 ✓ 다음의 아동이 겪는 차별

: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 출생신고, 보육시설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

### ✓ 학교에서의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 만연

#### ✓ 한부모 가정 - 편견과 차별의 대상

#### ✓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만연

정부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 미흡

## ○ 사생활에 대한 권리

학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 학교의 학생개인정보 보호 미흡 : 학업성적, 징계조치 등

### ✓ 학생의 사전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 ✓ 복장 제한

## ○ 체벌을 포함한 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에 우려하고 있다.

### ✓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 ✓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 ○ 교육

아동 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 부담, 수면 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우려한다. 이는 사실상 아동기를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문제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 ✓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접근성 제한 및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
- ✓ 장애 아동 대상 통합교육 부족,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이 겪는 사회적 낙인
- ✓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 ✓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 ✓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 ✓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
- ✓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 ✓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박
- ✓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과 안전한 시설의 제공 불충분
-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

### 3) 아동권리협약과 학생생활 관련성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교 및 학생인권에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학교내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
- ✓ 학생의 발달과 복지를 위한 휴식, 여가, 놀이의 제공
- ✓ 학생의 전체적 발달을 위한 창의성, 개인적 표현 및 적극적 참여 기회의 제공
- ✓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권리 보호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평가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 ✓ 학생의 복장 제한 완화
- ✓ 학교 내 성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
- ✓ 학교의 성적/ 징계조치 등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 ✓ 학생의 사교육 및 선행교육 해소
- ✓ 농촌과 도시간 교육 격차
- ✓ 학생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진로상담
- ✓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과 안전한 시설의 제공 불충분
- ✓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

## 나. 국내 제도 및 교육 정책 및 활동

### 1) 국내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제도

#### 가) 학생생활규정 내용별 정리

헌법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서 학생인권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내용을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학생인권 보장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학생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및 양성평등교육 및 학생/교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 ○ 학교규칙 제·개정 - 절차, 학교구성원 참여 및 학교장 권한 부여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1)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사립학교의 경우)을 통해, 3)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규칙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이나 학생에게 주어지는 의결권에 대한 범위가 달라진다.

둘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학부모(30~40%), 교원(20~30%), 지역인사(30~50%)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학칙에 따른 협의가 있더라도 상위기관에서의 심의/자문에서 학생의 참여권은 빠져있다.

셋째, 법률 개정으로 교육청(교육감)의 최종 승인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구성되었다.

#### ○ 학교장의 학생자치활동 보장 의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규정하고, 학생자치활동의 권장 및 보호를 학교장의 책무로 두고 있다.

## ○ 모호한 퇴학처분 근거 - 위헌적 요소

퇴학처분은 교육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퇴학처분의 근거로 품행 불량이나 기타 학칙 위반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의적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주요 관련법률 요약

학생 및 학교 관련 법률별로 학생생활규정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교육기본법

- ✓ 민주시민 자질 양성  
: 제2조 (교육이념)에서 교육의 목적중 하나로 민주시민 양성을 제시
- ✓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 (제3조)
-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항에서 지역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시행
- ✓ 교육당사자로서 학습자/ 보호자 /교원  
: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로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설립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정의
- ✓ 양성평등의식 증진 (제17조의2)
- ✓ 학생정보의 보호 (제23조의3)

### ○ 초·중등교육법

- ✓ 학교규칙 의 제·개정  
: 제8조(학교규칙)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  
학칙의 내용 및 제·개정 절차는 시행령에 둬



- ✓ 학생자치활동
  - :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의 권장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 학생의 징계 및 재심 청구권 부여
  - : 법령과 학칙에 따른 징계권을 교장에 부여
  - : 징계과정에서 학생/보호자의 진술기회 부여
  - :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권 부여, 해당 절차는 시행령에 둠
- ✓ 학생의 인권보장 (제18조의4)
  -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학생인권보장
  - 교직원 및 타 학생 인권 침해 금지
- ✓ 보호자의 의무 (제18조의5)
  - : 보호자의 교직원 및 타 학생 인권 침해 금지
  - : 보호자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존중
- ✓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
  - : 학생인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과 학칙에 근거하여 지도함
  -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 예외적용
-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제20조3)
-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칙 제·개정 심의 또는 자문(사립학교) (제32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9조 제1항)
  - : 학교규칙의 내용 구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크게 학교운영에 대한 사항(1~6, 10)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7~9)으로 나누어진다.
-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 9. 학칙개정절차
- ✓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제9조 제2항)
- ✓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
  - 학교장의 책무로 학생 자치활동 권장 및 보호 구성
- ✓ 학생의 징계 구성 (제31조)
  -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 징계의 종류 (제31조 제1항)
  1. 교내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로 제한)
  5. 퇴학처분 (고등학교)
- ✓ 퇴학의 근거 (제31조 제5항)
  - : 품행불량 및 개전 가망 없음, 정당한 이유없는 잦은 결석, 기타 학칙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두어 있음
- ✓ 퇴학 재심 청구 (제31조의2)

## 2) 교육부 학교규칙 관련 정책

### 가) 2014년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4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규정 간소화, 부적절한 예시 및 대체안 제시, 규정 적용시 유의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운영매뉴얼은 다음의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학생생활규정의 개념과 의의
- 제2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제3장 학교생활규정 운영의 실제

해당 매뉴얼은 제2장 3. 학교규칙 제·개정의 세부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민주적 절차와 운영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2022년 학교규칙운영 길라잡이

2022년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은 함께, 길라잡이를 집필하여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권고(2017)’에 따른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 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안내하고 있다.

2022년 길라잡이는 제1~3장은 2014년 운영매뉴얼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Q&A를 보완하였으며, 다음의 제4,5장을 추가 정리하였다.

- 제4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제5장 기숙사 생활 관련 사항

#### 다) 교육부 자료 제시된 주요 항목

2014년 운영매뉴얼 및 2022년 길라잡이에서는 기존의 학교중심의 선도규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을 포함한 학생인권의 보장을 기초한 학교규칙 및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규칙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인권보장 목적 명시

생활규정의 목적 및 기준으로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 그리고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규정의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라는 항목을 두어, 이후의 학생 참여 및 자치활동 보장과 이어지도록 하였다.

##### ○ 참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예시

규칙 제·개정시 학생 및 보호자의 발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학급회의/토론회, 스티커 붙이기, 의안 마련을 위한 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옴브즈맨 제도를 소개하며, 지속적인 학생 참여를 위한 방안을 예시로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학생자치법정 및 생활협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 ○ 학생의 권리 항목의 명시 및 학교의 책무 구성

생활규정이 자치규범으로서 일차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명시해 보호하며, 이차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규율을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즉,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게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두었으며, 학생은 인권에 관해 학습하며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존중·협력하도록 구성하였다.

##### ○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제한 원칙 제시

길라잡이에서는 헌법 제10조, 제37조를 근거하여, 학생의 자유권 제한이 안전 및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하며,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규정에서의 제한을 (1)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2)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3)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되도록 하게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한 사안을 다루어,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두발·교복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련된 예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예시1 - 용모 관련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과잉금지의 원칙)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른 제한으로 한정되어야 함.

: (예시) 제00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예시2 - 소지품 검사 관련

: 사생활 비밀 및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 한정해야 한다

: 소지 금지 물품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검사가 필요시, 목적/이유 설명 → 동의

: 비동의시 기재하고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사시 모욕적/위협적 언어 및 신체 접촉은 금지

▶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예시3 - 휴대폰/전자기기 관련

: 소지 자체의 금지나 일괄 수거는 지양

: 자발적 실천 유도

: 수업 중 무단 사용 제한

: 학생의 정당한 사유 없는 녹음/녹화 및 유포 금지

그 밖의 학생인권 관련 고려사항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표현의 자유·참정권 보장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규정 정비 체크리스트 포함)에 관한 지도 방법을 여러 참고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라) 소결

교육부의 관련 정책에서 학생생활규정에서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점검 사항을 정리하였다.

### ○ 학교규칙(생활규정)의 목적 명시

보호자 및 교사들이 학생시절 경험한 생활규정은 학생통제수단이였다. 그러나 지금 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학교가 보다 안전하고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학생통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여기에 차별금지를 포함한 교육의 가치를 표현하는 기준을 목적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제한의 최소화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제한은 무엇보다 헌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어 학칙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칙의 제한 내용이 헌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한은 안전이나 타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그리고 학습/교육권에 근거하되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의 점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제한 규정에서 모호한 표현은 있는가
- ✓ 안전이나 인권보장, 학습/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가
- ✓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학생이나 교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 ○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은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생활규정에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규정이 학습/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가
- ✓ 휴대폰 사용 제한이 자신 및 타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가?

### 3) 시·도교육청 정책

교육부 안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정책 활동에 따라 학교별 학교규칙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도교육청의 관련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sup>14)</sup>

- ✓ 학생생활규정 안내자료 배포
  - : 2022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제작한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교육청 등은 자체 제작한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다.
  - : 이와 함께 서울,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은 초등 및 중등학교 별 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작하여 함께 배포하고 있다.
- ✓ 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 운영
  - : 학교 현장에서의 제·개정 업무에 대한 안내 및 현장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지원단(혹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 : 대부분 경험이 풍부한 교사나 교감 중심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 : 충청남도의 경우 별도의 조직을 두지는 않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풀을 연계 시켜주고 있다.
- ✓ 모니터링
  -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점검표를 가지고 학교규칙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 서울, 인천, 울산,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 울산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상북도는 학교자체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문의나 지원을 하는 방식과 특정 항목별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 인천시의 경우 2023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14) 시·도교육청의 경우, 생활교육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방문 및 전화 면담을 통해 12개 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 및 자료 협조를 받았다.



✓ 협력망

- : 생활규정의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담당자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로 생활지도부장을 포함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 대전, 경상남도 등은 학교장 등 관리자나 관련업무 연수에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때 신입생 및 교사를 포함하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매년 개정해야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 :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별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문의/상담 및 의견 개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서울, 대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 특히 지원단도 함께 참여시켜 보다 학교 현장에 기반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생활규정에 관련한 민원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광주, 서울, 인천, 충청남도 등은 인권부서가 별도로 있어 상담/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교육부고시에서 '부리조치'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높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점검표

중등대상 모니터링에 사용된 점검표의 경우 교육청별로 체계가 다르다. 이에 주요 주제별로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활규정의 목적 구성 및 구성원 의무 구성

- : 목적 구성
- : 차별금지 명시 - 경기 등 : 성차별, 성적 차별 등 기타 세부항목에 의한 차별 구성 확인
- : 학습권 확인 (이성교제 등 여러 이유로 인한 학습권 침해 규정)
- : 학생의 협력 및 준수 의무
- : 모호한 규정 (자의적 판단)

- ✓ 자유권 침해
  - : 표현의 자유 (게시 및 서명, 설문조사, 홈페이지 게시 관련)
  - : 자유권 - 용모/복장 (제한규정, 고정식 명찰, 교복착용시기 명시 등)
  - : 자유권 - 소지품 (동의)
  - : 자유권 - 휴대폰 (일괄수거)
  - : 양심의 자유 (반성문 등)
- ✓ 정보보호권
- ✓ 자치활동
  - : 생활규정 참여/의결권 확인 (의견수렴, 의결권, 홍보/안내, 민주적 절차)
  - : 선도부 역할 조직
- ✓ 정치 참여권 보장
  - : 만16세 이상의 정당/정당 활동 금지 조항, 만18세이상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 제한)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 징계정차에서의 인권보장 (징계사유 통지, 소명기회제공, 재심청구권, 징계내용 비공개)
-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 운영

#### 4) 2023년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공포·시행되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의 서울 S학교 등 여러 학교현장에서의 사건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교사의 교육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급하게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고시이다.<sup>15)</sup>

이어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말 해설서를 발간·배포했다. 또한 12월 말까지 고시에 따른 학교별 학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고시의 경우 상당 부분이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시 전반에 대한 내용 및 관련사항을 정리한다.

##### 가) 고시 요약

교육부고시 전체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며, 학생인권에 밀접한 관계를 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표로 요약하였다.

〈표 II-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요약

장	조문 제목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상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li> </ul>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에 관해 정의함</li> </ul>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상호 권리 존중과 책무에 관해 규정함</li> </ul>
	제4조(수업 중 휴대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다만,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함</li> </ul>

15) 김민주, 복잡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훑어보기, 교육정보 2023 겨울호(253호) 참조.

장	조문 제목	내용
제2장 생활지도 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을 규정함</li> <li>•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li> <li>•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li> <li>•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li> </ul>
	제6조(보건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을 규정함</li> <li>•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li> <li>•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li> <li>•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li> </ul>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을 규정함</li> <li>•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li> <li>•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li> </ul>
	제8조(그 밖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지도권한을 규정함</li> <li>•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li> <li>•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li> <li>• 비행 및 범죄 예방</li> <li>•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li> </ul>
제3장 생활지도 의 방식	제9조(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를 뜻함</li> <li>•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의 비공개 원칙 등 규정</li> </ul>
	제10조(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뜻함</li> <li>• 수업시간 외 시간 활용을 원칙으로 함, 제3자 누설 금지 관련 규정</li> <li>• 더불어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③ 근무 시간 외의 상담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li> <li>• 또한,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제11조(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해 경고하는 지도행위를 뜻함</li> <li>• 수업 중 휴대폰 사용 등 학생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li> </ul>

장	조문 제목	내용
		<p>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를 줄 수 있음. 그럼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주의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봄</li> </ul>
	제12조(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함</li> <li>•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말로 제지할 수 있음</li> <li>•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음</li> </ul>
	제13조(훈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행위를 뜻함</li> <li>• 조언, 상담, 주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음</li> <li>• 더불어 학생에게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② 성찰하는 글쓰기,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li> </ul>
	제14조(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뜻함</li> </ul>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li> <li>•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li> </ul>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제17조(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li> </ul>

장	조문 제목	내용
		<p>기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은 이 경우 14일 이내 답변해야 함.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li> </ul>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음</li> </ul>
	제19조(재검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을 재검토 기한으로 함</li> </ul>

※ 출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참조

## 나) 교원단체 등의 평가

해당 고시에 대해 교원단체 등에서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의견서에서 제기된 내용에서 학생인권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견서<sup>16)</sup>

#### ○ 관리자 책임 명시

관리자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담당 교사가 홀로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 상담 /분리 등을 위한 자원 확보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분리 조치가 실효성 있고 교육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6) 교육부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3 - 337호)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의견서.

## ○ 학교장 업무로서의 학교 민원 업무 명시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 소통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에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법’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됨으로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유로는 해당 고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임에도,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기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해당함에도, 행정규칙으로 학생의 기본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고시로서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지적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헌법 및 교육기본법을 포함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의 가입한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다) 학생생활규정 관련 사항

고시 전반에서 생활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권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 ○ 훈육방법으로서의 물리적 제지 및 분리 조치

-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등을 학생에게 중지시키기 위해, 말로 하는 제지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sup>17)</sup> 여기서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 방법, 관리/통보 방법이 명시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제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 ▷ 분리의 경우에도, 분리에 대한 기준, 방법, 관리/통보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이러한 제지와 분리 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 ○ 학교급별 상황을 감안한 규정

-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현장 교사의 개별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판단의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 ▷ 학년별 또는 학교 단위의 규정이 협의 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학습과정이기도 하다.

### ○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 ▷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의 교육적 기능이나 저해 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 ▷ 휴대폰 사용의 제한은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하며, 구성원의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한의 기준은 수업 중 교육 목적이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사용의 허용, 시험시 사용제한 등이 될 수 있다.

### ○ 소지품 검사 기준 강화

- ▷ 합리적 의심을 기반한 소지품 검사에서 해당 학생의 동의 여부에 대한 조건이 없다. 기존 규정매뉴얼에서 해당 학생의 동의여부를 소지품 검사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17)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2023.09., 25면.



○ 생활지도의 근거 제시

- ▷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에서 생활지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교원의 교육권 및 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자신 및 타인의 건강 및 안전 보장등 기본권 보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 그러나 제7조와 제8조에서 품성과 예정이나 건전한 학교문화 등의 모호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성찰하는 글쓰기’

- ▷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훈육 방법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지도 방식이 있다.

: 조언/상담/주의 - 훈육/훈계/보상

여기서, 훈계방법으로 중 하나로 ‘성찰하는 글쓰기’ 부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이번 규정 점검항목인 ‘반성문 쓰기’와 같은 맥락의 지도 방법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 1)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실태조사에서 두발·복장에 대한 제한, 수업시간 외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의 제한,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상담 및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학교규칙’은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표현과 제한하는 규정이 남아있고,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나 의견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음의 권고를 하게 되었다.

#### ○ 교육부장관에게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도록 권고했다.  
→ 2014, 2022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학생생활규정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59조의4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해당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 ○ 17개 시·도교육감에게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해 각급학교에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서울, 인천, 울산,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점검 및 교육청단위의 점검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 교육청단위에서 광주, 서울,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등의 경우처럼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학생인권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청 내 부서로 학생인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 반면, 학교단위에서는 실효성 있는 담당자나 기구가 구성된 사례가 거의 없다.
- ▷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 ○ 학교장에게 학칙 구성 기본원칙 제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학교규칙을 구성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목적 조항을 구성하고, 목적조항에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명시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명시하고, 기존 학칙에서의 차별적 조항의 제거
- 자유권/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  
(타인의 권리 보호나 교육 목적에 따른 예외의 경우 절차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 표현/집회의 자유 최대한 보장  
(교육/지도, 질서유지 등만의 이유로 제한 금지)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심에 반하는 반성/서약 강요 금지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명시
-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명시
-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명시
- 실질적 학생 참여권 보장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명시)  
(학칙 최종안 확정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및 의견 제시에 대한 규정 명시)

## 2)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에 맞추어, 관련 법류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의장에게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해당 권고 및 의견표명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의 부족이나 ‘학교의 정치화’ 내지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m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을 갖도록 하는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나 학습을 통해 시민으로의 역량을 갖도록 도와야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포함한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이러한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sup>18)</sup>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서는 제1장 학교생활에서 학생 생활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항목 구분과 별도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교사들간 해석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항목별 결정례 중 학생생활규정 관련성이 높은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휴대폰 사용 제한

학교나 기숙사에서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전면적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의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18) 국가인권위원회(2022).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 ○ 용모 및 복장 제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두발 및 복장에 대한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두발의 파마나 염색 제한, 등교시 포함 체육복 착용 금지, 교복 착용시기강제 등을 다루고 있다. ‘용모 복장 규정’이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학생생활규정 점검 조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도교육청, 지역단체 등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점검 항목간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성할 학생생활규정 점검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였다.

###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 항목 비교

2016년 이후 실시된 주요 학생생활규정 점검은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부산소재 고등학교규칙 모니터링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7)
- 학교단위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 대전학생 생활규정 전수조사 (대전시 인권센터 외, 2021)
-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남교육청, 2021)
- 충남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남지역단체, 2023)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점검은 학생 및 교사,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나, 학교규칙에 대한 연구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6)

2023년 연구와 동일하게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로 학교 현장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학칙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가) 인식조사

설문조사는 두발·복장·용모 등에 대한 제한, 학생 소지품 검사,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한 조사와 학교인권환경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대상 인식조사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주로 학교생활에서의 자치 및

용모 제한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이런 제한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인지, 인권침해 경험을 다루고 있다.

〈표 II-2〉 학교현장 학생인권보장 인식조사 항목\_학생용 (인권위, 2016)

항 목
<b>1. 참여자 정보</b>
성별 / 학교급 / 학년 / 지역 / 공학여부 / 설립형태
<b>2. 학교생활 - 자치</b>
·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징계 규정)을 본적 있다
·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한 교육 받았다
· 학생자치회의실(독립적 공간) 이 있다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 정기적 학생회주관 회의
· 관련 규칙/규정- 전체 학생의 의견(설문)
· 학생 관련 안전에 대해 학생 의견을 묻는가(현장학습, 체험활동 등)
· 학급/학생회 임원출마 및 활동에 성적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목격
<b>3. 학교생활</b>
· 상벌점제 운영 / -> 공정한 운영
· 개인정보 공개
· 사전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 성적 공개
· 특정 고등학교/대학교 입학을 공개하는가
<b>4. 복장/용모/행동 제한</b>
· 두발 길이/모양
· 외투/점퍼
· 속옷/양말
· 치마/바지 길이나 폭
· 화장/ 미용제품/기기
· 수업시간의 휴대폰 사용
<b>5. 학교생활 - 기타</b>
· 자유로운 의사표현 (학교신문/홈페이지 등)
· 강제성있는 서약서/동의서

항 목
· 학생용 탈의실이 있는가 / -> 자유로운 이용
· 자유로운 상담실 이용
·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의 활동 제한 (놀이나 휴식 등)
· 수업중 선도/복장검사등
<b>6. 자신의 생각/믿음 -인지</b>
·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해 나는
· 학교에서의 나의 인권보장은
· 학생으로서의 인권침해시, 나는
<b>7. 자신의 생각 -인지</b>
· 학생 이성교제 규제
· 학생 두발 규제
· 학생 복장 규제
· 교내 CCTV 설치
· 학생 소지품 검사
·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
· 교내 집회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
·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
· 학생 체벌
·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
<b>8. 차별 경험</b>
성적, 외모/생김새, 가정환경(저소득, 이혼, 한부모...) 학년/나이, 성별, 출신국가/ 다문화, 장애, 종교, 성적지향
<b>9. 폭력경험(목격 포함)</b>
· 학교의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역할
· 교사-직접체벌 / 간접체벌 / 언어폭력 / 성희롱



## 나) 학칙 분석

인식설문조사와는 별도로 17개 광역단위에서 중학교는 공립/사립 1개교씩 총 34개교,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6개교씩 총 102개교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중·고등학교 총 136개교의 학교규칙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영역 및 항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로 기본권 보장 및 참여권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학칙 점검 항목을 구성하였다.

## 2) 고등학교 학교규칙 모니터링(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2017)

2017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와 함께 부산 지역 초등학교 308개교, 중학교 174개교, 고등학교 146개교, 특수학교 13개교 등 총 641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점검을 진행하여, 해당 학교별로 통보 및 개선을 권고하였다.

고등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한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고등학교 학교규칙 모니터링(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7)

항목
<b>1. 용의복장</b>
· 가방 색상
· 외투 색상/ 종류 제한
<b>2. 휴대폰</b>
· 소지 금지/ 등교시 일괄수거
· 제한 정도 최소화
· 시험기간중 반입 금지
<b>3. 교내외 생활</b>
· 남녀 학생 단들의 만남 장소 - 개방된 장소
· 단체 조직및 가입시 학교장 허가
· 단체/대회 참가 및 방문시 학교자 승인/허가
<b>4. 소지품</b>
· 검사
· 반환 절차 마련
<b>5. 선도규정</b>
· 학생진술권 보장
· 징계기준중 모호한 표현
· 반성문
· 서약서 각서
<b>6. 참여권</b>
· 정단/ 단체 가입 제한
· 입후보 요건 제한 - 성적, 추천, 출석, 징계 여부

### 3) 학교단위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단위 점검표를 구성하여, 학교 자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바라는 학교의 요청이나 특정 사안별 학교규칙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점검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 점검이 쉽고 자의적인 판단이 줄이기 위해 답변은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II-4〉 학교단위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표 (서울시교육청, 2020)

항목	질문 항목
<b>1. 징계/ 선도 규정</b>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항
	2) 재심요구 조항
	3) 임신, 출산 처벌 조항
	4) 학생간 교제 사유 처벌 조항
	4-1) 과도한 애정표현 금지
	5) 징계 회부 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절차
	6)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7) 단일사안 누적 배제징계(퇴학) 규정
	8)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결과 공고 조항
	9) 규정 내 처분 - '전학' 항목 없다
생활평점제	
	1) 상벌점 부여 명확한 근거 기준
	1-1) 상벌점 상황 공개, 게시 여부
	1-2) 상벌점 부여 세부 기준표 게시
	2) 과벌점자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규정
	3) 과벌점자 퇴학 규정은 없다.
	4) 상벌점 경감/ 회복 기회 운영 조항
	5) 상벌점 연도별 말소 조항
	5-1) 상벌점 대안 프로그램 운영

항목	질문 항목
<b>2. 규정 제·개정 절차</b>	
	1) 학생 위원 참여 조항
	2) 학생 발의권 조항
	3) 교육 3주체 의견수렴 조항
	4) 전체 학생 대상 토론회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실시 조항
	4-1) 학생위원 의 의견 게시시 사전 허가
<b>3. 학생생활규정</b>	
학생의무	1) 학교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 조항
개인정보	1) 생리공결 - 의사 소견서 제출 규정
	2) 개인정보 누설금지 규정
용모 관련	1) 두발 길이 불이익 조항
	1-1) 두발 복장 용모 규정 일정한 장소 게시
	2) 염색, 파마 등 두발 색상/모양 불이익 조항
	2-1) 명찰, 신발, 체육복 등 복장 관련 불이익 조항
	3) 화장 불이익 조항
	3-1) 손톱길이 제한 규정
	4) 양말, 신발 색상 형태 제한 조항
	5) 여학생 치마 / (반)바지 선택권 보장 조항
휴대품	1)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금지 조항
	1-1) 휴대폰 외 음향, 통신기기 사용 규정
	1-2) 휴대폰, 음향, 통신 기기의 소지 및 사용 - 이익/벌칙 규정
	1-3) 가방 등에 관한 규정
	2) 휴대폰 압수 근거(기간, 요건) 및 반환 규정
	3) 소지품 검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 - 학생인권 조례 13조2항 (안전성, 긴급성, 동의여부)

항목	질문 항목
<b>4. 학생자치활동</b>	
	1) 입후보 자격 제한(성적, 징계 등) 조항
	1-1)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증 - 선거관리위원장(청소년) 직인
	2)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및 발언권 보장 조항
	2-1) 복선정위원회 등 참석 및 발언권 보장 조항
<b>5. 기타</b>	
	5-1) 신체활동을 위한 운동장 또는 특정한 장소 제공

#### 4) 대전학생 생활규정 전수조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2021)

대전시 인권센터 및 지역 내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대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규칙을 점검하였다.

인권센터 및 지역내 활동가가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위원단을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내 88개 중학교, 고등학교 62개교 총 150개 학교의 생활규정을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권리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II-5〉 대전 학생생활규정 점검 (대전시 인권센터 등, 2021)

항 목	
<b>1. 총론</b>	
	· 학생의 권리 확인하는 원칙 조항
	· 불명확한 조항
<b>2. 차별받지 않을 권리</b>	
	· 차별금지 조항 명시
	· 성차별적 규정
	· 성적만을 이유로 한 차별: 기숙사나 정독실 입실 자격 선별 등에서
	· 이성교제 규제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한 학습권 침해: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b>3.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b>	
	·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 학생의견 게시판 사용, 의견 표현물 배포시 승인 요구 등
	· 반성문, 서약서 의무
<b>4. 개성 실현</b>	
	·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
	· 교복의 착용시기
	·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 고정형 명찰
	· 두발의 길이, 형태와 모양 제한
	· 학생의 화장 등 용모 에서의 불명확한 제한 요건
	· 화장 액세서리 등에 대한 일방적 금지

항 목	
<b>5. 휴대폰 및 소지품</b>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
	휴대폰의 학교내 반입 금지
	: 소지 자체 제한이나 이와 동일한 결과의 제한
	휴대폰 사용 위반시 장기간 압수
<b>5. 정보권</b>	
	학생 개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 명시
<b>7. 노동권</b>	
	학생의 아르바이트 금지나 교사 승인 규정
<b>8. 학생 자치권 및 참정권</b>	
	독립적 자치활동 제한
	: 회의소집, 학생회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 승인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및 예산
	후보자 자격요건 제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일괄적 제한
<b>9. 징계 절차 등에서의 권리</b>	
	학생의 징계내용 공개
	학생 및 보호자의 소명기회 보장
	학생 징계절차 및 조치결과 서면 통지
<b>10.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b>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절차 구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1/3 보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방법 명시
<b>11. 학생생활교육</b>	
	학생의 학생 선도 역할 조직
	백지동맹, 동맹휴학, 학생선동,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한 징계
	상벌점제 실시
	상·벌점제 벌점 누적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

## 5) 충청남도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남교육청, 2021/ 충남지역단체, 2023)

### ○ 2021년 충남 전체 학교 학교규칙 점검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점검위원 20명을 선발하여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는 개별 학교에 통지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점검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11-6〉 충남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청남도교육청, 2021)

항 목
<b>1. 규정 개정</b>
학생 의견 수렴과정
<b>2. 용모 및 복장</b>
두발 염색/ 퍼머
앞머리 길이
교복 착용
가방 형태
색조 화장, 장신구, 문신, 피어싱
고정형 명찰
반성문, 서약서 의무
<b>3. 선도부</b>
학생에 의한 지도
<b>4. 소지품/휴대폰</b>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거부 학생 징계
휴대폰/ 전자기기 일괄 금지/보관
<b>5. 이성교제</b>
이성간 교제, 신체 접촉
<b>6. 이동수단</b>
오토바이, 킥보드 운전



항 목	
<b>7. 집회/사상의 자유</b>	불법 집회 참석 및 불법단체 가입 불온문서 은닉, 제작, 게시, 유포 등
<b>8. 징계</b>	가중 처벌 과도한 징계 (출석 정지, 퇴학 등)_학습권 침해 상벌점제 운영 체벌 금지
<b>9. 학생회</b>	임원 출마 자격 제한 : 교내봉사 이상 징계 등 임기중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임
<b>10. 기타</b>	예의 / 인사하지 않은 학생 처벌

○ 2023년 충남지역 학교규칙 점검

2021년 충남교육청 점검에 이어, 2022년에 재점검을 예정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충남지역단체들이 2023년 중학교 22개교, 일반고 15개교, 직업계고 12개 학교 등 총 4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점검을 진행하였다.

2023년 점검은 2021년 점검항목에 기초하여 구성하였으며, 대전시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점검항목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021년 점검 항목에 비교하여, 보완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누적된 결석/ 흡연으로 인한 중징계(퇴학처분 등)
- ✓ 학생자치기구 임원 출마시 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장 승인

## 나. 점검 요약

### 1) 고등학교 학교규칙 모니터링(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2017)

부산소재 고등학교대상 학교규칙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용모복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 유형과 정도를 최소화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고 있다.

#### ○ 휴대폰 과도한 소지 및 사용 제한이 있다.

등교시 휴대폰 소지 또는 동의 없는 일괄 수거의 경우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동의 없는 수거 및 수업 시간 사용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공동체가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도록 교칙을 수정하도록 권장하였다.

#### ○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의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보관에 대해 법률위반 소지가 있으며, 위험물 소지 관련하여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 빈번하다.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의 용어는 보다 명확한 기준의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며, 순화된 용어 및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2) 대전학생 생활규정 전수조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2021)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및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대전시 전체 학교 학교규칙을 점검한 결과를 다음과 같다.

○ 학생생활규정의 목적 등에 학생인권/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학교가 적다.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조항을 둔 학교는 19.3%에 불과했다. 특히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의 경우, 전통을 빌미로 기존의 '선도 규정'의 명칭이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생활규정에서 '학습활동은 학생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각성하고 교수학습활동에 인내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 빈번하다.

자의적,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생답지 못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 불손한, 성행이 불량한, 불온, 불순한 등'의 표현을 가진 조항의 경우 중학교 78.4%, 고등학교(사립) 71.4%, 고등학교(공립) 58.8%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교사에게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말로 대들거나' 등의 표현이나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또는 '학생을 선동하여', '불순세력에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 '교칙을 문란하게'와 같은 표현이 남아있다.

## 3) 충청남도 학생생활규정 점검 (충남교육청, 2021/ 충남지역단체, 2023)

가) 2021년 점검 (충남교육청)

2021년 충청남도의 점검 결과는 인접한 대전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확인된 지점을 정리한다.

○ 용모/복장에 제한이 많다.

두발·복장·용모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60% 이상의 학교에서 나타났다.

: 중학교 59.1%, 일반고 61.2%, 특성화고 69.4%

○ 강제적인 반성문 작성이 남아있다.

학생지도에서 차별이나 특별이라는 형태로 간접 체벌을 하고 있다.

○ 반민주적 표현이나 제한이 있다.

백지동맹, 불손·불온한 집단행동과 같은 군사독재시절의 규정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대립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특히 충청교육청의 교육지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학교공동체에서 자치를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이라는 지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다.

○ 학생노동권 침해가 있다.

현장실습 관련 조항의 경우, 규정 대부분이 현장실습생의 의무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성장에 대한 학교 및 회사의 책임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 2023년 점검 (충남지역단체)

2023년의 충청남도 점검은 모호한 표현이 개선되고, 가중 징계 등의 문제점이 완화되었으나, 이외에는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심각한 점검 결과를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용모/복장을 포함한 제한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부 학교는 머리 길이나 속옷 규정 및 스타킹 색깔까지 제한하고 있다.

〈A 고등학교〉

- ✓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 2. 여학생의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한다.....

〈B 중〉

- ✓ 동절기에 블라우스 대신 목티(검정색, 회색, 진한 회색, 흰색, 베이지색) 착용이 가능....., 생활복 안에 반팔 티셔츠(검정, 흰색, 회색) 착용 허용..

검정색과 살색 스타킹 허용하며 ...  
 ✓ 명찰은 교복의 지정된 위치에 이름을 새긴다.

○ 간접 및 정신적 차별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훈육방법으로 간접적이거나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는 규정이 있다.

<C 중>  
 ✓ 훈계 방법으로... 교실 뒤에 서 있기, ...반성문 쓰기, ...손 들고 있기, ... 벽 보고 서 있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교사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D 중>  
 ✓ 학생 차별(매, 기합,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언어폭력)을 금지하되, 차별이나 특별을 줄 수 있다.

○ 구시대적 표현이 남아 있다.

백지동맹, 불온한 사상 등 권위주의시대의 표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E 고>  
 ✓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는 다음 사항을 규제한다. 수업 종료 경례를 하기 전에 책이나 공책 필기도구를 집어넣는 행위...

<D 중>  
 ✓ ...교원의 말에 비꼬는 흉내를 냈을 때, 짜러보기, 깔롱거리기, 잘못을 아니라고 했을 때

<F 고>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 불법 집회나 단체에 참석하거나 가입,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맹 동참...

### 3. 소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바와 함께, 국내 정책 및 학교규칙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에 대한 통제를 위한 규정이 많이 남아있으며, 학생의 성장과 자유권, 그리고 참여권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다음의 지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도록 한다는 점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 ○ 모호한 표현과 자의적 기준의 확인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항목이 자의적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한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교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모호함이 학생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이나 기준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 ○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학생의 자유권 보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장 및 용모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 변화 압력이 생겼다.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용모(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 삭제나 축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성적 및 기타의 차별의 해소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함께, 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학교 시설이용이나 학습과정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규정을 확인하여,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화되는 학생 대상에 맞춰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조항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학생 참여 보장

학생생활규정은 반드시 학생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지켜야 하는 학교자치규범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자치규범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지, 절차상의 요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의 실질적인 학생 참여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7)가 있다. 그러나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학교단위 점검에서는 제외된다.

### ○ 권위주의적 규정의 해소

기존의 학생생활규정 점검에서 ‘학생의 신분에 맞는’, ‘개정의 정이 없는’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을 선동하여’와 같은 권위주의적 표현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권위주의 시대의 찌꺼기로 학생의 성장이나 민주적 학교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03

## 문헌 및 사회환경 조사

---

1. 연구 절차
2.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3. 추이 분석
4. 소결



## 제3장 학생생활규정 조사

### 1. 연구 절차

#### 가. 학생생활규정 조사 방안 구성

##### 1) 학생생활규정 점검기준 마련

###### ○ 학교규칙 중 점검 대상 규정

이 연구는 학교규칙에서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학교규칙은 주로 학생생활규정이나 학교생활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학교는 선도규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남아있다. 그리고 학생생활에 밀접한 학생자치규정 및 징계 및 상벌점제 규정까지 점검하였다. 단 이번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과 일반적 학교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였다.

###### ○ 점검안 초안 구성 및 검토

2021년 대전학생생활규정 점검에 참여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및 참여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안 초안을 검토 받았다.

##### 2) 표본 구성

###### ○ 학교단위 주요 요소의 구분

기존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고등학교 요소를 (1) 설립형태, (2) 남녀공학여부, (3) 학교급, (4) 고등학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설립형태 및 남녀공학여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여기에 더해 전국 단위 조사이므로 지역구분을 더하였다. 이처럼 총 5개의 기준을 두고, 2022년 말 기준의 전국 학교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학교규정 점검 표본을 구성하였다.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유무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지역 요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본 구성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표본 구성 원칙

- (1) 학교단위 표본 추출 : 학교규칙에 대한 연구이므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를 모집단 추출의 기준으로 하였다.
- (2) 표본 규모 : 전체 학교 수의 10%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 (3) 학교설립형태 중 국립의 경우 모집단 수가 적어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립과 공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 (4) 고등학교 유형에서 자율고의 경우, 모집단 수가 적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특성이 유사한 특목고와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 (5) 모집단내 5개 학교 요소별에 따른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 표본구성표를 구성하였으며,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하게 학교를 선정하였다.

○ 조사 대상 (표본 구성표)

위의 기준에 따라, 중학교 (300개 학교)/ 고등학교 (250개 학교)를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가 있었다. 실제 점검한 학교의 수는 중학교 (293개 학교)/ 고등학교 (245개 학교)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가) 중학교

지역	표본수	설립주체		공학여부		
		공립	사립	남녀공학	녀	남
<b>중학교 계</b>	<b>293</b>	<b>201</b>	<b>92</b>	<b>196</b>	<b>54</b>	<b>43</b>
강원도	15	12	3	10	3	2
경기도	59	45	14	50	4	5
경상남도	26	15	11	13	7	6
경상북도	24	12	12	12	7	5
광주광역시	9	5	4	6	2	1

지역	표본수	설립주체		공학여부		
		공립	사립	남녀공학	녀	남
대구광역시	12	7	5	9	2	1
대전광역시	8	6	2	5	2	1
부산광역시	15	10	5	7	4	4
서울특별시	31	18	13	22	6	3
세종시	2	2	0	2	0	0
울산광역시	5	5	0	4	1	0
인천광역시	14	12	2	8	3	3
전라남도	22	17	5	14	4	4
전라북도	19	12	7	15	2	2
제주자치도	4	3	1	2	1	1
충청남도	16	11	5	10	3	3
충청북도	12	9	3	7	3	2

나) 고등학교

지역	표본수	학교유형			설립유형		공학여부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 + 특목고	공립	사립	남녀공학	녀	남
<b>고등학교 계</b>	<b>245</b>	<b>148</b>	<b>45</b>	<b>52</b>	<b>147</b>	<b>98</b>	<b>158</b>	<b>40</b>	<b>47</b>
강원도	11	7	2	2	9	2	7	2	2
경기도	51	38	7	6	37	14	46	2	3
경상남도	20	14	3	3	12	8	12	3	5
경상북도	20	11	5	4	10	10	11	5	4
광주광역시	7	5	1	1	4	3	3	2	2
대구광역시	10	5	1	4	4	6	6	2	2
대전광역시	6	3	1	2	3	3	4	1	1
부산광역시	15	9	3	3	7	8	8	3	4
서울특별시	34	17	6	11	12	22	17	8	9
세종시	2	1	0	1	2	0	2	0	0
울산광역시	6	4	0	2	5	1	4	1	1

지역	표본수	학교유형			설립유형		공학여부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 + 특목고	공립	사립	남녀공학	녀	남
인천광역시	11	5	3	3	8	3	4	4	3
전라남도	15	8	4	3	10	5	12	1	2
전라북도	14	9	3	2	7	7	7	3	4
제주자치도	3	2	1	0	2	1	1	1	1
충청남도	11	6	2	3	8	3	8	1	2
충청북도	9	4	3	2	7	2	6	1	2

### 3) 점검 절차

#### ○ 학생생활규정 점검

학생생활규정 점검표<sup>19)</sup>를 사용하여, 연구진이 개별 학교규칙을 점검하였다.

점검은 크게 (1) 규정 내 학생인권/기본권/차별금지 규정, (2) 규정 구성에서의 학생참여, (3)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4) 교내외 활동 제한, (5) 용모/복장 제한, (6) 징계 및 상벌점에 대해 진행하였다.

#### ○ 이중 점검

규정에 대한 점검은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간 편차를 가지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2차 점검을 다른 연구자가 진행하여 보완하였다.

### 4) 교육부 고시에 따른 2회 점검 및 비교 분석

2023년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1 제정) (이하 교육부 고시)가 있었으며, 해당 고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19) 학교생활규정 점검표 (부록 참고)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일한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2회의 점검을 진행하였다. 7월 1일자 학생생활규정을 기준으로 한 1차 점검과 더불어, 202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학생생활규정을 기준으로 한 2차 점검을 진행하였다.

교육부 고시에서 학생생활규정 점검 사항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규정의 변화 및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하였다.

### ○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준 제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갈등이 크다는 점에서, 제1장 총칙 제4장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 목적 및 긴급상황에서 사용을 허용하되, 허용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1, 2차 점검에서는 휴대폰 일괄 수거 및 위반시 압수 규정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구성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제한의 경우도 자신과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5조와 6조에서 수업/학습권의 보장,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보장을 위한 학생지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위에서 기본권 보장에 근거한 제한 범위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제7조 (인성과 대인관계)에서 품성, 예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로 언어 사용 및 학교폭력예방이 들어가 있다. 언어사용 및 학교폭력예방은 제6조의 안전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추가된 내용은 제1항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과 예절이 추가된 내용이다. 또한 제8조에 제2항에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와 복장을 지도 범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7조와 제8조의 지도 범위의 구성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만이 아닌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1,2차 점검에서는 복장/용모에 대한 규정 등을 통해 변화를 확인하였다.

### ○ 분리조치의 구성

제12조 제6항에 생활지도방식으로 학생의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분리 조치의 근거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검 및 인식조사에서 이에 대한 항목이 없었으며, 2차 점검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정도를 파악하였다.

### ○ 소지품 검사의 구성

제12조 제8항에 소지품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생활규정에서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해당 학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강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해당 학생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 ○ 훈계 방법으로서의 ‘성찰적 글쓰기’ 과제 부여

제13조 (훈계) 제3항에서 훈계 방법으로서 ‘성찰하는 글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반성문의 다른 표현이며, 이번 1,2차 점검에서 이러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 나. 분석 방법

### 1) 학교 요소별 비교분석

대상 학교의 요소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비교분석을 제공한다.

#### ○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 ○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의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형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자율형고는 모집단 및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비교분석이 힘들었으며, 특성이 유사한 특목고와 묶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형은 (1) 일반고, (2) 특성화고, (3) 특목고+자율형고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 설립형태 (국·공립/ 사립)

국립학교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립학교와 묶어 비교 분석하였다.

#### ○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여부에 따라, (1) 공학, (2) 남학교, (3) 여학교 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2) 지역별 비교분석

대상 학교의 지역 특성에 따른 구분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하였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제한이나 참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일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sup>20)</sup>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이 중요한 기

20) 인천의 경우, 학교공동체에 대한 조례로 학생인권조례와 차이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학교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을 구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 있는 경우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1)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이하 '조례 유'), (2) 학생인권조례안 논의 지역(이하 '논의 유'), (3) 학생인권조례 논의 없는 지역(이하 '논의 무')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하나의 제도이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노력 과정이 학교문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 지역단위

지역단위는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모집단수 및 표본수가 적어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지역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지역별 요소에 따른 비교분석은 학교요소별 비교 분석과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 3) 요소별 차이 확인

요소별 비교분석에서 요소별 수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 (1) 하나는 긍정/부정 답변의 비율의 차이이다. 요소별 답변 비율이 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5%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 (2) 다른 하나는 유의확률이다. 기준으로 한 유의수준은 0.01(1%)로 하여, 0.01 수준 이내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추가로 유의확률을 0.1(10%), 0.01(1%), 0.001(0.1%)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표시하였다.<sup>21)</sup>

예를 들어,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에서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

21) 여기서 사용한 유의확률은 양측검정 유의확률이며, '해당 요소별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옳다는 가정에서, 관측된 수치를 넘어설 확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의기준을 0.05(5%)이나 0.01(1%)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한다. 여기서는 0.01을 기준으로 하되, 0.1과 0.001을 추가하여 표기하였다. (David E. Gray, *Doing Research in the Real World*, 5th Ed, (2022), SAGE Publications Ltd

있다'라는 점검 항목의 경우, '있음'이라는 점검 결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래에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1) 해당 요소별 답변비율의 차이가 최대 19.9%로 기준인 5%를 넘었으며, (2)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1(1%)보다 적다. 이처럼 두 가지 기준에서 요소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추가로 답변 비율의 차이가 관측되었으나, 유의확률이 0.01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경우를 포함하여, 통계적 차이가 거의 없는 수치도 참고하기 위해 함께 표로 정리하였다. 이 경우는 해당 수치를 작은 글씨와 기울림체로 구분하였다. 이 수치는 통계적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I-1〉 요소별 차이에 따른 비교분석 표기

요소	구분	답변수	있음 (%)	유의확률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77.7	〈 0.01
	특성화고	45	57.8	
	특목+자율고	52	59.6	

## 2.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2023년 12월 31일 기준)

### 가. 항목별 결과

점검 항목별 분석과 더불어 학교 요소별 비교 분석 결과를 함께 정리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소별 유의확률이 0.1보다 크거나, 답변 비율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해당 요소별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치를 작은 글씨와 기울림체로 표에 정리하였다.<sup>22)</sup>

#### 1) 학생생활규정 목적 및 가치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조항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항목: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에서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합계	538	67.8	365	173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5.9	> 0.1
	고등학교	245	70.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77.7	< 0.01
	특성화고	45	57.8	
	특목+자율고	52	59.6	
설립 형태	국·공립	348	68.1	> 0.1
	사립	190	67.4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69.2	> 0.1
	남학교	94	64.9	
	여학교	90	65.6	

\* 학교급, 설립형태,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비율 차이가 5%이내이거나, 유의확률이 0.1이상으로 요소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경우 표에서 작은 글씨와 기울림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수치해석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22) 별도 자료인 기초분석자료보고서에서 설문 항목 답변에 대한 전체 요소별 분석을 제공합니다.

생활규정의 목적에 학생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365개교(68%)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 항목: 학생생활규정에서 차별금지조항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 제시 항목과 비슷하였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차이가 5.1%로 나타났으나, 유의 확률이 0.01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정도의 약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합계	537	67.6	363	174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	70.9	> 0.1
	고등학교	245	63.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65.5	> 0.1
	특성학교	45	68.9	
	특목+자율고	52	53.8	
설립 형태	국·공립	347	68.6	> 0.1
	사립	190	67.2	
남녀공학여부	공학	353	69.7	< 0.1
	남학교	94	64.6	
	여학교	90	65.6	

차별금지조항에 차별 요소를 나열한 경우는 일부 학교에 국한되었다.

\*예시: A 고등학교 생활규정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 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항목: 학생생활규정 내 성별/임신 출산에 따른 불이익 조항이 있다.

성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차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 조항 5개교(0.9%),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조항 3개교(0.6%)로 극히 소수의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사유로 근거한 불이익 규정은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개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 : 성별에 따른 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는 학교 (5개 고등학교)
  - 학교 내 복장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남녀에 따른 세부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시: B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8-1,2조(용의복장규정) 제2항

제8-1조(여)

나. 셔츠는 학교에서 지정한 블라우스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절기에 한하여 검정, 흰색, 밤색, 감색 등과 같은 배열의 플라 셔츠와 니트 조끼 착용을 허용한다.

다. 교복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까지로 하고, 블라우스의 길이를 변형시켜서 착용하거나 교복 치마의 주름을 전부 박거나 전부 트는 변형을 금한다.

제8-2조(남)

나. 교복 바지를 인위적으로 좁게(스키니 등) 줄이거나 넓게 하지 않는다.

-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조항을 가지고 있는 학교 (3개 고등학교)
  - 임신/출산에 따른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예시: C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67조 (생활지도방법) 제2항

2. 학생에게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징계를 내릴 경우 인성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학생으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성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의 입장을 전달하여 학생의 징계를 결정한다.

○ 항목: 학생생활규정 내 학생간 교제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항이 있다.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간의 교제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항이 있는 경우는 21개교 (3.9%)로 일부 학교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학교 대부분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규정 정도로 그치지만, 이성 교제 전반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며, 22개 고등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합계	538	4.5	24	514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0.7	< 0.001
	고등학교	245	9.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9.5	> 0.1
	특성학교	45	4.4	
	특목+자율고	52	11.5	
설립 형태	국·공립	348	4.3	> 0.1
	사립	190	4.7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5.6	> 0.1
	남학교	94	1.1	
	여학교	90	3.3	

\*예시: D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9조 (이성) 제9항  
9. 이성교제로 인하여 학생민원이 제기되거나 교사에게 훈계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학기 중 주말 잔류, 방학기간 잔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일부 학교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이성교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시: E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2조 (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남녀 학생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⑥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을 통해 외모,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유형의 언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식한다.
- ⑦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 및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 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 2) 규정 제·개정 과정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제·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학교 구성원 3주체로서 학생들의 의결권을 전체의 1/3이상 보장하는지를 점검하였다.

○ 항목: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위원 참여 조항이 있다.

생활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나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의결권이 없는 참관이나 발언권을 주는 경우는 의결권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참여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활규정 외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규정을 학교알리미 등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는 무로 표시하였다.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458개교 (88.8%)이며,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의 규정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8	88.8	458	58	22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86.4	< 0.01
	고등학교	245	91.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92.8	< 0.01
	특성화고	45	90.5	
	특목+자율고	52	89.8	
설립 형태	국·공립	348	88.0	> 0.1
	사립	190	90.1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88.0	> 0.1
	남학교	94	93.3	
	여학교	90	86.9	

○ 항목: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에서 학생이 1/3 이상이 된다.

학생들에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의결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1/3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결권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교사 의결권을 두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경우 학생의 독립적 의결권이 1/3 이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중학교(74.7%)가 고등학교(64.6%)에 비해 10.1%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의결권을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목고/자율고가 해당 규정이 적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8	70.2	366	155	17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74.7	< 0.001
	고등학교	245	64.6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66.7	< 0.1
	특성화고	45	76.2	
	특목+자율고	52	49.0	
설립 형태	국·공립	348	71.2	> 0.1
	사립	190	68.5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72.2	> 0.1
	남학교	94	67.8	
	여학교	90	65.1	

충청북도 2개 학교의 경우, 학생의 의결권을 50%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예시: A 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60조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항목: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의결과정 조항이 있다.  
 (전체 학생대상 토론회(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462개교, 89.5%). 학교 요소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수	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8	89.5	462	54	22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90.6	< 0.1
	고등학교	245	88.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92.0	> 0.1
	특성화고	45	85.7	
	특목+자율고	52	79.6	
설립 형태	국·공립	348	88.9	> 0.1
	사립	190	90.7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88.6	> 0.1
	남학교	94	92.1	
	여학교	90	90.5	

### 3) 학생 자치 활동 및 표현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하다. 즉 학생 자치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 자치 활동에서의 독립성과 활성화에 관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1) 학생자치기구의 의결사항이나 활동에 대해 교사나 학교장의 지시나 승인 과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 학생회 임원 입후보 조건에서 교사/학교장/보호자의 승인이 요구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3) 자치활동에 대한 공간/예산이 안정적으로 구성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학생자치 공간/예산의 경우, 규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서는 학교 예산의 1%를 학생회 활동 예산으로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예시: F 고등학교 생활규정 제16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 항목: 독립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학생회 자치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학생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별도의 교장이나 교사의 승인이 요구되거나 자치활동에서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학생자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있으며,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무로 표시하였다(63개교, 11.7%). 아래의 제한 없음 비율은 무를 제외한 답변 중 비율이다. 절반가량의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교장 승인 등의 추가 절차를 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중에서 특목고/자율고가 일반고에 비해 19.6%라는 매우 큰 차이로 제한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확률은 0.1이하로 약한 통계적 차이로 나타났다.

	학교수	제한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8	48.8	232	243	63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49.1	< 0.001
	고등학교	245	48.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41.9	< 0.1
	특성학교	45	55.0	
	특목+자율고	52	61.5	
설립형태	국·공립	348	45.8	> 0.1
	사립	190	54.5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49.8	> 0.1
	남학교	94	43.9	
	여학교	90	62.3	

○ 항목: 학생회 입후보 조건에서 교사 추천이나 선출 후 교장 승인이 요구된다.

학생회 구성에 있어, 학생들의 추천/투표 외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04개 교(42.9%)의 학교에서 교사의 추천이나 교장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경력여부 및 출석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출마 자격을 제한으로 파악하였다.

	학교수	승인필요 (%)	승인필요	제한없음	무
합계	538	42.9	204	272	62

요소	구분	학교수	승인필요(%)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38.5	< 0.001
	고등학교	245	48.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47.5	> 0.1
	특성학교	45	47.5	
	특목+자율고	52	53.7	
설립 형태	국·공립	348	41.6	> 0.1
	사립	190	45.2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41.6	> 0.1
	남학교	94	42.5	
	여학교	90	48.1	

그리고 성적기준을 입후보 조건으로 두고 있는 학교도 있었다.

또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등의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예시: G 고등학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5조 (후보자의 자격 제한)  
제5조.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  
...  
3.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학업성적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담임교사의 의견 진술(추천)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자격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 2학년 : 직전 학기(전 학년 2학기)의 성적이 이수 과목의 1/2 이상이 5등급 이하인 학생  
나. 1학년 : 1학기 중간고사의 각 교과목의 원점수가 학년 평균보다 낮은 과목이 1/2 이상인 학생  
다. 학급회 임원 선출 시의 학업성적은 1학년의 경우 반 편성자료 성적이 학급 석차의 50% 이내인 자로 하며 2, 3학년은 위의 '가'를 따른다.

\*예시: H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6조 (학생회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이상의 입후보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학생회 구성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생회 선출직 임원의 경우에도 교내 징계를 받게 되면, 자격 박탈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학교도 5% 정도 있었다. 해당 규정의 경우, 위 설문항에서의 출마 자격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도 학생회 구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학교는 후보의 징계경력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마 자격으로 두지는 않고 있다.

\*예시: I 고등학교 제26조 (학생회 회원자격)  
...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 봉사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학생회 구성 자체가 민주시민 역량강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예시: J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77조 (등록무효 및 사퇴) 제1항  
①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재학기간 중 징계이력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징계사유, 징계 종류, 징계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 항목: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이 있다.

생활규정 및 학생자치규정에서 학생회 산하 부서 및 활동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등교지도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점검하였다.

	학교수	지도 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7	33.9	159	310	68

요소	구분	학교수	지도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	24.2	< 0.001
	고등학교	245	47.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0.4	> 0.1
	특성화고	45	47.2	
	특목+자율고	52	41.0	
설립 형태	국·공립	348	33.3	> 0.1
	사립	190	35.0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34.3	> 0.1
	남학교	94	33.8	
	여학교	90	32.5	

점검한 학교 중 159개교(66.1%)에서 학생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학교는 (바른)생활지도부나 선도부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자율, 인권, 인성, 질서, 안전, 지킴이, 소통, 우애, 리더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인성인권복지부)

위 표의 ‘학생의 지도 활동 있음’ 비율은 무(관련 조항 없음)를 제외한 비율이다.

학생회의 규정에서 학생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규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는 47.9%로 절반 가까이 남아 있다.



#### 4) 교내 활동 제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학교내 학생들의 자유권 침해중 교내 활동 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자문회의에 제기된 제한에서 다음의 4가지 지점을 점검하였다. (1) 다른 반 출입 제한, (2) 교내 게시 및 자료 배포 제한, (3) 온라인 단체방 개설 제한, (4) 학내 동아리 개설 및 활동 제한

전반적으로 해당 제한이 규정에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학내 동아리 개설이나 활동에서 교사/학교장의 승인 및 감독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205개교(41.0%)로 상당히 확인되었다.

○ 항목: 다른 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반 출입을 제한하는 비율이 37개교(15.1%)로 중학교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수	제한함(%)	제한함	제한 없음
합계	538	9.5	51	487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	4.5	< 0.001
	고등학교	245	15.1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15.5	> 0.1
	특성화고	45	15.6	
	특목+자율고	52	13.5	
설립 형태	국·공립	348	10.9	> 0.1
	사립	190	6.8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9.0	> 0.1
	남학교	94	9.6	
	여학교	90	11.1	

○ 항목: 교내 게시 및 자료 배포가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교내 게시 등에 대한 제한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함	제한없음
합계	538	14.9	80	458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15.7	> 0.1
	고등학교	245	13.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12.8	> 0.1
	특성학교	45	20.0	
	특목+자율고	52	11.5	
설립형태	국·공립	348	12.9	< 0.1
	사립	190	18.4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15.0	> 0.1
	남학교	94	10.6	
	여학교	90	18.9	

○ 항목: 학내 동아리 개설 및 활동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학내 동아리 활동에 있어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제한하는 비율이 3% 높았으며, 고등학교 내에서는 특목고/자율고가 고등학교 평균대비 16.0% 더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함	제한없음	무	무
합계	538	41.0	205	295	38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39.7	< 0.001
	고등학교	245	42.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37.9	< 0.1
	특성학교	45	42.5	
	특목+자율고	52	58.5	
설립 형태	국·공립	348	39.4	> 0.1
	사립	190	43.9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42.3	> 0.1
	남학교	94	33.7	
	여학교	90	43.4	

○ 항목: 온라인 단체방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함	제한없음
합계	546	0.4	2	544

## 5) 정치 사회 활동 - 교외 활동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고등학생들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2020년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만16세 이상 학생들은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치 참여권 보장이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참여권 확대와 더불어 사회 참여의 확대는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 목적과도 부합되므로, 학생들의 정치 및 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가입 및 정치/사회 활동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제시하여,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치 및 사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학교 밖 활동에 대해서 '폭력/불량 단체 활동 방지'라는 모습을 띄는 학교가 많았다. 즉,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의 정치/사회 활동에 대한 고려 자체가 드물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시: K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4조 (교외생활) 제4항

제24조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항목: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점검에서는 교외활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는 무로 표시하였으며, 교외활동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제한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표에서의 제한 없음은 해당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함	제한없음	무
합계	538	22.1	108	380	50

요소	구분	학교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23.7	< 0.001
	고등학교	245	19.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15.0	> 0.1
	특성학교	45	28.9	
	특목+자율고	52	25.6	
설립 형태	국·공립	348	20.7	< 0.1
	사립	190	24.8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22.2	> 0.1
	남학교	94	22.2	
	여학교	90	21.8	

중학교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규정이 68개교(23.7%)로 고등학교 40개교(19.9%)에 비해 조금 더 많이 확인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내 정치 활동의 금지나 학생회 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시: L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38조 (학생회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때에는 학생선도협회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한다.

○ 항목: 사회단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치활동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단체 활동에 대해 교장/교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정치활동에 비해 더 많이 확인되었다.

학교요소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133개교(46.3%)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74개교(4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함	제한없음	무
합계	538	39.0	192	300	46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46.3	< 0.001
	고등학교	245	28.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24.2	> 0.1
	특성학교	45	32.4	
	특목+자율고	52	40.0	
설립 형태	국·공립	348	36.5	< 0.1
	사립	190	43.8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39.5	> 0.1
	남학교	94	36.6	
	여학교	90	39.5	

일부 학교의 경우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을 징계/별점 항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 동아리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었으나, 폭력/불량 행위를 위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및 체육, 사회 단체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외 활동에 대한 제한은 보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민주시민'의 중요 활동중 하나라는 점에서 해당 권리에 대한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p>*예시: M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9조 (징계의 기준)중 (별표 1) 징계 기준</p> <p>9. 집단행위 : ①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p> <p>② 허가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p>
--

앞서 제기한 정치활동에 대한 사례로 충청북도의 N 고등학교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2절 교외활동에 별도의 조항으로 정당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 N 고등학교〉

### 제2절 교외 생활

#### 제39조【정당 활동】

- ①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선거일 제외)하나, 확장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상대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정당활동 관련) 만 16세 이상 학생은 정당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한다. 단, 후원회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은 선거운동과 만18세 미만 학생의 당내경선운동은 금한다.
- ③ (출결·평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의 경우, 기타결석처리가 원칙이나 본회의상임위 당일에 한해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의 경우 결석 유형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당 가입자의 정당활동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성적에서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결석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교외활동(n일)’로 기재한다. 단, 정치활동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④ (학적) 학교의 장은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과 의정활동과 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으로 인한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여부 및 출석일수를 판단하여 졸업, 유급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⑤ 기타 학생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경우,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 6) 용모/복장 제한

2016년 학생들의 학교 내 인권실태조사 및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등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대해 두발 및 용모, 복장, 그리고 휴대폰 관련한 규제가 상당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2016~20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용모, 복장에 관련된 권고 결정이 상당하며, 서울시의 2022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건수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용모 복장에 대한 제한 중,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는 따로 점검항목을 두어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복장이나 교내 게시물에 차별/혐오 표현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이 경우는 제한 규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항목: 모호한 표현의 제한이 있다.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점검이라는 점에서, 2회에 걸친 교차 점검을 진행하였다. 321개교(59.7%)의 학교 규정에서 모호한 표현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수	모호한 표현 있음(%)	있음	없음
합계	538	59.7	321	217
요소	구분	학교수	모호함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1.8	> 0.1
	고등학교	245	57.1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4.7	> 0.1
	특성학교	45	62.2	
	특목+지율고	52	59.6	
설립 형태	국·공립	348	56.0	< 0.1
	사립	190	66.3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60.2	> 0.1
	남학교	94	64.9	
	여학교	90	52.2	



사립학교에서 66.3%로 모호한 표현이 더 빈번하다. ‘학생신분에 맞는’,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교풍’, ‘사회통념상’, ‘상식적’이라는 임의적인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화려한’, ‘고가의’, ‘비치는’과 같은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 항목: 머리 퍼머나 염색에 대한 제한이 있다.

머리 길이나 형태, 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가 340개교(65.3%)로 상당한 학교 규정에서 확인되었다. 여러 색의 머리카락/탈색/원색을 금지하는 등 제한 범위를 줄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학교 내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있음	제한없음	무
합계	538	65.3	340	181	17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6.5	> 0.1
	고등학교	245	63.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61.1	> 0.1
	특성학교	45	59.1	
	특목+자율고	52	75.5	
설립 형태	국·공립	348	62.6	> 0.1
	사립	190	70.1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65.9	> 0.1
	남학교	94	65.2	
	여학교	90	62.8	

학교요소별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한의 내용 중, ‘단정한 머리’, ‘머리를 뒤로 묶는다’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다.

○ 항목: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화장 및 장신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점검하였다.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링 귀고리’, ‘칼라렌즈’, ‘피어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최소규제’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최소규제 30개교, 5.6%)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는 학교가 314개교(60.6%)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학교 185개교(65.3%)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125개교(68.1%)로 매우 많은 학교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수	제한함(최소규제 제외) (%)	제한함	제한 없음	최소	무
합계	538	60.6	314	174	30	20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5.4	< 0.01
	고등학교	245	54.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7.3	> 0.1
	특성학교	45	53.5	
	특목+자율고	52	49.0	
설립 형태	국·공립	348	56.4	< 0.1
	사립	190	68.3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60.3	> 0.1
	남학교	94	58.4	
	여학교	90	64.0	

○ 항목: 신발에 대한 제한이 있다.

장신구/화장에 대한 제한에 비해 신발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6개교, 39.5%). 안전을 위해 슬리퍼나 높은 굽 신발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최소 규정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였다.(최소규제 46개교, 8.6%)

학교요소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수	제한함(최소규제 제외) (%)	제한함	제한 없음	최소	무
합계	538	39.5	206	270	46	16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39.2	> 0.1
	고등학교	245	39.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38.7	> 0.1
	특성화고	45	46.7	
	특목+자율고	52	36.7	
설립 형태	국·공립	348	37.0	< 0.1
	사립	190	44.0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38.4	> 0.1
	남학교	94	39.6	
	여학교	90	43.5	

○ 기타 용모 관련 항목: 양말, 스타킹, 속옷/ 외투에 대한 제한이 있다.

양말, 스타킹, 속옷에 대한 제한을 두는 학교는 77개교(14.8%)로 적었다.

양말, 스타킹 등에 대한 제한은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 남학교는 1개교(1.1%)에 그친 반면, 여학교의 경우 23개교(27.1%)에서 해당 제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외투에 대한 제한은 73개교(14.1%)에서 확인되었으며, 73개교 중 63개교가 위에서 확인한 양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단 학교요소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수	제한함 (%)	제한있음	제한없음	무
합계	537	14.9	77	441	19

요소	구분	학교수	제한함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14.8	> 0.1
	고등학교	245	15.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14.9	> 0.1
	특성화고	45	15.9	
	특목+자율고	52	14.3	
설립 형태	국·공립	348	12.8	> 0.1
	사립	190	18.5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15.4	< 0.001
	남학교	94	1.1	
	여학교	90	27.1	

## 7)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에서는 (1)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2) 소지 금지 물품 목록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 대한 규정은 학교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교육청 등에서 제시된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항목: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이나 금지 물품 소지 등의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제보나 CCTV 등의 근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401개교(77.6%)의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소지품 검사 비동의시 후속 절차의 유무나 내용에서는 학교별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후속 절차로, 보호자 확인 및 동의, 거부확인서 작성, 선도위 심의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학생에게 동의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본 점검에서는 이를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구분하지 않았다.

	학교수	무동의 검사 있음 (%)	예	아니오	무
합계	538	22.4	116	401	21

요소	구분	학교수	무동의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13.6	< 0.001
	고등학교	245	33.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27.9	< 0.01
	특성화고	45	29.5	
	특목+자율고	52	54.3	
설립 형태	국·공립	348	23.1	> 0.1
	사립	190	21.2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23.0	> 0.1
	남학교	94	22.5	
	여학교	90	20.0	

116개교(22.4%)의 학교에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규정이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 동

의 없는 소지품 검사규정이 77개교(33.5%)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특목고/자율고에서 25개교(54.3%)로 전체 평균에 대비 31.9%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 항목: 소지품 검사 물품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소지를 금지하는 물품 목록을 제시하는 학교는 444개교(85.7%)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금지 목록에서의 물품은 안전 관련, 음란물이나 흡연/음주/약물 관련,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물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학교에서 256개교(98.5%)로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목고/자율고가 30개교(65.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었다.

	학교수	목록 있음(%)	예	아니오	무
합계	537	85.7	444	74	19

요소	구분	학교수	목록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	89.5	< 0.01
	고등학교	245	81.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84.5	< 0.01
	특성화고	45	86.4	
	특목+자율고	52	65.2	
설립 형태	국·공립	348	86.4	> 0.1
	사립	190	84.0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86.0	> 0.1
	남학교	94	84.4	
	여학교	90	86.0	

## 8) 휴대폰 사용 제한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휴대폰 및 정보통신기기의 제한과 학습내 사용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진행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휴대폰 규정으로 (1) 등교시 일괄수거, (2) 규정 위반시 휴대폰 압수, (3) 압수시 반환에 관하여 점검하였다.

○ 항목: 휴대폰을 등교시 일괄수거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규정이 있다.

학교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교실이나 교무실내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사의 동의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304개교(58.2%)의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소지 금지하는 학교가 194개교(67.6%)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교가 29개교(64.4%)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립학교의 경우 206개교(60.2%)로 사립학교에 비해 더 빈번하게 소지 금지 규정이 있었다.

	학교수	일괄 수거	금지	아니오	무
합계	538	58.2	304	218	16

요소	구분	학교수	일괄 수거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7.6	< 0.001
	고등학교	245	46.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41.8	< 0.1
	특성화고	45	64.4	
	특목+지율고	52	44.9	
설립 형태	국·공립	348	60.2	< 0.1
	사립	190	54.4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58.3	> 0.1
	남학교	94	61.5	
	여학교	90	54.7	

○ 항목: 규정위반하면 휴대폰을 압수하는 규정이 있다.

수업중 사용이나 소지 금지된 학교내 사용 적발에 따른 휴대폰 압수에 대한 규정은 314 개교(61.9%)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휴대폰 압수 규정이 있는 학교가 189개교(66.1%)로 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많이 확인되었다.

	학교수	압수 규정(%)	금지	아니오
합계	538	61.9	314	193
요소	구분	학교수	압수 규정(%)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66.1	< 0.001
	고등학교	245	56.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8.1	> 0.1
	특성학교	45	59.0	
	특목+자율고	52	50.0	
설립 형태	국·공립	348	64.8	> 0.1
	사립	190	56.5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61.7	> 0.1
	남학교	94	65.2	
	여학교	90	59.3	

○ 항목: 휴대폰 압수 규정이 있는 경우, 휴대폰 반환 규정이 있다.

압수 규정이 있는 학교 314개교 중에서, 반환규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129개교(38.6%)로 상당하며, 이 경우 별도의 규정 없이 교사의 판단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종료 후 반환하는 규정은 45개교(15.0%), 당일 반환이 36개교(12.0%)이며, 다음날 이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는 88개교(29.3%)로 상당한 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압수 규정과 별도로 별점을 부여하거나, 5일(일주일) 이상의 장기간 압수를 규정 하는 학교도 있었다.

\*예시: O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4조 표2 학생 생활평점제 벌점 기준표  
수업태도 - 수업중 휴대폰 및 MP3사용 - 벌점 2

\*예시: P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4장 제3조 사용과 소지에 대한 관리

- ◆ 휴대폰 1회 적발시,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한다. 1주 보관 후 돌려준다.
- ◆ 휴대폰 적발 2회일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한다. 2주 보관 후 돌려준다.
- ◆ 휴대폰 적발 3회일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한다. 1달 보관 후 돌려준다.



## 9) 징계 절차

징계 절차에 대해 6가지 항목을 점검하였다. (1) 징계 절차에 대한 3가지 항목과 (2) 퇴학사유로 구성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점검이었다.

징계절차에 대한 항목의 경우, 징계시 학생의 진술기회 보장 및 재심 절차 안내 등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도 대부분 동일하였으며, 교육청의 권고 기준이나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징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은 찾기 어려웠다.

○ 항목: 징계 대상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안내/보장하고 있다.

467개교(90.7%)의 학교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개교(4.1%)의 학교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으며, 48개교(8.9%)의 학교 규정에서는 진술기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항목에 대한 학교요소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수	기회 부여(%)	있음	없음	무
합계	537	90.7	467	48	22

요소	구분	학교수	기회 부여(%)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90.0	> 0.1
	고등학교	245	91.6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92.6	> 0.1
	특성학교	45	90.7	
	특목+자율고	52	89.4	
설립 형태	국·공립	348	90.6	> 0.1
	사립	190	90.8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90.9	> 0.1
	남학교	94	93.3	
	여학교	90	87.1	

○ 항목: 재심 절차에 대한 안내 규정이 있다.

423개교(83.8%)의 학교에서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재심 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요소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수	절차 안내(%)	있음	없음	무
합계	537	83.8	423	81	33

요소	구분	학교수	절차 안내(%)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83.9	> 0.1
	고등학교	245	84.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81.5	> 0.1
	특성학교	45	83.7	
	특목+자율고	52	91.5	
설립 형태	국·공립	348	82.7	> 0.1
	사립	190	86.1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84.5	> 0.1
	남학교	94	86.2	
	여학교	90	79.3	

○ 항목: 미인정 결석 누적으로 인해 퇴학 조치하는 규정이 있다

퇴학 조치는 고등학교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미인정결석의 누적, 흡연/음주 등의 누적, 누적된 별점에 의한 퇴학 조치 규정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학교수	퇴학 규정(%)	있음	없음	무
합계	243	53.5	116	101	25

요소	구분	학교수	퇴학 규정(%)	유의확률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0.0	> 0.1
	특성학교	45	65.8	
	특목+자율고	52	53.3	
설립 형태	국·공립	348	51.1	> 0.1
	사립	190	57.1	
남녀공학여부	공학	354	49.3	< 0.1
	남학교	94	56.3	
	여학교	90	66.7	

미인정 결석 누적으로 따른 징계 조치로는 학년 유예가 대표적인 조치이다. 이와 별도로 퇴학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116개교(53.5%)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규정이 있었으며, 여학교 26개교(66.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 흡연, 음주 등의 누적으로 인해 퇴학 조치하는 규정이 있다

누적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퇴학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76개교(31.0%)로 나타났다. 학교요소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특성화고가 20개교(52.6%)로 해당 규정이 많이 확인되었다.

	학교수	퇴학 규정(%)	있음	없음	무
합계	243	35.0	76	141	26

요소	구분	학교수	절차 안내(%)	유의확률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33.6	< 0.1
	특성화고	45	52.6	
	특목+자율고	52	24.4	
설립 형태	국·공립	348	35.1	> 0.1
	사립	190	35.7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36.1	> 0.1
	남학교	94	34.4	
	여학교	90	33.3	

○ 누적된 벌점으로 인한 퇴학 조치하는 규정이 있다

용모 복장과 같은 일상적 벌점이 누적되고 이로 인한 퇴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중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88개교(39.1%)로 적었으나, 이중 누적된 벌점으로 인한 퇴학 조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7개교(14.7%)로 상당한 수치를 보인다. 학교요소별 차이는 없었다.

## 10) 상벌점제

상벌점제는 학교 체벌을 금지하면서 중도과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교육적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도과정이라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이나 변화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벌점제의 적용 유무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면담조사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다루었다.

○ 항목: 상벌점제가 있다.

160개교(31.1%)의 학교에서 상벌점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그린마일리지, 생활평점제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1개교는 무로 표시하였으며, 비율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89개교(39.9%)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중 특목고/자율고가 27개교(58.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69개교(37.7%), 남학교, 여학교가 각기 35개교(39.3%), 32개교(38.1%)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수	상벌점제 있음 (%)	있음	없음	무
합계	536	31.1	160	355	21

요소	구분	학교수	상벌점제 있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3	24.3	< 0.001
	고등학교	243	39.9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35.1	< 0.1
	특성화고	45	24.9	
	특목+자율고	52	58.7	
설립형태	국·공립	348	27.3	< 0.1
	사립	190	37.7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27.2	< 0.1
	남학교	94	39.3	
	여학교	90	38.1	

상별점제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 (154개교)중 연단위나 학기 단위의 상별점 말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87개교(56.5%)이며. 반단위 전원 출석(월단위)에 따른 상점(혹은 별점 감점) 조항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12개교(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있었다.

○ 항목: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항목은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검하였다.

이번 교육부고시<sup>23)</sup> 제13조(훈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계 방법 중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징벌의 종류로 '반성문', '서약서', '성찰적 글쓰기' 등이 제시된 경우, 교육적 방법으로 작동되기 보다는 징벌로 작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점검하였다.

123개교(26.2%)에서 반성문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94개교(50.3%)의 고등학교에서 반성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학교는 29개교(10.2%)에 그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수	반성문 있음 (%)	예	아니오	무
합계	491	26.2	123	347	21

요소	구분	학교수	반성문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	10.2	< 0.01
	고등학교	245	50.3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48	51.8	> 0.1
	특성학교	45	55.6	
	특목+자율고	52	41.0	
설립형태	국·공립	348	24.8	> 0.1
	사립	190	28.6	
남녀공학 여부	공학	354	25.3	> 0.1
	남학교	94	23.5	
	여학교	90	32.5	

23)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나. 지역 요소에 따른 비교 분석

앞서 점검항목별 전체적 수치와 학교요소별 통계적 차이를 정리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역 요소<sup>24)</sup>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정리하는데, (1)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정 및 논의에 따른 구분과 (2) 광역시도단위로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유의확률 0.01 이상이면서 0.1이하인 경우와 요소별 차이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는 작은 글씨체와 기울림체로 표시하였다. 해당 수치는 통계적 차이에서 유의미성이 약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확률이 0.1이상이며, 요소별 차이 비율이 5% 이내인 경우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생략하였다.

### 1) 학생생활규정 목적 및 가치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규정에서의 학생인권/기본권 보장에 대해 조례의 제정 및 논의가 있는 지역에서, 통계적 차이가 뚜렷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차별금지조항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규정있음(%)	학교수	학생인권 보장	차별금지
전체 평균	538	67.8	67.6
조례유	256	68.4	83.7
논의유	202	76.7	92.3
논의무	80	43.8	96.1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1</b>

#### ○ 광역시도

지역별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학생 인권/기본권 보장'과 '차별금지 규정'이 확인되는 양상이 비슷하다.

24) 본 연구보고서 분석방법 중 지역별 비교분석 참고

전체 평균대비 광주시, 경상남도, 충청남도가 해당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규정이 많이 확인되는 반면,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인천에서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정있음(%)	학교수	학생인권 보장	차별금지
전체 평균	538	67.8	67.6
강원도	26	92.3	57.7
경기도	110	73.6	90.0
경상남도	46	100.0	84.8
경상북도	44	61.4	81.8
광주시	16	100.0	93.8
대구시	22	31.8	22.7
대전시	14	7.1	35.7
부산시	30	43.3	6.7
서울시	65	67.7	55.4
울산시	11	18.2	36.4
인천시	25	24.0	12.0
전라남도	37	73.0	81.1
전라북도	33	78.8	75.8
제주도	7	28.6	71.4
충청남도	31	87.1	87.1
충청북도	21	76.2	81.0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의 학생 참여 보장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참여권 보장 규정의 유무는 학생인권조례와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

학생 의결권 1/3이상 규정은 조례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통계적 차이는 약하다.

규정 있음(%)	학교수	학생참여	학생 의결권 1/3 이상
전체 평균	538	88.8	70.2
조례유	256	83.7	72.1
논의유	202	92.3	69.9
논의무	80	86.9	65.4
유의확률		< 0.1	< 0.1

### ○ 광역 시도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권 보장은 전체 평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학생인권/기본권 보장에 비해 적다. 또한 학생 참여권보장 및 의결권 1/3이상 보장이라는 항목간의 관계성은 약하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에서 학생 의결권 1/3이상 규정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울산시, 인천시, 대전시, 부산시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규정 있음(%)	학교수	학생 참여	학생의결권 1/3이상
전체 평균	538	88.8	70.2
강원도	26	92.3	46.2
경기도	110	87.9	83.2
경상남도	46	100.0	82.6
경상북도	44	97.7	75.0
광주시	16	100.0	100.0
대구시	22	100.0	63.6



규정 있음(%)	학교수	학생 참여	학생의결권 1/3이상
대전시	14	81.8	33.3
부산시	30	73.9	37.5
서울시	65	84.1	54.7
울산시	11	81.8	18.2
인천시	25	40.0	19.0
전라남도	37	89.2	83.8
전라북도	33	90.6	90.6
제주도	7	71.4	71.4
충청남도	31	96.8	87.1
충청북도	21	100.0	85.7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3) 학생자치 활동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3가지 문항 모두다에서, 학생인권조례 요소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거나 제정 논의가 있었던 지역이 학생자치활동 (참여권)에 대한 보장에서 통계적 차이를 20% 정도로 보이고 있다.

있음(%)	학교수	독립적 활동 제한	임원 자격 승인 요구	학생의 생활지도
전체 평균	538	48.8	42.9	33.9
조례 유	256	48.2	41.4	27.6
논의 유	202	43.9	36.7	35.2
논의 무	80	62.3	61.8	48.6
<b>유의확률</b>		<b>&lt; 0.01</b>	<b>&lt; 0.001</b>	<b>&lt; 0.01</b>

#### ○ 광역시도

학생자치활동 전반에서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3가지 항목간의 관계는 적다. 학생자치활동에서 교사나 교장의 지도나 승인이 요구되는 규정은 경상남도 및 전라북도에서 많이 확인되었으며,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시 교사 추천 및 교장 승인이 요구되는 지역은 울산시, 제주도, 대전시, 대구시에서 많았다.

이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항목은 학생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규정인데, 경기권 및 도시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게 나타나며, 반면 전라북도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해당 규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예외적으로는 대구시는 도시 중 유일하게 50%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있음(%)	학교수	독립적 활동 제한	임원 자격승인 요구	학생의 생활지도
전체 평균	538	48.8	42.9	33.9
강원도	26	32.0	24.0	52.0
경기도	110	56.1	45.5	27.8
경상남도	46	24.4	11.1	6.8
경상북도	44	62.8	58.1	53.7

있음(%)	학교수	독립적 활동 제한	임원 자격승인 요구	학생의 생활지도
광주시	16	33.3	46.7	13.3
대구시	22	71.4	65.0	55.0
대전시	14	46.2	69.2	23.1
부산시	30	33.3	56.3	17.6
서울시	65	48.9	38.8	27.1
울산시	11	42.9	85.7	14.3
인천시	25	38.1	42.9	33.3
전라남도	37	52.8	51.4	51.4
전라북도	33	29.0	20.0	26.7
제주도	7	83.3	83.3	50.0
충청남도	31	57.1	37.9	50.0
충청북도	21	76.2	47.6	47.4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 4) 교내 활동 제한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학내동아리 개설 및 활동에 대한 제한은 조례 논의무 > 조례 유 > 조례 논의유 순으로 제한 규정의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반 출입 등은 약한 차이를 보여 준다.

제한있음(%)	학교수	다른반 출입	교내게시등	학내 동아리 활동
전체 평균	538	9.5	14.9	41.0
조례유	256	12.5	16.4	43.7
논의유	202	6.4	10.9	31.2
논의무	80	7.5	20.0	56.6
<b>유의확률</b>		<b>&lt; 0.1</b>	<b>&lt; 0.1</b>	<b>&lt; 0.01</b>

##### ○ 광역시도

교내 활동에서의 제한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정 지역별 패턴이 거의 없다.

다른 반 출입 제한의 경우, 강원도, 대구시, 울산시, 제주도에서 해당 규정이 보이지 않았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반면 대전시, 광주시에서 해당 규정이 많이 나타났다.

교내 게시나 자료 배포에 대한 제한은 대전시, 인천시, 서울시, 충청북도가 낮으며, 제주도, 경상북도 등이 높게 나타난다.

학내 동아리 활동에서의 교사의 지도나 제한이 있는 경우는 대전시, 대구시, 제주도, 인천시, 울산시 등이 높게 나타나며, 제한이 덜한 지역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이다.

제한 있음(%)	학교수	다른반 출입	교내게시등	학내 동아리 활동
전체 평균	538	9.5	14.9	41.0
강원도	26	0.0	7.7	46.2
경기도	110	19.1	21.8	51.0
경상남도	46	10.9	6.5	6.7
경상북도	44	4.5	31.8	44.2

제한 있음(%)	학교수	다른반 출입	교내계시등	학내 동아리 활동
광주시	16	25.0	12.5	43.8
대구시	22	0.0	9.1	66.7
대전시	14	28.6	0.0	83.3
부산시	30	6.7	6.7	28.6
서울시	65	4.6	4.6	24.1
울산시	11	0.0	18.2	63.6
인천시	25	12.0	4.0	65.2
전라남도	37	2.7	21.6	36.1
전라북도	33	3.0	21.2	35.5
제주도	7	0.0	71.4	66.7
충청남도	31	6.5	12.9	21.4
충청북도	21	14.3	4.8	57.9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 5) 정치 사회활동 -교외 활동 제한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교외 활동 전반에서 학생인권조례 논의유  
 > 조례 유 > 논의 무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한 있음(%)	학교수	정치활동	사회단체	외부 동아리	집회시위
전체 평균	538	22.1	39.0	28.8	21.7
조례 유	256	23.8	42.4	30.0	23.5
논의 유	202	16.4	24.9	20.1	12.0
논의 무	80	31.1	64.8	47.2	39.7
유의확률		> 0.1	< 0.001	< 0.001	< 0.001

### ○ 광역시도

전반적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제한이 낮은 반면, 제주도, 경상북도에서는 전체적인 제  
 한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단체 가입이나 활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 대전시, 인천시, 대전  
 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한 있음(%)	학교수	정치활동	사회단체	외부 동아리	집회시위
전체 평균	538	22.1	39.0	28.8	21.7
강원도	26	15.4	26.9	19.2	19.2
경기도	110	24.3	42.9	29.2	18.9
경상남도	46	2.2	0.0	4.3	0.0
경상북도	44	46.3	56.4	52.5	58.5
광주시	16	6.7	28.6	21.4	13.3
대구시	22	9.5	71.4	38.1	14.3
대전시	14	16.7	81.8	45.5	18.2
부산시	30	0.0	38.9	27.8	0.0
서울시	65	14.0	29.3	32.8	29.3
울산시	11	27.3	54.5	18.2	18.2

제한 있음(%)	학교수	정치활동	사회단체	외부 동아리	집회시위
인천시	25	22.7	72.7	18.2	9.1
전라남도	37	36.1	38.9	22.2	22.2
전라북도	33	35.5	38.7	29.0	32.3
제주도	7	83.3	100.0	83.3	83.3
충청남도	31	13.8	24.1	21.4	10.7
충청북도	21	25.0	26.3	47.4	21.1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 6) 용모/복장 제한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모호한 표현의 제한, 머리 퍼머나 염색의 제한, 화장이나 장신구에 대한 제한 등을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하여 비교하면, 뚜렷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 시도가 있었던 지역(논의 유)와 제정 시도가 없었던 지역(논의 무)간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제한 있음(%)	학교수	모호한 표현	머리	화장/장신구	신발
전체 평균	538	59.7	65.3	60.8	39.5
조례유	256	62.5	57.0	55.9	38.6
논의유	202	51.5	65.2	57.0	33.7
논의무	80	71.3	62.8	84.6	56.4
<b>유의확률</b>		<b>&lt; 0.1</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 ○ 광역시도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을 6개 항목으로 점검하였는데, 모호한 형태의 제한은 광주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머리 및 화장/장신구에 대한 제한은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 부산시, 제주도에서 높게 확인되며, 신발등에 대한 제한은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제한 있음(%)	학교수	모호한 표현	머리	화장/장신구	신발
전체 평균	538	59.7	65.3	60.8	39.5
강원도	26	46.2	34.6	38.5	15.4
경기도	110	74.5	76.6	72.0	42.7
경상남도	46	34.8	73.9	76.1	37.0
경상북도	44	75.0	84.1	79.5	38.6
광주시	16	18.8	6.3	25.0	18.8
대구시	22	59.1	95.2	90.5	76.2
대전시	14	78.6	84.6	92.3	84.6
부산시	30	63.3	84.6	76.9	76.0
서울시	65	67.7	49.2	57.1	49.2



제한 있음(%)	학교수	모호한 표현	머리	화장/장신구	신발
울산시	11	63.6	80.0	55.6	60.0
인천시	25	52.0	33.3	21.7	20.8
전라남도	37	62.2	67.6	51.4	16.2
전라북도	33	39.4	46.9	32.3	22.6
제주도	7	71.4	71.4	85.7	57.1
충청남도	31	51.6	53.3	50.0	26.7
충청북도	21	52.4	84.2	31.6	26.3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b>&lt; 0.001</b>

## 7) 소지품 검사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소지 금지 물품 목록 항목에 대한 점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음(%)	학교수	무동의 검사	금지 목록
전체 평균	538	22.4	85.7
조례 유	256	23.9	80.2
논의 유	202	24.9	91.2
논의 무	80	11.7	88.5
<b>유의확률</b>		<b>&gt; 0.1</b>	<b>&lt; 0.1</b>

### ○ 광역시도

무동의 검사의 경우, 울산시, 인천시에서 해당 규정이 확인되었으며, 금지목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며, 대전시, 울산시에서 금지 물품 목록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되었다.

있음(%)	학교수	무동의 검사	금지 목록
전체 평균	538	22.4	85.7
강원도	26	34.6	84.6
경기도	110	19.1	75.9
경상남도	46	20.0	100.0
경상북도	44	2.3	100.0
광주시	16	6.3	87.5
대구시	22	19.0	90.5
대전시	14	33.3	46.2
부산시	30	24.0	88.5
서울시	65	32.8	82.0
울산시	11	63.6	54.5
인천시	25	48.0	72.0

있음(%)	학교수	무동의 검사	금지 목록
전라남도	37	13.5	89.2
전라북도	33	19.4	90.3
제주도	7	0.0	100.0
충청남도	31	23.3	100.0
충청북도	21	26.3	94.7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8) 휴대폰 사용 제한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두 가지 항목에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다.

있음(%)	학교수	일괄수거	휴대폰 압수
전체 평균	538	58.2	61.9
조례 유	256	53.8	64.3
논의 유	202	57.7	56.5
논의 무	80	74.0	68.0
<b>유의확률</b>		<b>&lt; 0.1</b>	<b>&gt; 0.1</b>

### ○ 광역시도

휴대폰 일괄수거는 제주도, 대구시, 충청북도, 대전시의 학교 규정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적발/위반시 휴대폰 압수 규정도 비슷하다.

광주시 및 전라북도의 전라남도의 경우, 일괄수거는 적은 편인데, 적발/위반시 압수 규정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있음(%)	학교수	일괄수거	휴대폰 압수
전체 평균	538	58.2	61.9
강원도	26	30.8	38.5
경기도	110	56.9	56.6
경상남도	46	60.9	44.4
경상북도	44	67.4	54.8
광주시	16	26.7	81.3
대구시	22	85.7	80.0
대전시	14	76.9	92.3
부산시	30	73.1	72.0
서울시	65	48.3	61.4
울산시	11	54.5	36.4
인천시	25	64.0	39.1
전라남도	37	51.4	75.0
전라북도	33	48.5	96.9
제주도	7	100.0	100.0
충청남도	31	56.7	48.3
충청북도	21	80.0	78.9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9) 상벌점제

앞서 징계절차 등에 관련된 항목 전체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통계적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논의 기준

상벌점제 유무 및 징계항목으로서의 반성문/성찰적 글쓰기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하여 통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있음(%)	학교수	상벌점제	반성문 조항
전체 평균	538	31.1	26.2
조례 유	256	21.1	24.3
논의 유	202	27.4	19.6
논의 무	80	70.9	47.9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 광역시도

지역별로 상벌점제의 분포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경상권 및 서울시, 대전시에서 상벌점제가 50% 이상 남아있다.

반성문 조항이 있는 학교의 수는 경상북도, 대구시, 충청북도에서 전체에 비해 20% 이상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있음(%)	학교수	상벌점제	반성문 조항
전체 평균	538	31.1	26.2
강원도	26	11.5	10.0
경기도	110	3.7	27.0
경상남도	46	2.4	6.8
경상북도	44	70.5	50.0
광주시	16	0.0	18.2
대구시	22	68.2	47.4
대전시	14	76.9	42.9

있음(%)	학교수	상벌점제	반성문 조항
부산시	30	58.3	15.0
서울시	65	62.5	33.3
울산시	11	50.0	11.1
인천시	25	8.7	15.8
전라남도	37	27.0	21.6
전라북도	33	12.5	6.3
제주도	7	28.6	14.3
충청남도	31	22.6	28.1
충청북도	21	60.0	47.4
<b>유의확률</b>		<b>&lt; 0.001</b>	<b>&lt; 0.001</b>

### 3. 추이 분석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1차 점검은 2016년에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인권위 권고 및 후속 정책들이 전개되었다. 2023년 결과와 2016년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정책에 다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담고 있는 교육부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7)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해당 고시는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2023년 12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여기서는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정도 및 개정 내용 변화를 정리하였다.

#### 가. 2016년 점검 결과와의 비교

##### 1) 주요 변화

###### ○ 학생생활규정 내 학생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명시 확산

2016년 결과에 비교하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조항을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기본권 보장하는 규정이 46.7%로 절반 정도의 학교가 추가로 해당 규정을 구성하였다.

조항 있음(%)	학생인권 /기본권 보장	차별금지조항
2023	68.8 (△46.7)	67.6
2016	22.1	-

특히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77.9%의 학교에서 학교규칙의 목적 조항이 없거나 선도/처벌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에 대한 학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의 개선

2016년 점검 결과에서는 머리길이 및 모양, 복장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사생활 침해 금지 위반 조항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있었다(92.6%). 여기에는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일기장 및 개인수첩 조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한 있음(%)	사생활 침해 위반 조항			모호한 표현 있음 (%)
	머리	화장 등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2023	65.3	60.6	22.4	59.7(▽24.1)
2016	92.6			83.8

2023년 조사에서는 일기장 및 개인수첩에 대한 조사 항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포함하여,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이 머리 (65.3%), 화장/장신구 (60.6%), 신발 등(39.5%)로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아직 60%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조항이 남아있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 모호한 표현(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나 개념 사용)의 제한이 있다는 비율이 83.8%에서 2023년 조사에서 59.7%로 줄었다. 해당 항목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1)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 일부 줄었다는 점과 (2) 그럼에도 많은 학교의 규정에서 불명확한 용어나 개념을 사용한 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학생 참여권에 관련된 점검의 심화 필요

### ○ 학생의 의결권 확대

2016년 점검결과는 ‘학생 대상 토론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규정이 있었다(96.6%). 해당 사항에 대한 2023년 점검결과(89.5%)와 비교하면 해당 규정이 조금 줄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학생의 의결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결권 보장 (88.8%), (2) 학생의 의결권 1/3이상 보장(70.2%)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권 확보에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징계 절차 등의 규정 변화 없음

징계 절차에서의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제시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이러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규정을 확인한 바, 2016년 점검에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



었다(93.4%). 이처럼 법적 토대에 기초한 제반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대로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다.

#### ○ 학생의 정치활동의 보장 확대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83.1%에 이르렀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정당 및 정치활동 제한(22.1%) 및 집회/시위 제한(21.7%) 하는 규정이 대폭 줄었다.

이러한 변화의 축은 관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 법률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교육청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안내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교육부 고시에 따른 변화

### 1) 교육부 고시에서의 학생생활규정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 고시)에서,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준
    -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
    - 사전 허용 범위 구성 (교육 목적, 긴급 상황)
  -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구성
    - 교육/학습권 및 건강권/안전권 보장
    - 품성/예절 및 건전한 학교문화
    - : 구성원의 협의 및 최소 제한의 원칙 필요
  - 생활지도 방식으로 분리조치 구성
  - 소지품 검사 기준 강화
    - 해당 학생의 동의 여부 부재
    - : 합리적 의심과 해당 학생의 동의 요구에서 요구가 없음
  - 훈계 방법으로서의 ‘성찰적 글쓰기’ 과제 부여
    - 성찰하는 글쓰기, 반성문의 과제 부여
- 교육부 고시의 항목과 이번 연구에서 진행한 학생생활규정 점검 항목과 비교하면 다음처럼 대부분 겹쳐지기에, 고시에 따른 개정 전(2023년 7월 1일 기준)과 개정 후(2023년 12월 31일자 기준)의 학교생활규정의 비교를 통해 고시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준
    - 휴대폰 일괄 수거 규정
    - 규정 위반시 일괄수거 규정 (위반 규정 포함)

-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구성
  - 용모/복장의 제한 일반
- 소지품 검사 기준 강화
  -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규정
- 훈계 방법으로서의 ‘성찰적 글쓰기’ 과제 부여
  - 반성문/서약서 제출 규정

그러나 교육부 고시 항목중 1차 점검 항목에 없었으나, 고시에서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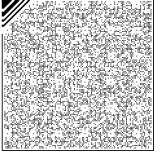
- 교권 강화 항목이 있다
  - (예시: 교원의 권리 항목 추가, 교권위원회 설치 등)
- 보호자의 책임 항목이 있다
  - (예시: 보호자의 의무/역할 강화 - 법적 책무 강화 등)
- 교육행위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 2) 개정 학교 현황

총 538개중 2023년 7월 이후 개정을 한 학교의 수는 198개교(36.8%)에 이른다.<sup>25)</sup> 학교요소별로는 특목고 및 자율고가 개정이 적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부산시, 전라북도, 울산시 등이 적었다. 반면 대구시, 강원도, 대전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에서 개정이 많이 진행되었다.

구분		개정비율(%)	개정학교수	표본학교수
전체		36.8	198	538
학교급	중학교	41.3	121	293
	고등학교	31.4	77	24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33.8	50	148
	특성화고	37.8	17	45
	특목+자율	19.2	10	52
설립 유형	국·공립	38.8	135	348
	사립	33.2	63	190
남녀 공학	공학	37.6	133	354
	남학교	36.2	34	94
	여학교	34.4	31	90
학생인권조례	조례제정	34.0	87	256
	조례 논의	36.1	73	202
	논의무	47.5	38	80
광역 지역	강원도	69.2	18	26
	경기도	40.9	45	110
	경상남도	23.9	11	46
	경상북도	27.3	12	44
	광주시	25.0	4	16
	대구시	81.8	18	22
	대전시	57.1	8	14
	부산시	10.0	3	30
서울시	33.8	22	65	

25) 해당 수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에 대한 점검에 따른 것으로, 개정과정은 게시되었으나 마무리되지 않은 학교 및 개정된 규칙이 게시되지 않은 학교는 제외 되었다.



구분	개정비율(%)	개정학교수	표본학교수
울산시	18.2	2	11
인천시	36.0	9	25
전라남도	48.6	18	37
전라북도	15.2	5	33
제주도	28.6	2	7
충청남도	35.5	11	31
충청북도	47.6	10	21

### 3) 변화 분석

#### ○ 학생 인권/기본권 명시 + 학생 의결권 보장

교육부 고시에 따라 규정에서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및 규정 제·개정에서 학생의 의결권 보장되는 규정이 많아졌다.

%	학생인권/기본권 명시	차별금지 명시	학생참여 조항	학생의결권 1/3이상	학생의견수렴 조항
변화	△ 3.7	△ 3.1	△ 8.0	△ 6.5	△ 6.3
1차 (7/1)	64.1	64.5	80.8	61.7	83.2
2차 (12/31)	67.8	67.6	88.8	70.2	89.5
개정학교만	67.2	70.2	92.2	75.1	92.2

특히, 규정 제·개정에서 학생의 참여 및 의결권에 대한 규정의 경우, 기존 규정 내 비율의 10%씩 증가하여 확대되었다.

#### ○ 학생 자치 활동 제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자치활동 규정의 변화는 적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요구나 교사의 지도 활동에 대한 규정은 감소하여 독립성 보장이 증가하였으나, 임원후보 자격에 대한 제한이나 학생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규정은 조금 더 증가하였다.

있음(%)	독립적 활동 제한	임원 자격 승인 요구	학생의 생활 지도
변화	▽ 6.8	△ 0.8	△ 2.2
1차(7/1)	55.6	42.1	31.7
2차(12/31)	48.8	42.9	33.9
개정학교만	47.0	45.7	32.8

○ 교내 활동 제한

학교 내 활동에서의 제한은 증가하였는데, 다른 반 출입 제한이 특히 많이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있음(%)	다른반 출입 제한	교내 게시등 제한	학생 동아리 활동 제한
변화	△ 6.8	△ 2.3	▽ 4.4
1차(7/1)	4.8	12.6	45.4
2차(12/31)	9.5	14.9	41.0
개정학교만	8.0	13.6	45.5

○ 교외 활동 제한 (정치/사회 활동 포함)

교외활동에 대한 제한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한 있음(%)	정당/정치활동	사회단체 가입/활동	외부동아리 가입/활동	집회/시위
변화	▽ 2.1	▽ 1.6	△ 0.4	△ 1.3
1차(7/1)	24.2	40.6	27.2	20.4
2차(12/31)	22.1	39.0	28.8	21.7
개정학교만	18.9	37.8	28.1	17.6

단, 정당/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은 일부 완화되었으며, 이는 관련 법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용모/복장 제한

있음(%)	모호한 표현	머리 제한	화장 등 제한	신발등 제한
변화	△ 0.2	▽ 1.4	▽ 0.3	▽ 0.3
1차(7/1)	59.2	66.7	60.9	39.8
2차(12/31)	59.7	65.3	60.6	39.5
개정학교만	60.8	67.5	58.6	40.2

용모에 대한 제한 규정의 변화는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제한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화하였다.

○ 소지품 및 휴대폰 제한

있음(%)	무동의 소지품 검사	휴대폰 일괄 수거	휴대폰 압수
변화	▽ 0.7	▽ 2.0	△ 0.2
1차(7/1)	23.1	60.2	61.7
2차(12/31)	22.4	58.2	61.9
개정학교만	20.8	58.7	62.4

고시에 '합리적 의심에 따른 소지품 검사' 및 '수업중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소지품 및 휴대폰에 관련된 규정의 변화는 적은 편이다.

○ 징계 - 퇴학 규정

있음(%)	미인정 결석 누적	흡연/음주 누적	벌점 누적
변화	△ 1.4	△ 0.4	▽ 8.5
1차(7/1)	52.1	34.6	23.2
2차(12/31)	53.5	35.0	14.7
개정학교만	56.9	33.3	18.5

고시에 따른 변화는 없었으나, 단순한 벌점의 누적에 따른 퇴학 규정은 대폭 감소하였다.

○ 상벌점제

상벌점제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고시에서 제시된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항목은 대폭 확대되었다.

있음(%)	상벌점제	반성문 규정
변화	△ 1.7	△ 10.1
1차(7/1)	29.4	16.1
2차(12/31)	31.1	26.2
개정학교만	32.8	38.1



#### 4)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기타 변화

고시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본 학교중 개정을 한 198개교를 대상으로 생활규정을 점검하였다.

##### ○ 교권 강화 항목

교육부 고시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활동을 위한 교원의 권리 항목이 구성되어 있거나 교권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58개교(29.3%)의 학교에서 교권 강화 항목이 있었으며, 학교요소별로는 중학교 47개교(3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요소별로는 울산시, 부산시, 충청남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개정학교 수	교권강화 학교 수	교권강화 비율 (%)
전체		198	58	29.3
학교급	중학교	121	47	38.8
	고등학교	77	11	14.3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50	8	16.0
	특성학교	17	0	0.0
	특목+자율	10	3	30.0
설립유형	국·공립	135	41	30.4
	사립	63	17	27.0
남녀공학	공학	133	40	30.1
	남학교	34	10	29.4
	여학교	31	8	25.8
학생인권조례	조례제정	87	14	16.1
	조례 논의	73	33	45.2
	논의 무	38	11	28.9
광역 지역	강원도	18	5	27.8
	경기도	45	8	17.8
	경상남도	11	5	45.5
	경상북도	12	0	0.0
	광주시	4	2	50.0
	대구시	18	10	55.6
	대전시	8	1	12.5

구분	개정학교 수	교권강화 학교 수	교권강화 비율 (%)
부산시	3	2	66.7
서울시	22	4	18.2
울산시	2	2	100.0
인천시	9	0	0.0
전라남도	18	8	44.4
전라북도	5	0	0.0
제주도	2	0	0.0
충청남도	11	7	63.6
충청북도	10	4	40.0

### ○ 보호자의 책임 항목

교육부 고시 제3조 제5항에서 보호자의 책무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학교의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도록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호자의 책임을 법적 책임 및 정신적 피해까지 확대한 규정을 점검하였다.

\*예시: 서울정화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4조 (보호자의 의무) 제2항

②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전체적으로 84개교(42.4%)의 학교에서 보호자의 책임/의무 강화 항목이 있었으며, 학교요소별로는 중학교 60개교(49.6%), 특목고+자율고 6개교(60.0%), 남학교 17개교(50.0%)로 높았으며, 지역요소별로는 부산시, 충청남도, 대구시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개정학교 수	교권강화 학교 수	교권강화 비율 (%)
전체	198	84	42.4
학교급	중학교	60	49.6
	고등학교	24	31.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5	30.0
	특성화고	3	17.6
	특목+자율	6	60.0
설립유형	국·공립	54	40.0
	사립	30	47.6

구분		개정학교 수	교권강화 학교 수	교권강화 비율 (%)
남녀공학	공학	133	56	42.1
	남학교	34	17	50.0
	여학교	31	11	35.5
학생인권 조례	조례제정	87	25	28.7
	조례 논의	73	37	50.7
	논의무	38	22	57.9
광역 지역	강원도	18	6	33.3
	경기도	45	9	20.0
	경상남도	11	5	45.5
	경상북도	12	7	58.3
	광주시	4	2	50.0
	대구시	18	11	61.1
	대전시	8	4	50.0
	부산시	3	3	100.0
	서울시	22	7	31.8
	울산시	2	1	50.0
	인천시	9	4	44.4
	전라남도	18	9	50.0
	전라북도	5	3	60.0
	제주도	2	0	0.0
	충청남도	11	8	72.7
충청북도	10	5	50.0	

### ○ 교육행위 방해 학생의 분리조치

교육부 고시 제12조 (훈육) 제6항에서 교육/학습권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부 고시에 따른 개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항목이다. 개정한 학교 대부분인 173개교(87.3%)의 학교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자세한 규정을 구성하고 있다.

구분		개정학교수	교권강화 학교수	교권강화 비율 (%)
전체		198	173	87.3
학교급	중학교	121	105	86.8
	고등학교	77	68	88.3

구분		개정학교수	교권강화 학교수	교권강화 비율 (%)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50	44	88.0
	특성화고	17	15	88.2
	특목+자율	10	9	90.0
설립유형	국·공립	135	118	87.4
	사립	63	55	87.3
남녀공학	공학	133	118	88.7
	남학교	34	30	88.2
	여학교	31	25	80.6
학생인권조 례	조례제정	87	79	90.8
	조례 논의	73	59	80.8
	논의무	38	36	94.7
광역 지역	강원도	18	14	77.8
	경기도	45	40	88.9
	경상남도	11	9	81.8
	경상북도	12	9	75.0
	광주시	4	4	100.0
	대구시	18	18	100.0
	대전시	8	8	100.0
	부산시	3	2	66.7
	서울시	22	20	90.9
	울산시	2	2	100.0
	인천시	9	8	88.9
	전라남도	18	14	77.8
	전라북도	5	5	100.0
	제주도	2	2	100.0
	충청남도	11	9	81.8
충청북도	10	9	90.0	

## 5)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변화

### ○ 학생생활규정의 변화의 한계

개정 과정 중에 있는 학교를 포함하여도, 50% 이내의 학교에서 개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비율과 함께 생활규정의 변화 내용에서 교육부 고시의 목적인 교사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2023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고시가 제시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 ○ 분리 조치의 도입

개정 후 점검에서 확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리조치 규정의 대대적 도입이었다.

그리고 학생 인권/기본권 명시 및 학생 참여권 보장 등이 확장되었으나, 그 외 항목에서는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 ○ 생활규정 개정의 계기 제공

이번 고시에 따른 개정이 대구시와 대전시, 강원도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지역교육청 담당자 면담에 따르면, 학교별로 개정이 필요성이 축적되고 있었으나, 교육 3주체 합의 과정 등 행정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고시와 더불어 한시적 행정절차의 요건 완화 및 일부 교육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이 있었다.

이처럼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합의하여 개정하는 정기적 업무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안내 및 지원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4. 소결

### 1) 학생생활규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생활규정 전반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에 따라 그 개선 정도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학생생활규정 내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명시 및 차별금지조항의 구성 확대

○ 용모/복장의 제한의 대폭 완화

2016년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이 92.6%에서 60.6%~65.3%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60% 이상 학교에서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학생의 용모/복장의 근거로서 건강/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원칙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고시에서는 안전 및 교육권의 예절, 학교문화 등의 모호한 기준의 제한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의 대폭 개선

청소년의 정치참여권을 확대하는 법률 변화에 따라,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83.1%에서 22.1%로 대폭 개선되었다.

## 2) 학교요소별 차이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유형별(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자율고), 설립형태(국립+공립/사립), 남녀공학여부(공학/남학교/여학교)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어 나타난 반면, 다른 요소들은 일부 항목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 ○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필요

전반적으로는 중학교는 생활규정이 학교별 차이가 적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부/교육청에서 제시한 생활규정가이드 등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따라 중학교의 경우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이 더 많았다. 단 특이하게도 휴대폰 사용에 관련된 규정은 더 엄격하게 구성되어 있다.

%	개정시 학생참여 규정	학생의결권 1/3이상 보장	학생회 출마 제한	학생-학생지도 활동
중학교	86.5	74.7	38.5	24.2
고등학교	91.9	65.4	48.8	47.9
%	장신구/화장 제한 없음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일괄 수거	상벌점제
중학교	34.7	13.6	67.7	24.3
고등학교	45.6	33.5	46.8	39.9

### ○ 제한이 많은 특목고+자율고

고등학교 유형별 차이에서는 특목고+자율고에서 소지품 검사 및 상벌점제 규정이 20% 이상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목적에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명시가 특성화고, 특목고+자율고에서 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목고+자율고가 학교문화에서 덜 인권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학생인권/기본권 명시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상벌점제
일반고	77.7	27.9	35.1
특성화고	57.8	29.5	34.9
특목+자율고	59.6	54.3	58.7

### 3) 지역별 차이 확인

지역별 차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나 논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광역단위 구분이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논의의 중요성 확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제정 시도가 있던 곳(논의 유)과 제정 시도가 없던 곳(논의 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크게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조례의 제정여부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정을 위한 지역내 노력이 보이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권이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인권문화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학생인권보장 명시	학생의결권 1/3이상 보장	학생자치활동 제한	학생회 출마 승인 필요
조례 유	68.7	65.7	48.2	41.4
논의 유	77.0	67.4	43.9	36.7
논의 무	43.8	46.7	62.3	48.1
%	학생-학생지도 활동	머리 제한함	휴대폰 일괄수거	상벌점제
조례 유	27.6	57.0	53.8	21.1
논의 유	35.2	67.0	57.7	27.4
논의 무	32.5	87.2	74.0	70.9



### ○ 광역 지역 단위 비교

광역 지역별 차이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규정에서의 인권/기본권 명시 및 차별금지조항 구성에서는, 광주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높게 나타나며,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에서 2개 이상 항목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규정 있음(%)	학생인권보장 명시	차별금지	규정 구성시 학생참여	학생의결권 1/30이상
전체 평균	67.8	67.6	88.8	70.2
강원도	92.3	57.7	92.3	46.2
경기도	73.6	90.0	87.9	83.2
경상남도	100.0	84.8	100.0	82.6
경상북도	61.4	81.8	97.7	75.0
광주시	100.0	93.8	100.0	100.0
대구시	31.8	22.7	100.0	63.6
대전시	7.1	35.7	81.8	33.3
부산시	43.3	6.7	73.9	37.5
서울시	67.7	55.4	84.1	54.7
울산시	18.2	36.4	81.8	18.2
인천시	24.0	12.0	40.0	19.0
전라남도	73.0	81.1	89.2	83.8
전라북도	78.8	75.8	90.6	90.6
제주도	28.6	71.4	71.4	71.4
충청남도	87.1	87.1	96.8	87.1
충청북도	76.2	81.0	100.0	85.7

이외에 전체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및 교내외 활동, 용모/복장 제한이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등이며, 높은 지역은 대구시, 제주도, 경상북도, 대전시 등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다른 반 출입 제한 규정으로 광주시에서 높고, 대구시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 4) 학생의 정치/사회 활동에 대한 안내 필요

최근의 관련 법률의 변화와 더불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정치활동이 상당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당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에 참여가 독려될 필요가 있다.

이번 점검에서 고등학교에서 40개교(19.9%)에서 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며, 학생회 임원에 대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규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행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검토를 통한 관련 생활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률적 해석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면, 학생인권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규정의 개정은 법률에 기반한 것이므로, 학교에 적절한 안내와 예시를 제공하면 바로 적용할 것으로 본다.

# 04

## 학교규칙 인식조사

---

1.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온라인 조사
2. 학교 구성원 집단면접조사 등
3. 소결



## 제4장 학교규칙 인식조사

### 1.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온라인 조사

#### 가. 설문 진행

#####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구성원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생/교사/보호자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할 내용은 2016년 연구를 참고하되, (1) 학생생활규정 검토에 기반한 설문지 초안 구성하였으며, (2) 서울/경기 지역 내 학생 및 교사 대상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 델파이 기법을 통한 설문지 보완하여, (4)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별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 2) 온라인 설문 조사

###### ○ 참여 대상

학생생활규정 점검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의 특성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담당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조사 기간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기간을 선택하여, 3주간 진행하였다. (2023년 10월 23일(월) ~ 11월 11일(토))

###### ○ 대상별 참여자 현황

17개 지역 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해당 표본 학교 목록 및 설문지, 가정통신문 예시 등을 함께 보내어 협조 요청하였다.

전국에서 15개 지역이 협조하여, 2만여 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3만여 명이 좀 안 되는 이들이 참여하였다.

대상	참여자수
학생	20,262
보호자	5,221
교사	2,800

## 나. 조사 결과 : 학생

### 1) 참여자 현황

○ 총 참여자 수 : 20,262명

○ 성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 학생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합계	20,262	100.0%	213,347	9.5%	±0.7
여성	10,714	52.9%	102,620	10.4%	±0.9
남성	9,251	45.7%	110,727	8.4%	±1.0
선택 무	297	1.5%	10,667	2.8%	±5.6

성별에 따른 구성비율이나 참여비율에서의 차이가 적으며, 대체로 고른 참여를 보여준다. 선택무의 경우는 오차 허용범위가 크다, 관련된 항목에 한해 분석하며, 분석결과에 신뢰도 구간에 대해 명시하였다.

○ 학교급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 학생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중학생	11,162	55.1%	131,762	8.5%	±0.9
고등학생	9,100	44.9%	81,585	11.2%	±1.0

○ 고등학생 - 학교유형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 학생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일반+자율	6,491	32.0%	67,874	9.6%	±1.2
특성화고	1,793	8.8%	12,187	14.7%	±2.1
특목고	816	4.0%	4,095	19.9%	±3.1

자율고의 경우, 학교수 및 참여 학생수가 별도로 분석하기 어려워, 일반고와 합쳐 비교 분석하였다.

○ 학교설립유형별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학생 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국공립	12,354	61.0%	157,941	7.8%	±0.9
사립	7,908	39.0%	55,406	14.3%	±1.0

○ 남녀공학여부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남여공학	12,952	63.9%
여학교	3,773	18.6%
남학교	3,537	17.5%

○ 지역별 참여

광역 지역에서 제주도, 부산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별 분석은 앞서 학생생활규정 점검에서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즉 학생인권조례 및 광역기준의 기준을 하용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을 통해 학교생활규정 점검결과와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생활규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 요소별 비교

요소별 비교분석에서도 생활규정 점검에서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1) 요소별 비율차이가 5% 이상인 경우와 (2) 유의확률이 0.01이내인 경우에 이를 중심으로 표에 정리하였다.

이외의 경우는 참고를 위해 표에 수치를 제시하지만, 통계적 차이가 적거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 학생생활규정

### ○ 학생생활규정 인지

	답변수	(일부 안다+세부 안다) (%)	모르고 있다	규정이 있는 건 안다	일부 알고 있다	세부규정 알고 있다
합계	20,262	79.4	1,165	3,007	11,542	4,548
			5.7%	14.8%	57.0%	22.4%

요소	구분	답변수	(일부 안다+세부 안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73.6	< 0.001
	여학생	10,714	84.9	
	기타	297	64.6	
학교급	중학교	11,162	82.1	< 0.001
	고등학교	9,100	76.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75.5	< 0.001
	특성화고	1,793	77.3	
	특목+자율고	1,042	78.3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79.6	> 0.1
	사립	7,908	79.1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80.2	< 0.001
	남학교	3,537	70.4	
	여학교	3,773	85.3	
학생인권 조례	조례유	10,626	77.7	< 0.001
	논의유	6,070	79.2	
	논의무	3,566	84.9	
광역시도	강원도	849	79.0	< 0.001
	경기도	5,782	78.9	
	경상남도	1,524	80.9	
	경상북도	2,134	84.6	
	광주시	1,314	71.0	
	대구시	789	82.0	
	대전시	643	89.7	
	서울시	1,060	85.4	
	세종시	1,149	81.2	
	울산시	407	76.7	
	인천시	1,179	78.6	
	전라남도	1,083	78.5	
	전라북도	1,291	72.0	
	충청남도	370	75.7	
	충청북도	688	76.5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일부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79.4%로 이른다. 그리고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7%로 2016년 조사의 15%보다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요소별 차이로는 여학생이 84.9%로 남학생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중학생이 82.1%로 고등학생은 7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요소로는 남학교가 70.4%로 남학생 73.6%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남학교에서의 안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요소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없던 지역의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는 이유(복수 답변)

	답변수	안내 없음	설명 어려움	설명 모호	알 필요 적어	기타
합계	3,931	2,139	476	659	1,147	106
		54.4%	12.1%	16.8%	29.2%	2.7%

생활규정을 모르는 이유로 학생 대부분은 안내가 없거나(54.4%) 설명이 어렵거나 모호했다고(28.9%) 답변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문답식 또는 사례 중심 설명이 교실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학생생활규정 필요성

▶ 학생생활규정 알아야 한다

내용 인지 필요	답변수	아는 것이 좋다 + 알아야 한다 (%)	몰라도 된다	별 상관없다	아는 것이 좋다	알고 있어야 한다
합계	20,262	86.8	593	2,083	9,396	8,190
			2.9%	10.3%	46.4%	40.4%

요소	구분	답변수	(아는 것이 좋다+알아야 한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83.7	< 0.001
	여학생	10,714	90.1	
	기타	297	63.3	
학교급	중학교	11,162	87.6	< 0.001
	고등학교	9,100	85.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85.4	< 0.01
	특성화고	1,793	86.2	
	특목+자율고	1,042	87.6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86.8	> 0.1
	사립	7,908	86.7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86.7	< 0.001
	남학교	3,537	82.5	
	여학교	3,773	91.1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86.2	< 0.1
	논의유	6,070	86.8	
	논의무	3,566	88.6	
광역 시도	강원도	849	84.9	< 0.001
	경기도	5,782	86.9	
	경상남도	1,524	88.6	
	경상북도	2,134	88.6	
	광주시	1,314	82.5	
	대구시	789	87.1	
	대전시	643	90.2	
	서울시	1,060	88.1	
	세종시	1,149	84.9	
	울산시	407	85.5	
	인천시	1,179	89.1	
	전라남도	1,083	88.6	
	전라북도	1,291	82.8	
	충청남도	370	91.1	
	충청북도	688	83.4	

▶ 학생생활규정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87.2	483	2,109	8,879	8,791
			2.4%	10.4%	43.8%	43.4%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87.5	< 0.1
	여학생	10,714	87.5	
	기타	297	67.0	
학교급	중학교	11,162	87.7	< 0.001
	고등학교	9,100	86.6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87.1	< 0.1
	특성학교	1,793	85.9	
	특목+자율고	1,042	84.7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87.6	< 0.01
	사립	7,908	86.6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86.8	< 0.1
	남학교	3,537	88.1	
	여학교	3,773	87.9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87.1	< 0.1
	논의유	6,070	87.4	
	논의무	3,566	87.4	
광역 시도	강원도	849	86.3	< 0.001
	경기도	5,782	87.6	
	경상남도	1,524	88.8	
	경상북도	2,134	89.6	
	광주시	1,314	85.5	
	대구시	789	83.5	
	대전시	643	84.4	
	서울시	1,060	87.3	
	세종시	1,149	86.9	
	울산시	407	84.3	
	인천시	1,179	88.5	
	전라남도	1,083	88.0	
	전라북도	1,291	84.7	
	충청남도	370	90.5	
	충청북도	688	85.6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답변(86.8%)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87.2%)은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며 해당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답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두 질문에서 참여자 및 학교 요소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역 요소별 차이도 적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은 알 필요가 있고 지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학생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복수 답변)

	답변 수	도움 안됨	교사별 기준 달라	필요 설명이 없어	학생 동의가 없어	기타
합계	8,727	1,940	3,873	2,395	2,753	194
		25.2%	50.2%	31.1%	35.7%	2.5%

▶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복수 답변)

	답변수	의무	친구 따라	선생님 지도	수업 분위기	함께 정해서	문제 기피	기타
합계	8,727	5,994	257	829	4,336	729	2,572	56
		68.7%	2.9%	9.5%	49.7%	8.4%	29.5%	0.6%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학생의 의무 (68.7%), 수업분위기 (49.7%)를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으며,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교사별 적용기준이 달라서(50.2%), 학생 동의가 없어서(35.7%)로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학생의견 반영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57.0	3,272	5,448	7,438	4,104
			16.1%	26.9%	36.7%	20.3%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0.2	< 0.001
	여학생	10,714	54.7	
	기타	297	36.4	
학교급	중학교	11,162	62.0	< 0.001
	고등학교	9,100	50.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9.4	< 0.001
	특성화고	1,793	56.2	
	특목+자율고	1,042	49.6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58.5	< 0.001
	사립	7,908	54.6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56.3	< 0.001
	남학교	3,537	57.9	
	여학교	3,773	58.5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59.4	< 0.001
	논의유	6,070	55.9	
	논의무	3,566	51.6	
광역시도	강원도	849	55.8	< 0.001
	경기도	5,782	61.5	
	경상남도	1,524	59.5	
	경상북도	2,134	55.4	
	광주시	1,314	54.0	
	대구시	789	38.4	
	대전시	643	55.2	
	서울시	1,060	61.0	
	세종시	1,149	47.3	
	울산시	407	50.6	
	인천시	1,179	61.2	
	전라남도	1,083	55.9	
	전라북도	1,291	52.1	
	충청남도	370	64.3	
	충청북도	688	61.0	

규정을 만들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7.0%이다. 이 수치는 2016년 형식적 절차를 포함하여 학생의견을 묻지않는다는 비율 35% 비교하면, 학생 의견에 대한 반응을 포함한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여자 요소별로는 남학생이 60.2%로 여학생이 비해 5.5%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11.2% 높게 답했다.

고등학교유형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5%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 요소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 > 논의유 > 논의무로 학생인권조례가 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견반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당 규정 구성에서의 참여가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참여 방식(복수 답변)

	답변수	설문조사	회의참석	의견	게시글	참여무	기타
합계	18,890	5,028	1,685	3,894	916	9,503	35
		26.6%	8.9%	20.6%	4.8%	50.3%	0.2%

또한 참여방식에서는 설문조사(26.6%)이 가장 많았으며, 보다 참여의 폭이 넓은 의견 개진(20.6%)이나 온라인 투표/토의(4.8%) 등의 방식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 3) 학교 차별 환경

#### ○ 차별 환경

학교에서의 3가지 차별 환경에 대한 설문에서 73.8%~81.7%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답변수	차별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20,262	78.9	1,962	2,304	4,277	11,719
			9.7%	11.4%	21.1%	57.8%
성적		73.8	2,007	3,295	5,918	9,042
			9.9%	16.3%	29.2%	44.6%
장애		81.7	1,742	1,966	4,386	12,168
			8.6%	9.7%	21.6%	60.1%

#### ▶ 성별에 따른 차별

성별 차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262	78.9	1,962	2,304	4,277	11,719
			9.7%	11.4%	21.1%	57.8%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0.2	< 0.001
	여학생	10,714	54.7	
	기타	297	36.4	
학교급	중학교	11,162	62.0	< 0.001
	고등학교	9,100	50.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9.4	< 0.001
	특성화고	1,793	56.2	
	특목+자율고	1,042	49.6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58.5	< 0.001
	사립	7,908	54.6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56.3	< 0.001
	남학교	3,537	57.9	
	여학교	3,773	58.5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59.4	< 0.001
	논의유	6,070	55.9	
	논의무	3,566	51.6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광역시도	강원도	849	55.8	< 0.001
	경기도	5,782	61.5	
	경상남도	1,524	59.5	
	경상북도	2,134	55.4	
	광주시	1,314	54.0	
	대구시	789	38.4	
	대전시	643	55.2	
	서울시	1,060	61.0	
	세종시	1,149	47.3	
	울산시	407	50.6	
	인천시	1,179	61.2	
	전라남도	1,083	55.9	
	전라북도	1,291	52.1	
	충청남도	370	64.3	
충청북도	688	61.0		

성별에 따른 차별에서 유의하게 볼 사항은 학생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의 비율의 차이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학교가 성별 차별적 환경이라고 답한 비율이 24.3%로 6.5% 더 높으며, 기타로 답한 학생은 30% 이상 높게 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남녀공학에서 성별 차별적 환경이라고 답한 학생이 여학교나 남학교에 비해 7~8% 정도 높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남학생이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다.

▶ 성적에 따른 차별

성적 차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262	73.8	2,007	3,295	5,918	9,042
			9.9%	16.3%	29.2%	44.6%

요소	구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73.3	< 0.1
	여학생	10,714	74.7	
	기타	297	59.3	
학교급	중학교	11,162	76.4	< 0.001
	고등학교	9,100	70.6	

요소	구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유의확률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70.6	< 0.001
	특성화고	1,793	74.4	
	특목+자율고	1,042	64.3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75.5	< 0.001
	사립	7,908	71.3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73.0	< 0.001
	남학교	3,537	74.2	
	여학교	3,773	76.3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73.8	< 0.01
	논의유	6,070	74.8	
	논의무	3,566	72.2	
광역시도	강원도	849	73.0	< 0.001
	경기도	5,782	75.8	
	경상남도	1,524	78.9	
	경상북도	2,134	74.6	
	광주시	1,314	68.6	
	대구시	789	62.0	
	대전시	643	76.7	
	서울시	1,060	72.3	
	세종시	1,149	69.1	
	울산시	407	75.9	
	인천시	1,179	71.0	
	전라남도	1,083	74.3	
	전라북도	1,291	74.1	
	충청남도	370	75.9	
	충청북도	688	76.9	

성적에 따른 차별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26.2%로 차별요소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경험이 30%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2016년 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2023년 현재에서도 성적이 학교 내 차별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및 학교 요소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5.8% 높고, 성적에 대한 압력이 강한 특목고+자율고(35.7%) > 일반고(29.4%) > 특성화고(25.6%) 순으로 성적에 따른 차별환경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성적에 따른 차별적 환경은 성적에 압력과 일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환경에 대해서는 요소별 차이가 거의 없다. 단지 여학교가 남학교나 공학에 비해 차별적 환경이라는 답이 6~7% 적었다.

성적 차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262	81.7	1,742	1,966	4,386	12,168
			8.6%	9.7%	21.6%	60.1%

요소	구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80.5	< 0.001
	여학생	10,714	83.0	
	기타	297	71.7	
학교급	중학교	11,162	80.1	< 0.001
	고등학교	9,100	83.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84.2	> 0.1
	특성화고	1,793	83.2	
	특목+자율고	1,042	81.4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79.7	< 0.001
	사립	7,908	84.8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80.1	< 0.001
	남학교	3,537	81.8	
	여학교	3,773	87.0	
학생인권 조례	조례유	10,626	81.0	< 0.01
	논의유	6,070	81.3	
	논의무	3,566	84.5	
광역시도	강원도	849	76.0	< 0.001
	경기도	5,782	79.6	
	경상남도	1,524	86.4	
	경상북도	2,134	82.8	
	광주시	1,314	81.6	
	대구시	789	88.5	
	대전시	643	85.4	
	서울시	1,060	82.6	
	세종시	1,149	73.4	
	울산시	407	83.3	
	인천시	1,179	84.4	
	전라남도	1,083	83.4	
	전라북도	1,291	82.1	
충청남도	370	85.7		
충청북도	688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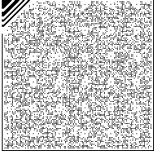
○ 학생간 교제시 불이익이 주어지는가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에서 학생간 교제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있었으며, 차별과 별도로 학생간 교제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제시 불이익을 준다고 답한 학생이 24.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 특목고+자율고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답변이 40.8%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녀공학에서 10% 이상의 차이로 불이익을 준다는 답변이 높았다.

교제 불이익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262	75.8	2,252	2,642	5,007	10,361
			11.1%	13.0%	24.7%	51.1%

요소	구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75.6	< 0.1
	여학생	10,714	76.5	
	기타	297	57.9	
학교급	중학교	11,162	76.4	< 0.001
	고등학교	9,100	75.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79.9	< 0.001
	특성화고	1,793	68.0	
	특목+자율고	1,042	59.1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75.5	< 0.001
	사립	7,908	76.4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71.6	< 0.001
	남학교	3,537	81.6	
	여학교	3,773	84.9	
학생인권 조례	조례유	10,626	75.9	< 0.01
	논의유	6,070	75.0	
	논의무	3,566	77.0	



요소	구분	답변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유의확률
광역시도	강원도	849	66.8	< 0.001
	경기도	5,782	74.8	
	경상남도	1,524	80.4	
	경상북도	2,134	76.0	
	광주시	1,314	80.3	
	대구시	789	77.2	
	대전시	643	80.4	
	서울시	1,060	77.0	
	세종시	1,149	70.6	
	울산시	407	81.6	
	인천시	1,179	75.7	
	전라남도	1,083	75.3	
	전라북도	1,291	75.7	
	충청남도	370	76.8	
	충청북도	688	75.7	

#### 4) 용모/복장 제한

학생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용모/복장, 그리고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것이었다.

제한 규정이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모/복장등에서의 제한의 근거가 명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두발 모양에 대한 제한

두발 제한	답변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모름
합계	20,262	32.7	6,567	177
			32.7%	0.8%

요소	구분	답변수	제한 없음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41.2	< 0.001
	여학생	10,714	25.4	
	기타	297	39.2	
학교급	중학교	11,162	23.8	< 0.001
	고등학교	9,100	43.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1.2	< 0.001
	특성화고	1,793	48.3	
	특목+자율고	1,042	50.2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34.4	< 0.001
	사립	7,908	30.2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30.6	< 0.001
	남학교	3,537	52.4	
	여학교	3,773	21.6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41.8	< 0.001
	논의유	6,070	26.9	
	논의무	3,566	15.7	
광역 시도	강원도	849	41.2	< 0.001
	경기도	5,782	36.4	
	경상남도	1,524	23.2	
	경상북도	2,134	19.5	
	광주시	1,314	69.7	

요소	구분	답변수	제한 없음 (%)	유의확률
	대구시	789	10.4	
	대전시	643	9.5	
	서울시	1,060	46.8	
	세종시	1,149	16.3	
	울산시	407	18.2	
	인천시	1,179	40.6	
	전라남도	1,083	23.1	
	전라북도	1,291	34.5	
	충청남도	370	62.9	
	충청북도	688	26.2	

두발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는 32.7%로, 학생들 다수가 제한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6년 두발 제한이 있다는 답변 53%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sup>26)</sup> 두발 제한에 대한 개선은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규정 점검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63%로, 제한이 있다는 답변 61%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 및 학교 요소별로는 여학생(74.6%), 중학생(76.2%), 여학교(78.4%)로 제한이 많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논의무(84.3%) > 논의유(73.1%) > 제정(58.2%) 지역 순으로 제한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역 시도간의 차이도 광주시(30.3%), 대전시(90.5%)처럼 60% 가량 차이를 보이는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항목이다.

26) 2016년 조사에서는 두발 길이와 모양 제한에 대해 리커드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두발 제한 항목(복수 답변)

	답변수	길이제한	탈색/여러색 염색	과도한 퍼머	일체 제한	기타
합계	20,237	1,241	7,256	3,591	5,101	58
		6.1%	35.9%	17.7%	25.2%	0.3%

다행히 두발 길이 제한은 6.1%로 상당히 줄었으며, 탈색이나 과도한 퍼머 등을 제한하는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체 제한 및 길이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은 고등학생(21.9%)에 비해 중학생(39.1%)에게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화장/장신구 제한

화장 제한	답변수	제한 없음 (%)	제한 있음	모름
합계	20,262	43.5	8,663	345
			43.5%	1.7%

요소	구분	답변수	제한 없음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52.5	< 0.001
	여학생	10,714	35.9	
	기타	297	48.0	
학교급	중학교	11,162	29.6	< 0.001
	고등학교	9,100	60.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59.8	< 0.001
	특성학교	1,793	60.6	
	특목+자율고	1,042	65.6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45.6	< 0.001
	사립	7,908	40.3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41.4	< 0.001
	남학교	3,537	69.2	
	여학교	3,773	27.5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50.8	< 0.001
	논의유	6,070	42.8	
	논의무	3,566	22.8	



요소	구분	답변수	제한 없음 (%)	유의확률
광역 시도	강원도	849	54.1	< 0.001
	경기도	5,782	46.8	
	경상남도	1,524	41.6	
	경상북도	2,134	27.6	
	광주시	1,314	72.2	
	대구시	789	16.9	
	대전시	643	14.1	
	서울시	1,060	49.3	
	세종시	1,149	38.2	
	울산시	407	29.8	
	인천시	1,179	41.5	
	전라남도	1,083	40.5	
	전라북도	1,291	56.8	
	충청남도	370	66.1	
	충청북도	688	37.5	

화장 및 장신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은 43.5%로 두발에 비해 완화된 수치를 보여준다.<sup>27)</sup> 또한 규정 점검에서 제한이 없는 비율 39.4%와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학생 및 학교 요소별 차이로는, 중학생(70.4%)로 고등학생(39.3%)에 비교하여 매우 크게 제한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어서 여학교(72.5%), 여학생(64.1%), 남녀공학(58.6%)에서 제한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여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역 요소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논의 무(77.2%) > 논의 유(57.2%) > 제정(49.2%) 순으로 제한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으며, 광역단위로도 충청남도(33.9%), 대전시(85.9%)로 5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7) 2016년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가 없어, 비교할 수 없다.

▶ 화장/귀걸이 제한 항목(복수 답변)

	답변수	기초화장 허용	작은 귀걸이 허용	링/피어싱 금지	색조 금지	남학교 모름	일체 금지	일체 금지
합계	20,240	4,451	8,362	77	6,373	29	124	123
		22.0%	41.3%	0.4%	31.5%	0.1%	0.6%	0.6%

링 귀고리나 피어싱, 색조화장 등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경우는 31.9%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화장이나 단순한 형태의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두발/용모에 대한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지역별 차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한 규정의 적절성

생활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모/ 복장을 포함한 학교 내 생활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적절하다고 답변한 학생이 61.4%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교 요소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56.3%로 고등학교 평균대비 6.0% 낮다. 지역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논의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6%가량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한 적절성	답변수	(적절한편+적절) (%)	과도하다	과도한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합계	20,262	61.4	2,403	5,416	9,205	3,238
			11.9%	26.7%	45.4%	16.0%

요소	구분	답변수	(적절한편+적절)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3.3	< 0.001
	여학생	10,714	60.3	
	기타	297	42.8	
학교급	중학교	11,162	60.7	< 0.001
	고등학교	9,100	62.3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64.0	< 0.001
	특성화고	1,793	56.3	
	특목+자율고	1,042	62.1	

요소	구분	답변수	(적절한편+적절) (%)	유의확률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61.9	< 0.1
	사립	7,908	60.7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60.3	< 0.001
	남학교	3,537	64.5	
	여학교	3,773	62.2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62.3	< 0.001
	논의유	6,070	62.8	
	논의무	3,566	56.4	
광역 시도	강원도	849	58.8	< 0.001
	경기도	5,782	61.9	
	경상남도	1,524	66.5	
	경상북도	2,134	58.9	
	광주시	1,314	63.5	
	대구시	789	53.6	
	대전시	643	51.5	
	서울시	1,060	62.3	
	세종시	1,149	63.1	
	울산시	407	55.8	
	인천시	1,179	64.9	
	전라남도	1,083	61.7	
	전라북도	1,291	60.3	
	충청남도	370	71.1	
충청북도	688	60.9		

## 5) 교내외 활동

### ○ 등교시 교문지도

등교시 교문지도를 한다는 비율이 8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문지도에 대한 학생/학교별 요소에서는 여학교(8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목고+자율고가 6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역적 차이는 적은 편이다.

교문지도	답변수	교문지도 있음 (%)	교문지도 있음
합계	20,262	80.6	16,336
			80.6%

요소	구분	답변수	교문지도 있음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78.3	< 0.001
	여학생	10,714	82.9	
	기타	297	70.7	
학교급	중학교	11,162	81.8	< 0.001
	고등학교	9,100	79.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81.6	< 0.001
	특성화고	1,793	76.6	
	특목+자율고	1,042	69.6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80.0	< 0.01
	사립	7,908	81.6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78.0	< 0.001
	남학교	3,537	83.3	
	여학교	3,773	87.2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78.2	< 0.001
	논의유	6,070	81.0	
	논의무	3,566	87.2	
광역 시도	강원도	849	78.4	< 0.001
	경기도	5,782	75.2	
	경상남도	1,524	78.9	
	경상북도	2,134	87.0	
	광주시	1,314	84.3	
	대구시	789	91.6	
	대전시	643	82.4	
서울시	1,060	86.8		

요소	구분	답변수	교문지도 있음 (%)	유의확률
	세종시	1,149	91.6	
	울산시	407	94.6	
	인천시	1,179	82.4	
	전라남도	1,083	84.5	
	전라북도	1,291	74.4	
	충청남도	370	56.5	
	충청북도	688	70.6	

▶ 학생(회)의 교문지도

학생이 교문지도를 하는 경우도 46.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학생지도활동 구성은 27%이며, 고등학교에서도 36% 정도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문지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문지도에 대해서는 남학교(58.6%), 남학생(49.8%)이 많이 답변하고 있다. 지역적 차이가 높게 나타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유무에 따른 차이와 함께 광역시도간 차이도 높다.

학생의 교문지도	답변수	학생의 교문지도 있음 (%)	교문지도 있음
합계	20,262	46.2	9,370
			80.6%

요소	구분	답변수	학생의 교문지도 있음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49.8	< 0.001
	여학생	10,714	43.4	
	기타	297	40.7	
학교급	중학교	11,162	46.6	> 0.1
	고등학교	9,100	45.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5.8	< 0.001
	특성화고	1,793	47.9	
	특목+자율고	1,042	42.1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46.7	< 0.001
	사립	7,908	45.5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43.5	< 0.001
	남학교	3,537	58.6	
	여학교	3,773	44.2	

요소	구분	답변수	학생의 교문지도 있음 (%)	유의확률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33.7	< 0.001
	논의유	6,070	62.0	
	논의무	3,566	56.7	
광역 시도	강원도	849	48.5	< 0.001
	경기도	5,782	30.6	
	경상남도	1,524	56.8	
	경상북도	2,134	72.8	
	광주시	1,314	45.8	
	대구시	789	24.3	
	대전시	643	43.1	
	서울시	1,060	42.6	
	세종시	1,149	81.1	
	울산시	407	56.8	
	인천시	1,179	21.9	
	전라남도	1,083	78.0	
	전라북도	1,291	38.9	
	충청남도	370	19.7	
	충청북도	688	58.9	

○ 다른 반 출입 제한

제함함	답변수	다른반 출입 (%)	다른반 출입 제한함
합계	20,262	67.7	13,716
			67.7%

요소	구분	답변수	다른반 출입 제한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4.4	< 0.001
	여학생	10,714	70.8	
	기타	297	59.3	
학교급	중학교	11,162	81.8	< 0.001
	고등학교	9,100	50.4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6.8	< 0.001
	특성화고	1,793	58.4	
	특목+자율고	1,042	57.9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72.6	< 0.001
	사립	7,908	60.1	

요소	구분	답변수	다른반 출입 제한 (%)	유의확률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71.3	< 0.001
	남학교	3,537	51.9	
	여학교	3,773	70.0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71.3	< 0.001
	논의유	6,070	62.4	
	논의무	3,566	66.0	
광역시도	강원도	849	69.1	< 0.001
	경기도	5,782	78.6	
	경상남도	1,524	43.7	
	경상북도	2,134	68.5	
	광주시	1,314	63.4	
	대구시	789	55.1	
	대전시	643	71.4	
	서울시	1,060	75.7	
	세종시	1,149	80.5	
	울산시	407	62.4	
	인천시	1,179	65.8	
	전라남도	1,083	63.3	
	전라북도	1,291	47.6	
	충청남도	370	41.6	
	충청북도	688	75.3	

다른 반 출입제한 규정이 9.5%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반 출입을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은 67.7%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제한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제한의 경우는 규정에 없음에도, 안전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담임교사 등이 별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학생/학교 요소별로는 중학생 (81.8%)로 매우 높고, 여학생(70.8%)에서 많이 나왔다.

○ 교내 게시/ 자료 배포 제한

제함함	답변수	교내 게시 제한 (%)	교내 게시 제한함	모른다 (비율에서 제외)
합계	20,262	65.5	4,670	13,129
			65.5%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자료 배포시 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에서 '모른

다'고 답변한 학생이 전체 학생이 13,129명(64.8%)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해당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한한다는 답변이 65.5%로 높는데, 규정 점검에서의 제한 비율 14.9% 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중학생이 제한한다는 답변이 더 많다(73.4%).

### ○ 온라인 단체방 개설 제한

규정 점검시에 온라인 단체방 개설을 제한하는 학교는 2개교(0.4%)에 불과하여,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온라인 단체방 제한의 경우는 30.8%가 제한한다고 답하고 있다. 모른다는 답변도 7,504(37.0%)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 및 학교 요소별 비교에서는 중학생(44.0%), 국·공립(34.7%), 남녀공학(33.8%)에서 제한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제한함	답변수	온라인 단체방 제한 (%)	온라인 단체방 제한함	모른다 (비율에서 제외)
합계	20,262	30.8%	3,932	7,504
			30.8%	

요소	구분	답변수	온라인 단체방 제한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32.0	< 0.001
	여학생	10,714	29.9	
	기타	297	32.1	
학교급	중학교	11,162	44.0	< 0.001
	고등학교	9,100	15.4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14.8	< 0.001
	특성화고	1,793	20.0	
	특목+자율고	1,042	12.2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34.7	< 0.001
	사립	7,908	24.8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33.8	< 0.001
	남학교	3,537	23.8	
	여학교	3,773	27.2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33.6	< 0.001
	논의유	6,070	28.4	
	논의무	3,566	26.1	



요소	구분	답변수	온라인 단체방 제한 (%)	유의확률
광역 시도	강원도	849	29.7	< 0.001
	경기도	5,782	37.0	
	경상남도	1,524	19.0	
	경상북도	2,134	25.8	
	광주시	1,314	30.4	
	대구시	789	27.4	
	대전시	643	25.5	
	서울시	1,060	41.6	
	세종시	1,149	50.4	
	울산시	407	35.1	
	인천시	1,179	28.6	
	전라남도	1,083	20.5	
	전라북도	1,291	18.9	
	충청남도	370	17.5	
	충청북도	688	23.5	

○ 정치/ 정당 활동 제한

제한함	답변수	정치/정당 활동 제한 (%)	제한함	모른다 (비율에서 제외)
합계	20,262	46.9	2,514	14,903
			46.9%	

정치/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14,903(73.6%)로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이 낮다.

모른다는 답변을 제외한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답변 비율은 46.9%이며, 전체 학생대비 12.4%에 이른다. 규정 점검에서 정치/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 비율 22.1%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정당 활동에 대한 인식자체가 낮은 점을 보여준다.

## 6) 휴대폰

### ○ 휴대폰 사용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학교 내 소지금지, 수업중 사용제한, 제한 없음으로 질문하였다.

일괄수거/소지 금지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5.3%), 수업 중 사용금지하는 비율이 (29.9%)였다. 일괄수거 규정이 있는 학교 비율 58.2%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괄 수거/소지 금지에 대한 학생/학교 요소별 비교에서는 중학생(73.4%), 남녀공학(69.0%)로 많이 나왔으며, 남학생(32.4%), 특목고+자율고(38.5%)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지역적 편차는 적은 편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경우 58.9%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제한함	답변수	일괄수거 (%)	일괄수거/소지 금지	수업중 사용금지	제한 없음
합계	20,262	65.3	13,241	6,057	964
			65.3%	29.9%	4.8%

요소	구분	답변수	일괄수거등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32.4	< 0.001
	여학생	10,714	67.1	
	기타	297	63.6	
학교급	중학교	11,162	73.4	< 0.001
	고등학교	9,100	55.5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58.4	< 0.001
	특성화고	1,793	55.3	
	특목+자율고	1,042	38.5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64.7	< 0.001
	사립	7,908	66.4	
남녀공학 여부	공학	12,952	69.0	< 0.001
	남학교	3,537	57.8	
	여학교	3,773	59.9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58.9	< 0.001
	논의유	6,070	75.6	
	논의무	3,566	67.3	

요소	구분	답변수	일괄수거등 (%)	유의확률
광역시도	강원도	849	73.3	< 0.01
	경기도	5,782	52.8	
	경상남도	1,524	81.6	
	경상북도	2,134	70.1	
	광주시	1,314	75.5	
	대구시	789	71.4	
	대전시	643	53.2	
	서울시	1,060	47.6	
	세종시	1,149	82.6	
	울산시	407	64.1	
	인천시	1,179	69.0	
	전라남도	1,083	74.8	
	전라북도	1,291	68.9	
	충청남도	370	41.6	
충청북도	688	79.5		

○ 휴대폰 사용 - 가족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으로 가족과 다툼이 있었다는 답변 비율이 31.4%에 이른다.

학생/학교 요소별 비교에서는 중학생(36.4%), 특목고+자립고(31.3%)로 고등학생(25.3%) 보다 휴대폰 사용으로 가족과 다툼이 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가족과 다툼	답변수	(그런편+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31.4	7,144	6,749	4,919	1,450
			35.3%	33.3%	24.3%	7.2%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30.4	< 0.01
	여학생	10,714	32.4	
	기타	297	26.6	
학교급	중학교	11,162	36.4	< 0.001
	고등학교	9,100	25.3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26.0	< 0.001
	특성화고	1,793	19.5	
	특목+자율고	1,042	31.3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32.5	< 0.001
	사립	7,908	29.8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31.8	< 0.001
	남학교	3,537	27.4	
	여학교	3,773	33.9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31.5	> 0.1
	논의유	6,070	31.9	
	논의무	3,566	30.3	
광역 시도	강원도	849	27.0	< 0.001
	경기도	5,782	31.3	
	경상남도	1,524	31.2	
	경상북도	2,134	32.9	
	광주시	1,314	32.0	
	대구시	789	21.5	
	대전시	643	32.0	
	서울시	1,060	36.8	
	세종시	1,149	39.8	
	울산시	407	30.7	
	인천시	1,179	27.7	
	전라남도	1,083	28.5	
	전라북도	1,291	31.4	
	충청남도	370	39.5	
충청북도	688	28.6		

○ 휴대폰 사용과 학습과의 관계

▶ 휴대폰 사용 - 학습에 도움

학습에 도움	답변수	(그런 편+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76.2	1,044	3,771	9,654	5,793
			5.2%	18.6%	47.6%	28.6%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76.3	< 0.001
	여학생	10,714	76.3	
	기타	297	71.7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11,162	76.6	< 0.1
	고등학교	9,100	75.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75.9	< 0.1
	특성학교	1,793	76.4	
	특목+자율고	1,042	74.1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76.3	< 0.1
	사립	7,908	76.2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76.2	< 0.001
	남학교	3,537	76.3	
	여학교	3,773	76.4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76.3	< 0.1
	논의유	6,070	75.4	
	논의무	3,566	77.5	
광역 시도	강원도	849	72.7	< 0.001
	경기도	5,782	76.6	
	경상남도	1,524	74.7	
	경상북도	2,134	75.9	
	광주시	1,314	77.5	
	대구시	789	80.1	
	대전시	643	79.8	
	서울시	1,060	74.5	
	세종시	1,149	74.1	
	울산시	407	79.1	
	인천시	1,179	76.3	
	전라남도	1,083	76.5	
	전라북도	1,291	74.9	
	충청남도	370	77.3	
충청북도	688	77.8		

▶ 학습환경 위해 - 휴대폰 사용 제한 필요

제한 필요	답변수	(그런편+매우 그렇다) (%)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편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31.4	5,705	6,762	5,420	2,375
			28.2%	33.4%	26.7%	11.7%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36.6	< 0.001
	여학생	10,714	40.3	
	기타	297	32.3	
학교급	중학교	11,162	41.1	< 0.001
	고등학교	9,100	35.3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36.6	< 0.001
	특성화고	1,793	28.6	
	특목+자율고	1,042	38.8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39.0	< 0.1
	사립	7,908	37.7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38.1	< 0.001
	남학교	3,537	35.3	
	여학교	3,773	42.6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38.3	< 0.001
	논의유	6,070	40.3	
	논의무	3,566	35.8	
광역 시도	강원도	849	37.2	< 0.001
	경기도	5,782	38.7	
	경상남도	1,524	43.3	
	경상북도	2,134	36.9	
	광주시	1,314	38.1	
	대구시	789	31.1	
	대전시	643	37.9	
	서울시	1,060	40.2	
	세종시	1,149	40.6	
	울산시	407	41.0	
	인천시	1,179	37.0	
	전라남도	1,083	41.6	
	전라북도	1,291	36.6	
	충청남도	370	34.1	
	충청북도	688	37.6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2%이며, 수업 등에서 학습 환경을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31.4%로 나타났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에서 학생/학교/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학습 환경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에서는 여학교(42.6%), 중학생(41.1%)에서 높았으며,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28.6%)로 고등학생(35.3%)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7) 자치참여활동

### ○ 학생회 임원 출마 조건

#### ▶ 학생회장 출마 조건 - 교장/교사 추천 필요

출마조건	답변수	추천 필요 (%)	필요	필요없음
합계	20,262	30.5	6,181	14,081
			30.5%	69.5%

요소	구분	답변수	추천 필요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30.8	> 0.1
	여학생	10,714	30.3	
	기타	297	28.6	
학교급	중학교	11,162	31.1	< 0.1
	고등학교	9,100	29.8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27.8	< 0.001
	특성화고	1,793	36.4	
	특목+자율고	1,042	30.2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30.3	> 0.1
	사립	7,908	30.9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31.5	< 0.001
	남학교	3,537	29.4	
	여학교	3,773	28.1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31.0	> 0.1
	논의유	6,070	29.5	
	논의무	3,566	30.7	
광역 시도	강원도	849	41.3	< 0.001
	경기도	5,782	29.9	
	경상남도	1,524	25.3	
	경상북도	2,134	31.5	
	광주시	1,314	32.3	
	대구시	789	30.9	
	대전시	643	27.5	
	서울시	1,060	39.5	
	세종시	1,149	27.8	
	울산시	407	29.0	
	인천시	1,179	35.8	
	전라남도	1,083	28.2	
	전라북도	1,291	23.5	
	충청남도	370	26.2	
충청북도	688	31.3		



▶ 학급회장 - 담임추천 필요

출마조건	답변수	추천 필요 (%)	필요	필요 없음
합계	20,262	30.0	6,082	14,180
			30.0%	70.0%

전교학생회장이나 학급 학생회장 출마에 학교장 및 교사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학생이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교학생회 30.5%, 학급회장 30.0%) 해당 두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요소별 비교도 비슷하다. 규정 점검에서 해당 문항에서 42.9%가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 및 승인이 필요한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조금 낮은 편으로 보인다.

학생/학교요소별 비교에서, 특성화고(36.4%)의 경우, 교사나 교장의 추천이 요구되는 경우가 높았다.

○ 학생 의견 반영

학생회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학생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한다는 비율이 67.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생/학교 요소별 비교에서는 여학교(71.2%), 중학생(70.7%)로 반영한다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으며, 지역별 차이는 적었다.

학생 의견 반영	답변수	(그런편+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262	67.9	1,784	4,718	10,327	3,433
			8.8%	23.3%	51.0%	16.9%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7.9	< 0.001
	여학생	10,714	68.6	
	기타	297	42.4	
학교급	중학교	11,162	70.7	< 0.001
	고등학교	9,100	64.5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65.9	< 0.001
	특성화고	1,793	60.5	
	특목+자율고	1,042	63.0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68.7	< 0.01
	사립	7,908	66.6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67.6	< 0.001
	남학교	3,537	65.6	
	여학교	3,773	71.2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68.3	< 0.001
	논의유	6,070	68.8	
	논의무	3,566	65.3	
광역 시도	강원도	849	64.8	< 0.001
	경기도	5,782	68.8	
	경상남도	1,524	71.9	
	경상북도	2,134	66.3	
	광주시	1,314	68.7	
	대구시	789	60.2	
	대전시	643	68.3	
	서울시	1,060	68.5	
	세종시	1,149	65.4	
	울산시	407	65.1	
	인천시	1,179	69.7	
	전라남도	1,083	69.7	
	전라북도	1,291	63.9	
	충청남도	370	78.1	
충청북도	688	68.6		

○ 학생회 개최 빈도

학생회의 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회 개최 빈도를 질문하였는데, 학생 대부분이 학생회 회의가 학기당 1회(41.8%), 년1회(50.4%)로 대부분의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공간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회 빈도	답변수	월1회 이상 (%)	월1회 이상	학기당 1회	년1회
합계	20,262	7.8	1,587	8,470	10,205
			7.8%	41.8%	50.4%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9.7	< 0.001
	여학생	10,714	6.0	
	기타	297	18.2	
학교급	중학교	11,162	7.6	< 0.001
	고등학교	9,100	8.1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7.5	< 0.001
	특성화고	1,793	10.7	
	특목+자율고	1,042	7.1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7.5	< 0.01
	사립	7,908	8.3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7.9	< 0.001
	남학교	3,537	10.5	
	여학교	3,773	5.2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7.6	< 0.001
	논의유	6,070	7.8	
	논의무	3,566	8.6	
광역 시도	강원도	849	12.1	< 0.001
	경기도	5,782	7.4	
	경상남도	1,524	5.8	
	경상북도	2,134	7.9	
	광주시	1,314	7.3	
	대구시	789	11.2	
	대전시	643	7.6	
	서울시	1,060	7.8	
	세종시	1,149	5.8	
울산시	407	11.8		

요소	구분	답변수	(그런편+매우그렇다) (%)	유의확률
	인천시	1,179	6.0	
	전라남도	1,083	6.9	
	전라북도	1,291	10.2	
	충청남도	370	6.8	
	충청북도	688	9.9	

## 8) 상벌점제 등

### ○ 상벌점제 유무

상벌점제	답변수	상벌점제 있음 (%)	있음	없음
합계	20,262	45.3	9,177	11,085
			45.3%	54.7%

요소	구분	답변수	상벌점제 있음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47.0	< 0.001
	여학생	10,714	43.7	
	기타	297	47.1	
학교급	중학교	11,162	47.9	< 0.001
	고등학교	9,100	42.0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35.8	< 0.001
	특성학교	1,793	55.5	
	특목+자율고	1,042	56.3	
설립형태	국·공립	12,354	47.5	< 0.001
	사립	7,908	41.8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47.8	< 0.001
	남학교	3,537	43.1	
	여학교	3,773	38.7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10,626	28.1	< 0.001
	논의유	6,070	55.0	
	논의무	3,566	79.9	
광역 시도	강원도	849	42.3	< 0.001
	경기도	5,782	23.6	
	경상남도	1,524	30.3	
	경상북도	2,134	85.8	
	광주시	1,314	20.4	
	대구시	789	50.4	
	대전시	643	96.4	
	서울시	1,060	57.0	
	세종시	1,149	92.1	
	울산시	407	36.1	
	인천시	1,179	30.4	
	전라남도	1,083	54.0	
	전라북도	1,291	30.3	
	충청남도	370	44.6	
충청북도	688	82.0		

상별점제가 있다는 답변이 45.3%이며, 이는 상별점제가 있는 생활규정 31.1%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상별점제가 없더라도, 교사가 개별적으로 상별점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학생/학교 요소별 비교에서는, 특목고+자율고(56.3%), 특성화고(55.5%)에서 상별점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역요소별로는 학생인권조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논의 무(79.9%) > 논의 무(55.0%) > 조례 제정(28.1%) 순으로 상별점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 ○ 반성문/서약서 제출 요구

반성문이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는다는 답변은 57.0%로 상당히 높다. 규정 점검에서는 반성문/서약서 규정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26.2%에 그친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들이 제감하는 반성문 등의 지도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의견에서 감지와 같은 처벌형 글쓰기가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다.

반성문 요구	답변수	반성문 요구함 (%)	요구함	요구하지 않음
합계	20,262	57.0	11,544	8,718
			57.0%	43.0%

요소	구분	답변수	반성문 요구함 (%)	유의확률
학생 성별	남학생	9,251	60.6	< 0.001
	여학생	10,714	53.9	
	기타	297	54.5	
학교급	중학교	11,162	65.8	< 0.001
	고등학교	9,100	46.2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6,265	44.3	< 0.001
	특성화고	1,793	54.0	
	특목+자율고	1,042	43.8	
설립 형태	국·공립	12,354	59.8	< 0.001
	사립	7,908	52.6	
남녀공학여부	공학	12,952	60.8	< 0.001
	남학교	3,537	58.2	
	여학교	3,773	42.9	

요소	구분	답변수	반성문 요구함 (%)	유의확률
학생인권조례	조례 유	10,626	57.0	< 0.001
	논의 유	6,070	55.1	
	논의 무	3,566	60.0	
광역시도	강원도	849	49.9	< 0.001
	경기도	5,782	60.3	
	경상남도	1,524	50.3	
	경상북도	2,134	63.8	
	광주시	1,314	51.8	
	대구시	789	49.8	
	대전시	643	60.2	
	서울시	1,060	61.5	
	세종시	1,149	62.8	
	울산시	407	70.3	
	인천시	1,179	49.6	
	전라남도	1,083	53.9	
	전라북도	1,291	50.7	
	충청남도	370	30.5	
	충청북도	688	65.1	

## 다. 인식조사 : 보호자

### 1) 참여자 현황

○ 총 참여자 수 : 5,221명 / 분석대상 5,219명<sup>28)</sup>

○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 및 연령대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합계	5,219	100.0%
어머니	4,707	90.2%
아버지	460	8.8%
조부모등	52	1.0%

참여자 대부분이 어머니이며,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 따른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참여자 대부분이 40, 50대로 95.4%에 이른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하지 않는다.

○ 학교급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중학생	11,162	55.1%	131,762	2.2%	±1.8
고등학생	9,100	44.9%	81,585	2.8%	±1.0

\* 대상학생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고등학생 - 학교유형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일반+자율	6,491	32.0%	67,874	2.3%	±2.4
특성학교	1,793	8.8%	12,187	3.7%	±4.5
특목고	816	4.0%	4,095	6.5%	±5.8

28) 답변중 30%이상 빠진 2명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함



대상별 참여율은 특목고 > 특성화고 > 일반고 순이나, 모집단 자체가 작아서 신뢰도 구간이 크다. 비교 분석시 이 점을 유의한다.

○ 학교설립유형별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학생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국공립	12,354	61.0%	157,941	7.8%	±1.7
사립	7,908	39.0%	55,406	3.3%	±2.3
모름	194	3.7%	-	-	-

○ 남녀공학여부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남여공학	3,625	69.5%
여학교	878	16.8%
남학교	710	13.6%
모름	6	0.1%

○ 참여자 관련 정리

보호자의 경우, 광역시도에서 부산시만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별 분석은 앞서 학생생활규정 점검에서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규정과 체감하는 생활규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 2) 학생생활규정

###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안내 (복수 답변)

	답변수	안내 없음	설명 어려움	설명 모호	필요 적음	기타
합계	5,161	637	1,870	2,227	891	17
		12.3%	36.2%	43.2%	17.3%	0.3%

보호자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안내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87.3%),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하다는 답변이 많다고 답변하고 있다(79.4%).

고등학교의 경우, 특목고가 안내가 더 잘되고 있다고 답변(안내없음 6.0%)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필요가 적다는 답변도 높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가 안내가 없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25.7%)

### ○ 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 인지

보호자 대부분은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98.2%). 학교요소 및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참여 경험 및 참여방법

보호자들의 규정을 제·개정시 참여한 경험은 29.0%로 나타났으며, 공립학교(31.0%)가 사립학교 보호자들(26.2%)의 참여 경험이 조금 더 많았다.

	답변수	설문조사	회의참석	회의-의견	게시/토론방 참여	기타
합계	4,386	3,471	302	206	517	267
		79.1%	6.9%	4.7%	11.8%	6.1%

참여방법으로는 주로 설문조사(79.1%)로서, 회의, 온라인 토론, 온라인 투표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방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3) 용모/복장 제한

보호자의 경우, 학생에 비해 용모/복장 등에 대한 제한이 적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사안이 학교내 갈등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 ○ 두발 모양에 대한 제한

두발의 길이나 퍼머 및 염색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는 50.7%로 답하고 있다. 중학교가 46.5%로 고등학교 56.1%에 비해 제한이 없다는 답변이 9.6% 낮게 나타나며, 고등학교유형에서는 특목고+자율고(62.6%) > 일반고(56.3%) > 특성화고(50.3%) 순으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남녀공학(53.3%)로 남학교와 여학교에 비해 제한이 없다는 비율이 9% 정도 높았으며,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제정지역(57.1%) > 논의 유(46.9%) > 논의 무(32.7%) 순으로 답하여, 학생의 패턴과 비슷하다.

두발 제한	답변수	제한 없음 (%)	전혀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합계	5,219	50.7	939	1,708	1,740	832
			18.0%	32.7%	33.3%	15.9%

요소	구분	답변수	제한 없음 (%)	유의확률
학교급	중학교	2,921	46.5	< 0.001
	고등학교	2,298	56.1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1,501	56.3	< 0.001
	특성화고	449	50.3	
	특목+자율고	348	62.6	
남녀공학여부	공학	3,625	53.3	< 0.001
	남학교	878	45.1	
	여학교	710	44.8	
학생인권조례	조례유	3,052	57.1	< 0.001
	논의유	1,374	46.9	
	논의무	793	32.7	

#### ○ 복장에 대한 제한

보호자들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항목이 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 체육복 등교가 자유롭다고 답변한 비율이 62.8% 높았으며, 의견서술에서도 방한복을 포함한 복장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요소별 차이가 많은 항목이기도 한데, 해당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비율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는 비교대상대비 10%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대상	사립학교	남학교	조례무
긍정답변율(%)	50.0%	50.6%	53.4%

#### ○ 화장/장신구 제한

보호자들이 화장 및 장신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은 50.7%로 학생대비 10% 정도 긍정적 답변이 높았다.

해당 답변은 머리에 대한 제한과 비슷한 수치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치 격차가 머리에 비해 크다.

#### ○ 교내 규제 전반

머리, 복장, 화장 등에 대한 제한을 참여자 요소별로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대상중 수치가 낮은 그룹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중학교, 사립학교, 여/남학교, 도 소속학교,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학교에서의 규제가 더 많다고 보호자들이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 답변율(%) /비교대상	평균	중학교	사립	여학교	남학교	도 단위	조례 무
머리 모양	50.7	46.5	47.5	45.1	44.8	50.7	43.2
화장/장신구	50.7	46.2	45.2	47.3	37.3	49.1	38.8
생활복 등교	62.8	64.3	50.0	57.9	50.6	61.7	53.4

#### ○ 학교 규정의 적절성

보호자들이 학교 규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53.4%로 나타났다.

앞서 학교 규제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일수록,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단 하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내 제한이 많다고 답변하면서도, 그러한 제한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답변수	긍정답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합계	5,219	53.4	281	2,153	2,323	462
			5.4%	41.3%	44.5%	8.9%

#### 4) 휴대폰

##### ○ 휴대폰 소지

학교 내 휴대폰 반입이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68.2%로 학생 답변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대상 요소별로는 중학생(75.6%), 남학교(74.3%) 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인권조례 논의 유(77.2%), 논의 무(75.1%) 지역이 조례 제정된 지역(62.3%)보다 10% 이상 제한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가 답하고 있는 평균 사용시간은 3.3시간으로 답했으며, 평일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9.1%를 넘어 상당한 수치를 답하고 있다.

##### ○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에 관련하여, 자녀와 다툼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툼 적이 있다는 답변이 50.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학생의 휴대폰 사용으로 가족과 다툼 적이 있다는 답변 31.4%와 비교하면, 학생보다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 37.5%와 학습 환경을 위해 휴대폰 사용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 71.5%와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입장이 자녀가 중학교, 공립학교, 남학교에 다니는 보호자에게 좀 더 휴대폰 사용에 따른 부정적 답변이 높다.

답변율(%)	평균	중학교	공립	남학교
자녀와의 다툼	50.1	55.6	52.0	50.3
학습도움 안됨	62.5	66.1	64.0	65.9
제한 필요	71.5	76.0	73.3	70.0

## 5) 학교 활동 참여

### ○ 학교와의 소통

보호자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안내가 충분하다고 답변하고 있다.(96.2%)

그러나, 학교와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와의 소통방법으로는 주로 안내문(67%)이나 학교 문자(55%)와 같이 주로 일방향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어서 담임교사와의 통화(28%)라고 답하고 있다.

### ○ 보호자간의 소통

보호자간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35% 정도이며, 소통이 없다는 비율이 66%로 높다.

소통하는 보호자분들의 소통방법은 주로 소통방(채팅)이 제일 많고, 이어서 학부모회 참여가 이어진다.

상당수의 보호자가 보호자간의 소통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보호자 의견의 학교 반영

보호자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46.5%이다.

특목고(57.9%)의 보호자가 긍정적 답변이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 여학교(40.3%) 보호자가 긍정 답변이 낮게 나왔다.

## 라. 인식조사 : 교사

### 1) 참여자 현황

○ 총 참여자 수 : 2,800명

○ 성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합계	2,800	100.0%	82253	34%	±1.8
여성	1,630	58.2%	49,775	33%	±2.4
남성	1,162	41.5%	32,478	36%	±2.8
선택무	8	0.3%	-	-	> ±10

\* 대상교사는 전국학교의 2학년 담임이나 담당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임

\*\* 참여율은 인식조사를 실시한 전국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임

교사들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구성비율이나 참여비율에서의 차이가 적고 고른 참여를 보여준다.

선택무의 경우는 오차 허용범위가 크다, 관련된 항목에 한해 분석하며, 분석결과에 신뢰도 구간에 대해 명시하였다.

○ 학교급별/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수*	참여율**	95%신뢰도 구간
중학교	1,362	48.6%	38,558	35%	±2.6
고등학교	1,438	51.4%	43,696	33%	±2.5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일반고	1,006	70.0%
특성화고	319	22.2%
특목+지울고	113	7.9%

중/고등학교 구분한 비교는 진행하되, 학교유형별 비교에서, 특목고의 경우 답변수가 적어 해석시 유의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 학교설립유형별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국공립	1,935	69.1%
사립	865	30.9%

○ 남녀공학여부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남여공학	1,994	71.2%
여학교	472	16.9%
남학교	334	11.9%

○ 지역별 참여

구분	답변수	답변자 구성비	대상수*	참여율**
강원도	74	2.6%	2,779	27
경기도	1,059	37.8%	20,354	52
경상남도	261	9.3%	5,557	47
경상북도	225	8.0%	4,596	49
광주	103	3.7%	2,574	40
대구	69	2.5%	3,987	17
대전	89	3.2%	2,548	35
부산	0	0.0%	4,664	0
서울	232	8.3%	12,758	18
세종	27	1.0%	813	33
울산	64	2.3%	1,973	32
인천	205	7.3%	4,427	46
전라남도	96	3.4%	3,620	27
전라북도	120	4.3%	3,416	35
제주도	0	0.0%	1,093	0
충청남도	70	2.5%	3,629	19
충청북도	106	3.8%	2,665	40

경기도 교사들의 참여 구성비가 매우 높다. 이는 교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참여율도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수치를 낼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병기한다.

교사의 경우, 제주도, 부산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구, 서울, 충남이 참여율이 10% 정도 낮다.

## 2) 학생생활규정

### ○ 학생생활규정 인지

	답변수	긍정답변 비율(%)	모르고 있다	규정이 있는 건 안다	일부 알고 있다	세부규정 알고 있다
합계	2,800	92.7	14	190	1,155	1,441
			0.5%	6.8%	41.3%	51.5%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일부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교사 비율은 92.7%로 상당히 높다.

교사 요소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고등학교 교사(90.8%)가 중학교 교사(4.7%)에 비해 조금 낮다.

### ○ 학생생활규정 필요성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답변(98.6%)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98.8%)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수업분위기(69.6%), 학생의 의무 (57.4%)로 학생의 답변과 비슷하지만, 수업분위기를 더 무게를 두고 있다.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교사 및 학생 의견 반영

교사의견 반영	답변수	긍정답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68	330	1,295	1,107
합계	2,800	85.8	2.4%	11.8%	46.3%	39.5%

학생의견 반영	답변수	긍정답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46	275	1,286	1,193
합계	2,800	88.5	1.6%	9.8%	45.9%	42.6%

규정을 만들 때,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답변이 85.8%,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답변이 8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 요소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공립학교 교사(87.1%)로 사립학교 교사(82.8%)보다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학생들의 참여방식으로는 설명회(38.8%)와 설문/온라인 투표(32.9%)를 선택하였다. 이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투표도 20.7%로 선택하였다.

### 3) 학교 차별 환경

#### ○ 차별 환경

교사들은 학교의 차별 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차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답변수	긍정답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30	99	564	2,107
성별	2,800	95.4	1.1%	3.5%	20.1%	75.3%
성적			33	140	601	2,026
장애		93.8	1.2%	5.0%	21.5%	72.4%
			26	131	605	2,038
		94.4	0.9%	4.7%	21.6%	72.8%

#### ○ 기타 사항

학생간 교제시 불이익이 받는가라는 항목에서 6.9%만이 불이익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특목고+자율고의 경우, 학생 교제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교사들의 답변(26.9%)로 고등학교 평균(8.6%)에 비해 매우 높았다.

#### 4) 용모/복장 제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요소인 용모/복장,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여부에 대한 답변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한이 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60~70% 정도라는 점에서 교사는 10% 정도 적지만, 교사들도 이러한 제한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 ○ 두발 모양에 대한 제한 (복수 선택)

	답변수	제한 없음	길이 제한	탈색 / 여러색 염색	과도한 퍼머	일체 제한	기타
합계	2,692	1,208	95	1,060	567	346	6
		44.9%	3.5%	39.4%	21.1%	12.9%	0.2%

두발 길이, 염색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4.9%이며, 염색 등에 대한 제한이 제일 많고, 이어서 과도한 퍼머 제한이 21.1%로 많았다. 그런데 과도한 염색이나 퍼머를 넘어 염색, 퍼머 일체를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2.9%의 답변을 볼 수 있다.

요소별 분석에서 제한 여부에 차이가 큰 그룹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한 없음 (%)	평균	중학교	여학교	조례 논의 무	특목고+자율고
두발 제한 없음	44.9	37.3	35.6	24.3	65.6

##### ○ 화장/장신구 제한 (복수 선택)

	답변수	제한 없음	기초 화장 허용	작은 귀걸이 허용	링 금지	피어싱 금지	색조 금지	일체금지
합계	2,791	1,457	473	315	486	695	636	2
		52.2%	16.9%	11.3%	17.4%	24.9%	22.8%	0.1%

화장 및 장신구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답변은 52.2%로 두발 제한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실제 학교별로도 규제가 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을 이유로 링 귀고리나 피어싱 등을 제한하는 경우, 작은 귀걸이 등을 허용하는 경우로 연결되어, 머리모양에 비해 규제가 적다고 답변하고 있다.

머리와 마찬가지로 요소별 분석에서 제한 여부에 차이가 큰 그룹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답변율(%)	평균	중학교	사립	여학교	조례무	특목고	남학교
화장/장신구 제한 없음	52.2	40.4	46.6	38.6	41.5	76.8	66.5

## 5) 교내외 활동

### ○ 등교시 교문지도

답변율(%)	평균	여학교	남학교	조례 논의 무
교문지도	73.4	86.0	79.9	76.6
학생교문지도	36.4	41.7	52.7	56.7

등교 시 교문지도를 한다는 비율이 73.4%로 높게 나타나며, 학생이 교문지도를 하고 있다는 답변도 50.4%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답변비율은 학생보다는 7~8%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교문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문지도의 경우, 교사나 학생 모두 힘들어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를 볼 필요가 있다.

요소별 분석에서 이러한 교문지도가 높다고 답변한 그룹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학교, 남학교, 조례 논의무 지역 학교에서 교문지도 및 학생의 교문지도를 한다는 답변이 많다. 남학교 및 조례 논의무 지역은 학생의 교문지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 다른 반 출입 제한 등

답변율(%)	평균	중학교	공립	공학
다른반 출입 제한	45.9	63.2	51.6	48.6
게시물 승인 요구	53.9	57.5	-	-
단톡방 승인 요구	18.6	25.8	20.3	-

다른 반 출입을 제한한다는 답변은 45.9%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63.2%로 그 수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게시물 게시에 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53.9%, 단톡방 개설에서 교사/학교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18.6%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정에는 제한이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소별 분석에서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룹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중학교에서 제한이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답변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정치/ 정당 활동 제한

만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6.0%의 교사가 없다고 답변한 반면, 34.0%의 교사들은 승인이 요구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이 예상과 달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정치/ 정당 활동에 대한 제한이 법률위반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정치/정당 활동에 대한 보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 ○ 생활규정의 적절성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생활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95.1%가 현재의 규정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기타 정책 제언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은 반면, 교복/복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규정 전반에 대해 적절하지만,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 마. 참여자별 정책 제언

조사 참여자들의 정책 제언을 위해, 조사의 마지막 문항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면 간략히 적어주세요.”를 두었다. 조사 참여자중 상당수가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이를 대상자별로 정리 요약하였다.

대상	참여자수	정책 의견수
학생	20,262	4,997
보호자	5,221	1,363
교사	2,800	1,592

### 1) 학생

#### ○ 학생들의 교칙 개선 의견

제시된 의견의 95% 정도는 용모 복장 및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 하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휴대폰 사용에서의 제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수업시간외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서의 휴대폰 사용 허용을 많이 제기하였다.

이외 교복 착용, 화장 및 장신구, 이성 교제, 음식물 섭취 등에 대한 규정의 완화를 제시 하였다.

#### ○ 학생들의 교칙 준수 의지

40여 명의 의견으로 교칙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불평을 제기하고 있다. 20여 명의 의견에서 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학교규칙의 강화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칙을 교사나 학생에 따라 다른 잣대를 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적절한 제재/벌점을 부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 학생들의 교칙 개선 참여

학생들은 교칙 개선을 위해 학생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

## 2) 보호자

보호자들의 의견은 하나의 사항에 대해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 의견이 많았다.

### ○ 학생들의 외모와 복장에 대한 규제 강화나 완화 의견

학생의 용모/복장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으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피어싱, 화장, 머리 염색 등의 경우는 제한 의견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개성과 편의성을 존중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 교복과 생활복에 대한 의견

교복과 생활복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복을 필수로 착용하고 규칙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일부이며, 교복을 자율화하거나 편한 옷으로 바꾸어나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복의 디자인, 재질, 길이, 실용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등교 허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 ○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갈라진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휴대폰 사용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거나 수업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3) 교사

교사들의 의견을 빈도수가 높은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
  - 흡연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
  - 학습권 보장
  - 학생들의 규정 준수
  - 교권/교사 지도권 보장
- 교사-학생간 소통 필요
- 규정의 구체화 및 규정에 대한 안내를 통한 갈등 완화
  - 불필요한 규정 제거
  - 합리적 규정 개선
  - 학생과 함께 구성

## 바. 추이 및 비교 분석

먼저 학생생활규정 점검결과 및 참여자별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2016년 인식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생활규정 점검과 학생들의 인식과의 차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교사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추가 비교하여, 이러한 간극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1) 규정 점검 및 인식조사 구성원 결과 비교

#### ○ 규정 제·개정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참여 비율(%)	규정	학생	교사	보호자의 참여	교사의 참여
합계	88.8	57.0	88.5	29.0	85.8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참여 조항이 88.8% 있으며, 교사들도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답변이 88.5%로 규정 점검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들의 답변에서 57.0%로 2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규정상의 참여 보장과 학생들이 체험하는 참여 보장간의 간극을 보여준다.

#### ○ 차별금지

대부분의 규정에서 차별금지를 명시하거나(67.6%) 차별적 조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성별 0.9%, 임신/출산 등 0.6%)

차별환경 (%)	규정	학생	교사
성별	0.9	21.1	4.6
성적	-	26.2	6.2
장애	-	18.3	5.6

그러나 학교의 차별적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는 5% 내외의 차별이 있다는 답변을 한 반면, 학생은 20% 내외의 차별이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학교 내 차별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이는 수치이지만, 20% 학생들의 답변에서 보다 세심하고 문화적인 비차별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 규정의 적절성

적절하다 (%)	학생	보호자	교사
합계	61.4	53.4	95.1

현 학생생활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구성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학생과 보호자/ 교사 사이의 인식 차가 매우 크다.

학생과 보호자는 제한하는 내용이 많고 과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현재의 제한이 많다기보다는 항목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 ○ 학생의 교내외 활동 제한

규정과 인식 조사간의 차이가 큰 항목이다. 규정에서 해당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 출입 제한이나 교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경우 교사의 승인이나 제한이 있으며, 교사들도 상당수 이에 동의하고 있다.

제한 있음 (%)		규정	학생	교사
교내 활동	다른반 출입	9.5	67.7	45.9
	교내 게시	14.9	65.5	53.9
	온라인방 개설	0.4	30.8	18.6
정치 활동	정치활동제한	22.1	46.9	66.0

온라인 단체방 개설의 경우도, 규정과 학생 및 교사의 인식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정당/정치 활동에 대한 제한의 경우, 법률적 기반하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서도 제한이 있다는 답변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 안내 및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돕는 활동이 시급하다.

○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

위 항목과 달리 규정과 인식조사간의 차이가 적은 항목으로, 용모 복장에 대한 갈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규정의 개정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규정 점검결과와 학생의 인식조사 결과가 유사하고, 보호자와 교사가 제한이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한 있음 (%)	규정	학생	보호자	교사
두발 모양	65.3	67.3	49.3	55.1
화장/장신구	60.6	56.6	49.3	47.8

○ 휴대폰 반입/소지 제한

규정 점검에서 휴대폰의 반입금지나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비율은 58.2%이며, 인식 조사에서는 일괄 수거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거 비율(%)	규정	학생	보호자	교사
일괄수거/소지 금지	58.2	65.3	68.2	55.6

○ 휴대폰 사용에 대한 높은 인식차

해당 규정은 없으나 휴대폰 사용과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2가지 질문에 대해, 되서 학생의 인식 결과와 보호자/교사의 인식 결과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답변(%)	학생	보호자	교사
휴대폰 사용 학습에 도움됨	76.2	37.5	47.8
학습환경 위해 제한 필요함	38.5	71.5	85.9

○ 반성문 등의 요구

반성문 등의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26.2%인 반면, 인식조사에서 학생(57.0%), 교사(45.4%)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한 교육부고시에서 '성찰적 글 쓰기'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에서도 더 많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인식조사의 기타 답변에서 '체벌형 글쓰기'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 2) 2016년 인식조사 결과와의 비교

### 가) 학생생활규정 인지

○ 학교생활규정(학교규칙)을 알고 있다. (2016- 본적이 있다)

2016년 대비 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인지는 10% 가량 높아졌다.

긍정답변율	2023		2016
	인지	내용인지	본적이 있다
합계	94.3	79.4	84.7
중학생	95.1	82.1	85.4
고등학생	93.2	76.2	84.2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전체 학생 의견 (2016- 본적이 있다)

2016년 대비 학생들의 참여는 개선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

긍정 답변율	2023	2016
합계	57.0	65.0
중학생	62.0	70.6
고등학생	50.8	60.9

2016년 대비하여,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이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학생 참여의 경험이나 이해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과정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변화 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 나) 용모/복장 등

○ 머리 길이/퍼머/염색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요구 비율(%)	규정	학생	교사
반성문 등 요구	26.2	57.0	45.4

2016년 대비 두발에 대한 제한이 더 많아졌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중학생들의 답변에서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답변이 20%가량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긍정 답변율	2023	2016
합계	32.7	46.5
중학생	23.8	45.2
고등학생	43.7	47.4

용모/복장에 대한 학생들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상벌점제

○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정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29%에 비해 상벌점제가 있다는 학생들의 답변 비율이 4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2016년 68.7%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운영비율	2023	2016
합계	45.3	68.7
중학생	47.8	67.0
고등학생	42.0	69.9

특히 광주시, 경기도 및 서울시, 전라북도 등은 상벌점제 대신 공동체협약 및 학생법정과 같은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규칙 점검에서 광주시,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라북도는 상벌점제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가 10%내외로 낮았다.

## 2. 학교 구성원 집단면접조사 등

학교별 생활규정 점검 및 학교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학교 현장에서의 규정 적용 및 학생 참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별 집단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 구성원간의 협력 및 인권친화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 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학교의 학교장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조사별로 간략히 정리한다.

### 가. 학생

#### 1) 진행

서울시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으로 한 총 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으로 전부 학생회장 또는 학년회장을 맡고 있었다.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들어, 줌으로 2시간 반 동안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주제별 정리

##### 가) 학생간 관계 단절

학생들의 친구 관계가 넓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1학년 1학기 초에 관계 맺기가 어렵다. 기존 출신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가 단혀있는 경향이 높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에 휴대폰 사용 등으로 개인적 활동을 주로 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만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어 관계맺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답한다. 이러한 관계맺기에서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는 출신학교가 먼 학생, 전학생, 내성적인 학생을 꼽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 반별 팀 빌딩을 위한 프로그램, 전학생 멘토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있다.

- ✓ 많은 친구들이 1학년 학기 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1학년 학기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다. 근처 중학교 출신들이 모여 다니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는 따로 노력하지 않는다. 특히 내성적인 친구의 경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별 과제 등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증폭된다. (고등학생 B)

이러한 어려움은 2학년 올라오니 더 경쟁적이 되고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더 심화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줄어든다. (고등학생 D)

- ✓ 전학생의 적응 어려움이 터진다.

전학생이 가장 힘들 수 있다. 반별 학생수가 적어 중간에 섞이기가 힘들다. 우리 학교는 전학생을 위한 멘토 제도가 없다. 이런 제도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도움을 주는 학생을 지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중학생 C)

- ✓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반 친구들간 활동이 줄어든다.

휴대폰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휴대폰 제한을 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의 보드게임이나 축구, 문제집 풀기 등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아졌다. 휴대폰 제한이 없던 적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중학생 C)

#### 나) 등교지도로 인한 교사-학생간 갈등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 복장 용모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등교 지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교사별 기준의 차이 및 설명없는 제한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의 적용, 친절한 안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기준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 하루 시작부터 시작하는 갈등

학생과 교사는 생활 지도 상황에서 많이 부딪친다. 아침부터 충돌한다. (고등학생 B)

복장이나 신발로 갈등이 많다.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선생님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고등학생 D)

✓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거나 설명이 없는 제한

학년별 적용 기준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중학생 A)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인데, 새로 오는 교사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적용하기 어려워하면서 이로 인한 오해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중학생 C)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중 자기들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기도 한다. (고등학생 D)

다) 교내 활동 규제에 대한 인식차

규정 및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한다.

특히 온라인 활동 및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데, 청소년으로서의 관심 주제에 대한 의제는 공개적으로 제기할 필요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 굳이 막아야 하는 다른 반 출입

안전 등을 이유로 출입 제한하지만,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또한 학생간 친구 관계도 학생이 관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고등학생 D)

반별로 정하고 있다. 학급마다 분위기가 다르며, 결과도 다르다. (중학생 C)

✓ 제한 이유를 모르는 온라인 채팅방 제한

제한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단톡방 제한은 초등학교 때 많았는데, 항상 의문이었다. 선생님은 사이버 폭력 발생 이라고 했다.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나, 제한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만 하다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학생 A)

✓ 우리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는 정치활동

정치에 관심있는 학생들도 주변에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은 적다. 정당 간담회 참여나 사회 활동 참여, 서명 운동 등이 진행되지만,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등학생 B)

중학생은 나이가 아직 안되지만, 의견을 내는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도 학생 입장에서의 의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중학생 C)

라) 논쟁적인 휴대폰 사용 제한

휴대폰의 소지 제한이나 수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 중 상당수가 휴대폰 소지 제한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휴대폰 및 디봇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해 수업 활용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 수업중 사용으로 인한 학습 분위기 훼손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는데, 수업중 뒤에서 문자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수업이 방해받는다. (고등학생 B)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솔직히 수업에 방해가 된다. (고등학생 D)

중학생은 나이가 아직 안되지만, 의견을 내는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도 학생 입장에서의 의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 기후위기 등의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중학생 C)

✓ 수업에 활용되는 휴대폰

수업에도 활용되고 이미 제한이 없어진 상황이라 제한하기 힘들다. 필기 대신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학교의 연락도 직접 받는다. 기출문제나 강의도 보고 그리고 교우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등학생 B)

수능 특강을 듣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걸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다. (고등학생 D)

마) 제도만으로 부족한 학생 참여

학급회의, 학생회, 공청회 등 다양한 학생참여를 위한 제도가 있어도, 학생 상당수가 참여 의지가 낮다.

참여 민주주의는 하나의 문화로서 학교내 민주주의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감하고 논쟁적인 의제부터 다루어야 하며, 단계별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제도만으로 부족한 학생 참여 의지

학급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고, 원탁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투표를 거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학생들의 참여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중학생 A)

참여 민주주의는 하나의 문화이며, 학교내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뿌리내려 있는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고등학생 D)

✓ 참여 역량의 강화

개인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회장단의 참여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 교사가 만든 문장의 수정이 거의 다이다. (고등학생 B)

학생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활동 무대 자체가 없다. 학생 임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반별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토론하는 것과 같은 무대가 필요하다. 이런 활동이 학생 자치로 이어진다고 본다. (고등학생 B)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교사가 오랫동안 맡아서 해오는 점도 중요하다. 그래야 원칙과 문화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교사 2)



## 나. 보호자

### 1) 진행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4명의 어머니가 참여하였으며, 두 분은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 2) 주제별 정리

#### 가) 가장 우려되는 휴대폰 사용

자녀와의 갈등 요인 중 가장 빈번한 것이 휴대폰 사용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사용시간외에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고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원 등 개인적 휴식 시간의 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았다.

#### ✓ 자녀와의 갈등요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큰 건 휴대폰 사용이다. 이로 인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이 줄었으며, 휴대폰만 보고 있다. (보호자 B)

게임을 주구장창 하고 있다. 언젠가는 지켜워지는 날이 있겠지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발등을 찍히고 있지만. 학교에서 규제를 해달라 부모가 못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보호자 C)

#### ✓ 휴대폰 사용 시간 제한 어려움

무엇보다 아이가 자기 조절이 안되는 점이 걱정이다. 나조차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되어 지금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10시까지 학원 갔다오면 제한하기 어렵다. (보호자 C)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휴대폰을 던지면서 반항했다. 그 이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호자 A)

✓ 휴대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어떤 내용을 보고 있나 걱정도 된다. 아이가 유튜브를 주로 보고 있어, 가끔 구독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가끔은 같이 보기도 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콘텐츠로 걱정은 된다. (보호자 C)

N번방 등을 생각하면 심각하다. 무엇보다 사회 시스템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잘 걸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자 A)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다. 책은 읽으면서 상상도 하고 머리를 사용하는데, 휴대폰은 그런 자극이 적다고 한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보호자 B)

## 나) 형식적 참여로 그치는 보호자 참여

규정을 포함한 학교 안내는 있으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안내나 통보 형식으로 느껴진다. 또한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견 제시에도 반응이 없거나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의 참여가 기획 단계부터 협의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 일방향적인 참여의 한계

학교에서 규정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가 왔다. 그러나 학부모회 결정 사항에 대한 통보가 대부분이다 (보호자 B)

학기 초 학교 예산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묻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의견을 내는데, 이에 대한 반영 여부나 답변이 없다. 또는 학기 말이나 예산 반영 시점에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뭔가 반영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보호자 C)

### ✓ 불투명한 학부모회

특별을 아는 학부모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한 인원이 모였다. 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학교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보호자 B)

학부모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많다. 회의 방식도 전달 중심이라 많이 부족하다. 공식적으로 학부모회가 있고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의지나 상황이 보호자마다 다양하다. (보호자 A)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중, 회장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 안했으면 한다'는 말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보호자 B) 초등학교가 가장 심하다. (보호자 D)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엄마들이 보통 학교에 대한 불만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편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자고 하여 글을 올렸는데 난리가 났다.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제기에 대한 적극 대응이 아닌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다. (보호자 A)

#### 다) 학생과 교사 중심의 생활규정

복장 용모 등을 포함한 학교 내 생활규정에 대해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에서의 규정은 학교생활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 학생 교사 중심의 생활규정

학교라는 영역에서 학부모가 생활규정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 3주체라고 하지만,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교생활은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호자 C)

3주체를 1 대 1 대 1로 비율로 반영하기보다, 보호자의 비중을 줄여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호자 A)

학생들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아이들 스스로 정하게 하면 좋겠다. 반별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스스로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서 하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스스로 정하기'(보호자 B)

##### ✓ 복장 용모 제한 완화

아이들은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많다. 매니큐어, 긴 손톱 등에 대해 별점을 주는데, 아이들에게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염색을 포함하여 개성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보호자 B)

아이들용 화장품이 다 나와있다. 그런데 규제를 한다. 학교에서만 규제할 뿐이지 사회에서는 다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제한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혹 학교에서 제한하려면 사회와 함께 일관되게 제한해야 한다. (보호자 C)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기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친구들에게 찢리는 장식은 안되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의를 했으면 한다. 그래야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같이 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보호자 A)

✓ 설명이 부족한 안내

학기 초에 안내가 왔다. 그런데 상벌점제에 대한 내용으로만 왔다. 이거 거기면 벌점 몇 점 하는 식으로. 생활규정 전반이나 상벌점 제도의 의도나 원칙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보호자 B)

## 다. 교사

### 1) 진행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다.

서울 경문고등학교에서 2시간 반 동안 진행하였다.

### 2) 주제별 정리

#### 가) 외롭고 취약한 학생

학생들간 괴롭힘이나 폭력 등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학생들이 우울감이나 자살 시도와 같은 내면적 어려움은 크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취약한 학생에 대한 보호에서 보호자들이 방어적 태도를 보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 개인화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줄어든 괴롭힘

중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 있었으나, 고등학교는 각자 경쟁으로 떠밀려, 자기 내면에 머물고 타인한테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다. 즉 괴롭힘 감소는 긍정적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교사 C)

학생들은 자기중심으로만 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굳이 괴롭힐 필요도 없고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도 '그냥 재 안 보면 돼'라는 마인드로 되어 있다. 서로 무시하는 관계를 만든다. 또한 휴대폰 사용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교사 A)

코로나 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폭이 대학입시와 연관되어 어느 일정 선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도 스스로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나 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워, 사회적 이슈로 크게 터지게 된다. (교사 D)

✓ 우울증 등 내면적 어려움에 갖힘 학생들

우울증 증가나 자살 시도 등 내면적인 문제는 커지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사회에서의 학생들의 이탈과 피해가 더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교사 C)

학생들의 자아가 더 세심하고 민감해졌다. 자해나 관계를 힘들어하고 우울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생활지도담당교사 보다 상담교사의 업무가 많아졌다. (교사 D)

자녀를 위클래스나 심리 검사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려도, '자녀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신뢰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학생 마음 건강을 조기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자살/ 자해 소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사 A)

나) 휴대폰 제한 이전에 제대로 된 정보교육

휴대폰 사용의 제한 여부보다, 휴대폰을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역량을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메일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하는 것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용 형태가 SNS나 인스타그램, 게임 등을 단순 소비형태의 사용에 한정되고, 자기 표현이나 상호 관계 형성, 성장에 연결되는 사용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내 휴대폰수거에 대한 논쟁점, 유해성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 정보교육의 재설계 필요

기본적 기능인 메일을 못 보내는 학생들이 꽤 있다. 그런데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 정보 교과서를 보면, 메일이나 문서 편집과 같은 기본적인 것은 없다. 교사나 보호자가 따로 가르치지 않는 이상 배울 기회가 없다. 정보 교과와 교육과정부터 다시 세팅해야 된다. (교사 A)

정보통신기기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이나 기초적인 활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본다.

인공지능 사회, 코딩 등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 AI 사용에서의 유의사항 등이 가르쳐야 할 우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교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교양교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의 ‘디지털 시민권’ 등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춰서 최소 1년 정도로 교육하면 좋겠다.(교사 C)

#### ✓ 논쟁적인 휴대폰 수거

1년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는 적이 있는데, 일부 학생이 수업시간에 몰래 사용한다는 것이다. 못 만지면 불안 증세를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교사 A)

쉬는 시간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C)

휴대폰 수거를 결정한 것 중 하나가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이다. 휴대폰 사용은 이를 크게 저해한다. (교사 A)

휴대폰은 학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나이와 시간을 정해서 담배금지처럼 법으로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교사 D)

#### ✓ 낮아지는 학력

좌우 개념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 휴대폰 사용 심화는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 A)

디지털 기기로 배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필요한 건 읽기와 쓰기 연습인데 디지털 기기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도를 못 본다. ‘카카오맵 보면 되는데 뭐 하러 그러죠?’라고 한다.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필요하다. (교사 C)

아이들이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한 실수가 많이 줄었다. 디지털 기기로 실수를 많이 걸러내게 된다. 도리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정보는 많이 접하지만 쓰는 글은 형편없다. 네이버 때문에 단어에 대한 단순한 뜻만 알지 용례를 모른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교사 C)



정보통신기술/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팩트 체크나 크로스 체크 등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 활용에 교육없는 단순한 기술 도입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교사 A)

#### 다) 규정과 인식의 차이

생활 규정과 인식조사간의 차이가 나타난 4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

##### ✓ 다른 반 출입 제한: 반 중심의 안전, 관계 형성의 필요

다른 반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외향적이며,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시끄럽다. 기존 반 아이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담임은 학급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본인 관점에서 타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D)

절도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담임이 지게 된다. (교사 A)

다른 반 애가 와서 시끄럽게 하면, 반 아이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통제가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 (교사 D)

1학년생들에게는 다른 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중학교 관계를 그대로 가져온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기존의 관계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 (교사 C)

##### ✓ 채팅방 개설 제한

일부 교사들은 카카오톡 단체방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카톡방 말고도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욕도 하고 공갈협박도 많이 일어난다. (교사 A)

온라인방이 폭파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이제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욕설 등도 언어폭력으로 걸리고,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이러한 제한에 대해 찬성했을 것이다. (교사 D)

✓ 정치/정당 활동의 한계

학생들의 정치/정당 활동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다. 학교 자체가 '탈정치'라는 사회적 요구에 갇혀있다. 그런 점에서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적다. (교사 C)

아이들이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교사 A)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교육은 불가능하다. 좋은 프로그램도 교사 한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는 해나가기 어렵다. (교사 D)

✓ 학생의 참여의 한계

서울시 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의견이 관철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휴대폰의 경우도 학생중 반대 비율 30% 정도 되며, 학생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교사 D)

오래된 사립학교의 경우, 과거의 성공 사례에 기대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C)

라) 교사와 보호자간 낮은 신뢰

학교 구성원간 갈등의 축으로 교사와 보호자 관계를 지목하고 있다. 교사와 보호자 간의 신뢰 하락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자신의 학창 시절에 갇힌 보호자

교사와 보호자간의 신뢰가 많이 하락했다. (교사 B)

보호자의 경우, 자신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야기를 나누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러한 소통이 어렵다. (교사 C)

저는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연락하라고 한다. 그러면 밤 늦게 연락이 온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렇게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이면서 안전하게 유지할 기준을 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 C)

학교장 상담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오는데, 그게 답 같지는 않다. (교사 B)

## 마) 기타

### ✓ 사고하는 수업의 필요

외우는 수업이 아닌 사고하는 수업이 많아져야 한다. (교사 2)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현실이 사회적 맥락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지식이 서로 연계되어 개념과 현실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 D)

아이들한테 주요 관심사에 연관된 진로 독서를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책 한권을 끝까지 제대로 읽는 것도 힘들어 했다. 사고하는 시간 자체가 아예 짝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정보/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 (교사 C)

읽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본다든지, 사고하는 시간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들이 많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되었다. (교사 D)

국어에서 조금만 문장이 달라져도 해매는 경우가 많다. (교사 C)

## 라. 모범사례 방문조사

### 1) 진행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운영에서 인권적이고 학생참여에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각각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담당교사 및 학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참여에 대한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2) 주요점

#### ○ 학생생활규정의 제정에서의 3주체의 관계

: 학생-보호자간 대화와 교사의 중간자 역할

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교사-보호자의 관계에서, 교사가 중간의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과 보호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척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이렇게 서로간의 생각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있어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 및 교사의 중간자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보호자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대표성을 50% 정도 유지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동의하는 사안은 통과되고 논쟁적인 사안은 통과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된다.

#### ○ 보호자와 관계

: 주체적 참여 대상으로서의 초대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학생에 대해 이해하고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호자와의 신뢰가 형성된다.

보호자를 3주체라고 하면서도, 변화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위험하다. 주체적인 활동으로 적극 초대해야 한다. 구색맞추기나 대상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연결고리

학교와 보호자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고리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 및 교내 매점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마을과의 연결로 확장되어 마을축제도 함께 하고 있다.

### ○ 휴대폰 수거

: 문화로서의 전환 필요

코로나 및 디벗의 도입 등으로 휴대폰 소지 제한은 실질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점에서, 사용 습관 및 매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규정의 폐지와 휴대폰 사용 규칙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조치이후 교사나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줄었다.

해당 약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과 별도로 반별 설명 및 의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 보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 모둠 학습

: 넘을 가치가 있는 높은 언덕

수학 등의 수업에서,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모둠학습의 경우 초기에 교사와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학습주도성을



가지도록 성장시키고 또래 친구들과의 협력적 학습이 진행된다면, 학생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학습을 참여하게 된다.

초기에 어려움이 크나, 학생들 스스로 진행되는 지점이 생겨나면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서로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

## ○ 학생 자치

### ： 학교 교육혁신의 중심축

학생자치가 활성화되면, 교사 및 보호자의 활동이 함께 동기화되며, 교육 혁신의 기폭제가 된다. 나아가 지역 내 협력이 연결된다.

부담이 되겠지만, 자치회의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구체적인 주제와 활동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반영한 변화가 학생들에게 피드백 됨으로서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 학생자치 역량의 확보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교사나 지역청 담당 장학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자치담당교사의 경우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 지침은 도움이 된다. 나아가 (1) 학교의 경우, 학생자치담당으로 비담임, 정규직 및 최소 5년 이상 경력 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2) 지역청 담당 장학사의 경우도 최소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 지역별 자치담당자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착사학교와 보호자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고리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 및 교내 매점 운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마을과의 연결로 확장되어 마을축제도 함께 하고 있다.

### 3. 소결

#### 1) 학생생활규정 관련 인식의 변화 확인

2016년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학생생활규정의 인지가 10% 정도 높아져, 학생 대부분이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 (84.7% → 94.3%)

○ 상벌점제 운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규정에서의 변화와 함께, 학생이 인지하는 상벌점제 운영한다는 비율도 68.7%(2016)에서 45.3%(2023)으로 대폭 줄었다.

○ 학생생활규정 구성(제·개정)에서의 학생 참여는 변화가 없다.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권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 2) 인식조사

학생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보호자 및 교사 인식조사를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생활규정 준수의 장애물로서의 일관성 없는 적용, 그리고 설명 및 동의 부족  
87.2%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지키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교사 및 학생에 따른 적용기준의 차이 (50.2%)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정책 의견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생활규정 구성에서의 학생의견을 반영한다는 답변이 57.0% 이며, 학생과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답변이 35.7%로 나왔다.

학생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정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충분한 동의 절차와 안내/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기에, 생활규정의 구성을 최소 년 1회 진행하는 루틴한 업무로 구성하여야 한다.

○ 규정 점검과 인식조사 결과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교내 활동

규정점검 과 인식조사에서의 간극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교내 활동에 대한 결과이다. 교내 게시물 승인 요구는 기존의 제한 내용이며, 다른 반 출입 제한 및 온라인 단체방 개설 제한은 새로이 생겨난 제한이다.

있음 (%)		규정	학생
교내 활동	다른 반 출입 제한	9.5	67.7
	교내 게시 승인요구	14.9	65.5
	온라인방 개설 제한/승인 요구	0.4	30.8

규정 없는 제한의 경우, 학생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학교나 교사의 편이가 따라 학생들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건강/안전권 및 학습/교육권의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는 다양한 모색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제한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과 학교현장(인식)의 간극은 주의해서 보완해야 한다.

○ 지역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지만,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두발 및 화장 등에 대한 제한에서 지역별 차이가 큰 곳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한 없음 (%)	광주시	충청남도	대구시	대전시
두발	69.7	62.9	10.4	9.5
화장/장신구	72.2	66.1	16.9	14.1

이처럼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도 대구시(46.4%), 대전시(4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한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규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사용에 따른 가족과의 관계, 학습과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수업중 제한과 같은 학습/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학생 일부는 휴식/점심시간의 휴대폰 사용으로 친구간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가족과의 관계 및 학습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휴대폰 사용에 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휴대폰 및 디지털기기,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연구와 정책, 교육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학생의 인권 및 성장,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별도로 학생과 보호자, 교사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인식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활동이 학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답변(%)	학생	보호자	교사
가족과의 다툼 있음	31.4	50.1	-
휴대폰 사용 학습에 도움 됨	76.2	37.5	47.8
학습환경 위해 제한 필요함	38.5	71.5	85.9

○ 활성화되지 못한 학생자치

학생회 개최 빈도가 대부분 학기당 1회 정도라고 답하고 있다(92.2%). 학기당 1회로는 학생회 자체의 안전 구성, 논의 및 의결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월1회 이상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학생회를 포함하여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에 대한 안내 및 협력망 구성이 필요하다.

### 3) 면접조사

학생/보호자/교사 대상 면접조사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자치/생활규정 담당자(교장 포함) 면접조사를 통해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한다.

#### ○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보호자 참여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참여는 논의 단계에서의 참여는 거의 없다. 결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나 통보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참여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기획 및 논의 단계에서 제안 및 제안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일부 학부모회의의 경우, 운영이 투명하거나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회장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보호자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의 확보 및 학교 주도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보호자의 참여 영역에 대해서도, 학교 내 생활규정은 학교에서의 활동에 기반하므로,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고, 보호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 ○ 외롭고 취약한 학생

학생생활규정과의 관련성은 적으나, 면접조사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로 학생 및 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생간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해 기존 관계중심이 강화되며, 교실 내 학생간 관계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학생들이 교실에서 관계를 맺어가기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을 포함하여 내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교사의 확충을 포함하여, 교실내 학생간 관계/협력을 구축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시급하다.

# 05

## 결론과 제언

---

1.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3. 제언



## 제5장 결론과 제언

### 1.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영향에 미치는 제도로서의 학교규칙을 점검하였다. 학교 규칙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내 생활 및 자치활동,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중 학교 요소 및 광역 시도별 10% 정도의 학교의 규칙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서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2017년 정책권고에 기반한 학교규칙의 변화

2016년 학교규칙 점검결과에 비교하면, 학교규칙의 학생인권 및 차별금지 명시,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 완화, 정치활동 제한 완화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40~60%대의 변화로서 완료형이 아닌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중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항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해당 권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그 외의 항목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 ○ 학생인권/기본권 보장 명시 확대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에서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가 2016년 22.1%에서 2023년 67.8%로 대폭 확대되었다.

##### ○ 차별금지 원칙 제시 확대

2016년에는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점검은 없었으나, 2023년 점검에서 보듯이 학생인권/기본권 보장과 함께 규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생생활규정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차별금지를 제시하고 학교가 2023년 67.6%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 용모 및 복장에 대한 제한의 완화

2016년 점검결과에서는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이 92.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 반

면, 2023년 점검결과에서는 평균 63%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어 30% 정도 학교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호한 표현의 제한은 2016년 83.8%에서 2023년 59.7%로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60% 이상의 학교에서 과도한 제한 규정이 남아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9)에서도 복장 및 용모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7)에서도 타인의 권리침해나 교육 목적에 국한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고시(2023)에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수업/학습권의 보장 및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근거하도록 하면서, 추가 근거로 품성과 예절, 건강한 학교 문화라는 모호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규정 제·개정시 학생의결권 확대

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결권 보장(88.8%) 및 학생의결권 1/3이상 보장(70.2%)로 확대되어, 규정에 관련된 학생참여권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의 개선

2019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이어 2020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이 확대되는 법률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생활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2016년 83.1%에서 2023년 22.1%로 대폭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별점조항으로 두고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 40개교, 중학교 68개교로 총 108개교가 남아있으며,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거나 제한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도 50개교가 있었다.

## 나. 지역별 차이의 확인

학교규칙 점검결과를 학교요소 및 지역요소에 따른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요소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 광역 시·도간 생활규정의 현격한 차이

광역 시·도 지역구분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정에서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인권/기본권 보장에서는 광주시, 경상남도의 경우 모든 학교가 규정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대전시 학교는 7% 가량만이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점검 항목 대부분에서 광주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대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등은 제한이 많고, 인권보장하는 규정이 적게 나타났다.

### ○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 확인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규칙의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지역 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도의회 본회의 상정까지 간 지역(논의 유)과 상정 자체가 되지 못한 지역(논의 무)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조례가 본회의 상정까지 간 지역의 경우, 강원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례 교육청의 제정 시도와 회기종료로 인한 폐기, 지역단체의 발의를 통해 2차례 제정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서명 등 주민참여가 함께 진행되면서 학교 및 지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는 주민참여 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민과의 논의과정이 가지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제도와 함께 인권문화라는 환경적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유’, ‘논의 무’로 지역을 크게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학교규칙 점검 + 인식조사 둘 다에서, ‘제정’ 및 ‘논의 유’ 지역과 ‘논의 무’ 지역 간의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권/기본권 보장 등의 규정은 ‘논의 유’ 지역이 ‘제정’ 지역보다 많은 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다.

## 다. 교육부 고시에 의한 변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전국의 학교에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학교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2023년 12월 말 기준 학교규칙을 개정한 학교는 198개교(36.8%)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강원도, 대전시 등의 학교에서 개정을 많이 하였다. 학교규칙의 개정에 대한 부담이 학교현장에서 있었으나, 이번 고시에서의 행정절차 요건 완화와 함께 교육청의 안내 등이 개정작업을 촉진했다.

그럼에도 고시에 따른 개정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학생인권보장의 방향으로 규정이 작게 변화하였으며, 분리조치의 도입 외에 변화가 적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부고시로 인한 과정을 통해 확인한 점은 (1) 교육부 고시 및 법률은 생활규정 개정의 계기가 되지만, (2) 학교별 학교규칙의 구체적인 변화는 구체적 안내와 학교내 구성원간의 이해가 함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학교규칙 점검을 한 동일한 학교의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식조사 및 구성원별 집단면접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 내 차별환경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2016년 대비 제한적 인식의 변화

2016년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 점검에서 보여준 변화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학생생활규정 인지는 94.3%로 향상되었으며, 상벌점제 운영한다는 답변은 45.3%로 20% 이상 줄었다. 이처럼 특정 항목에서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규정 점검에서와 비슷하게 학생자치활동이나 참여권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적은 편이다. 그리고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과정에서의 학생참여는 규정상으로는 변화가 있었으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참여권 변화는 거의 없다.

### 나. 2023년 인식조사 요약

2023년 학생 인식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알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교사나 학생에 따른 자의적 적용이 줄어들고,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규정 없이 학교나 교사가 적용하는 제한이 있다. 다른 반 출입 제한(67.7%) 및 온라인 단체방 개설 제한(30.8%) 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규정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학생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학교나 교사의 편의가 따라 학생들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용모/복장의 제한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앞서 규정 점검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항목이었으며,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용모/복장에 대한 제한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용모/복장 제한을 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경우, 대전시, 대구시는 90% 정도인 반면, 광주시, 충청남도도 30% 정도를 보여, 60%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시(46.4%), 대전시(48.5%)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이 있다는 답변이 학생 31.4%, 보호자 50.1%로 휴대폰 사용이 상당한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 간의 20% 정도의 차이는 보호자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sup>29)</sup>

다섯째, 휴대폰 사용에 다른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높다(76.2%), 그러나 동시에 학습환경을 위해 휴대폰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8.5%가 된다. 특히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수업에서의 방해요소로 본다는 시각으로 학습/교육권 보장을 위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호자와 교사의 답변은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적 관계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갈등이 학생 - 보호자/교사 간에 있으며, 무엇보다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구성원간의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

여섯째, 학생자치활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는 학생회 개최 빈도이며, 학생은 학생회가 학기당 1회 정도 열린다고 답하고 있다(92.2%). 학생회가 안전구성부터 논의 및 의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교/학생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학기당 1회라는 개최 빈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자치기구(학생회)가 형식적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학생회 개최빈도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학생회를 포함하여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에 대한 안내 및 협력망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9)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평일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으로, 중학생의 경우 사용시간이 클수록 가족과의 갈등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다. 면접조사 요약

연구과정에서 학교구성원 그룹별 면접조사 및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나 학생 모두 교문지도에 대해 불만이 컸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등교시간에서의 교문지도, 특히 두발/복장 등에 대한 지적은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불쾌하고 서로간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무엇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과의 관계를 가질 기회를 줄인다고 아쉬워한다. 용모/복장을 지적하기 전에, 해당 학생의 어려움을 듣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둘째, 학생회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활동을 학교에서는 제도나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학생 대부분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를 바꾸어 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참여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나타나고, 학생회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도만으로는 학생자치/참여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성과부터 경험하고 하고, 초기단계부터 학생의견을 시작점으로 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셋째, 학생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생활규정과의 관련성은 적으나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로 학생 및 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학생간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휴대폰 사용 등으로 인해 기존 관계중심이 강화되며, 교실 내 학생 간 관계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간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된 학생들이 교실에서 관계를 맺어가기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을 포함하여 내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교사의 확충을 포함하여, 교실 내 학생 간 관계/협력을 구축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시급하다.

넷째, 휴대폰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교육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코딩 교육(기능 중심) 보다 자신이 접하는 정보의 검색 및 검증, 해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더 정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학생을 보면,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학생도 절반을 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생의 학습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기능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3. 제언

학교규칙 점검 결과 및 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에서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 보장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정비

2023년 교육부고시 제5~8조에 생활지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7조(인성과 대인관계), 제8조(그 밖의 분야)에서 제시한 근거는 '건전한', '품성', '예절'과 같은 모호한 표현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표현이 많다.

해당 조항에서 학교 교육 및 안전,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기준을 벗어난 범위에 대한 근거는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근거의 경우,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에 하나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조문	교육부 고시(2023)	개정고시안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li> <li>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li> <li>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삭제〉</li> <li>추가: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li> <li>욕설 등 언어 폭력</li> <li>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li> </ul>
제8조(그 밖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li> <li>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li> <li>비행 및 범죄 예방</li> <li>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li> <li>〈삭제〉</li> <li>비행 및 범죄 예방</li> <li>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li> </ul>

#### 2) 신규 규정의 구성 원칙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 2023년 조사에서도 '다른 반 출입 제한', '온라인 단톡방 금지' 등과 같은 제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위한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나 교사의 편이에 따라 생겨나는 규정과 학교현장(인식)의 간극은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규 규정의 구성 원칙이나 학교 및 구성원이 공유하는 점검지침이 필요하다. 간략히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지점이 될 수 있다.

- ✓ 건강/안전권 및 학습/교육권의 확보를 위한 제한인지 여부
- ✓ 학생과의 다양한 모색과 협의 여부
- ✓ 최소한의 제한인지 여부
- ✓ 해당 제한으로 인해 특별히 차별/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룹 인지 여부 및 보완책 마련 여부

### 3) 지역단위 학생인권/학생생활규정 논의 활성화

#### ○ 학생인권/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한 주민참여와 활동, 그리고 지역 내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가 학교규칙의 규정 및 인식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및 기본권 보장 및 학생참여조항의 경우, ‘논의 유’ 지역이 더 높은 규정 제정과 인식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지는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지역 내 인권문화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변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및 학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역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 지역단위 학생생활규정 정기 점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점검 자체가 학교의 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이 매년 갱신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 해당년도 주요 점검 항목 구성 및 (2) 지역단위 모니터링 진행이 하나의 방안이다.

### ✓ 주요 점검 항목의 구성

생활규정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을 중심으로, 매년 주요 점검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중요 지점을 확인하고 바꾸어가는 과정이 되며, 이러한 선명한 변화가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1) 학생의 생활규정 제·개정 참여, (2) 등교시 교문지도, (3) 다른 반 출입 제한 등을 중심으로 2024년에 점검하는 것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학생인권 중심의 한 해설 및 예시 및 대안을 정리하여 점검 및 점검결과 통지를 통해, 학교별 재정을 도울 수 있다.

### ✓ 지역단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단체 및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별 협력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내 학교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기관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제한규정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제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규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4) 학생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법률로서 보장되었다. 이는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학생이자, 환경 및 사회변화의 주도적 활동을 맡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학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학교규칙 점검에서 확인되듯이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 자체가 없는 학교가 158개교(39.4%)에 이른다. 제한 규정이 없는 학교도 학생의 정치활동의 유형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교외 단체활동에 대해서도 불량단체 가입 금지 정도로 그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화단체를 포함한 학생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정치/정당 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최소한의 제한을 포함하되, 학생의 보다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시민이고, 학교가 민주적 기관이라는 점에 기반해야 한다. 교육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정치/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동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으며,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의 경우, 최소한의 활동 보장을 위한 제한적 성격의 가이드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 구성시, 기후 위기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교외 활동도 함께 보장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규정 안내가 필요하다.

## 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앞서 제시한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은 많지 않음에도 학생자치활동 자체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 경험 및 참여에 따른 피드백 및 성취감을 가질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회의 제안을 기초하여, 활성화를 위한 아이니어,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점검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적 학생회 공간, 전체 학생대상 소통 방법 마련(온라인 방, 온라인 제안, 투표 등), 독립적이고 일정한 예산 확보, 의결 사항의 집행 절차에서의 독립성 등

또한, 학생회 및 소위원회 등의 활동 빈도나 형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6)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정책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규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기준이자 교사의 생활지도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매년 구성원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학생생활규정은 최소한 매년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학교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에서, 학교규칙의 개정과정에 대한 업무 부담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몇 가지 어려운 점을 정리하면, (1) 학교내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적음, (2) 교육 3주체의 합의 과정의 경우, 보호자 및 학생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업무 지원 정책 및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학생생활규정 개정 정기화

최소 년 1회 정도의 학교규칙 개정 과정을 학교 정규 일정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진행을 위한 지원 및 가이드를 구성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1) 개정 요구 항목의 접수, (2) 개정안 구성 및 투표, (3) 회의 상정 및 의결 등을 기존 학교 일정과 통합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규정에 대한 안내 등도 포함하여 하나의 일정 프로세스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이면서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기반한 규정 제정이라는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학교 내 업무분담을 통한 지원 및 /지역청의 지원도 연계하도록 준비한다.

### ○ 학생생활규정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건강/안전권 보장 및 학습/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안내가 필요하다. 업무담당교사에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전파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의 위상을 가지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처럼 학생생활규정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 학생생활규정 지원단 운영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학교별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별로 요청에 따라 지원단이 해당 규정의 내용 및 해설, 개정과정의 진행에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활성화 정도가 달랐다.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 등에서, 생활규정의 개정 필요성 및 지원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1년 이상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 업무담당자대상 교육이나 안내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대화방을 만들어 지원단과 업무담당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 06

## 참고문헌 및 부록

---

1. 참고문헌 .
2. 부록
  - 학생생활규정 점검표
  -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학생용)
  -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보호자용)
  -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교사용)



# 1. 참고 문헌

- 경기도교육청 (2023). 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매뉴얼
- 교육부 (2014).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중등용
- 교육부 외 (2022).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안내서
- 구슬이, 정익중 (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해 본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과 권리, 25(4)
- 구정화 (2017). 중·고등학생의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학교환경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7).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23).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3)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외 (2021). 대전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017). 부산소재 고등학교규칙 모니터링 최종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정보원 (2023).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학생자치 우수사례집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3년 개정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1).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역)
- 전라북도교육청 (2020). 2020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서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21).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정 개정 모델 개발 연구

한희정 (2021). 학교 공간의 혐오·차별 현상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2017). Human Rights Friendly Schools Toolkit  
Council of Europe (2022). Digital Agenda 2022-2025 Protect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digital environment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UNESCO (2023).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3\_Technology in  
Education: A Tool on Whose Terms?

## 2. 부 록

### 가. 학생생활규정 점검표

- ✓ 점검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해당 문항을 기울기체로 표시하였다.
- ✓ 점검표에 대한 세부 설명은 명조체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 이하점검표 -----

소속		학교명	
점검일자		점검자	
진행관련사항			

- ✓ 점검은 [예/아니오]를 기본으로 답변하되, 해당 문항에 대해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타를 (중복)선택한 후, 간략히 기입한다.
- ✓ 기입하는 내용은 연구진과 협의하거나 재검토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 1. 전반적 검토

항 목	점 검		
	예	아니오	기타
<b>1. 규정 목적</b>			
1) 규정의 목적이나 총칙으로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 징계절차, 선도 중심의 목적 구성 > 아니오			
2)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연구자 주관적 판단 필요)	쉽다	쉬운편이다	어려운편이다 어렵다
<b>2. 규정 구성에서의 참여</b>			
1)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위원 참여 조항이 있다. • 의결권 없는 참관/발언권 > 아니오, +기타 표시			
2)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에서 학생이 1/3 이상이 된다.			
3)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의결 과정 조항이 있다. • 전체 학생 대상 토론회(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실시 등.			
4) 상벌점제나 규제항목의 구성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나 의결 과정 조항이 있다.			
<b>3. 용어 표현 (해당 표현은 기타란에 표기한다)</b>			
1) 생활규정의 명칭 및 내용에 비인권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비인권적 용어/표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한 경우, 해당 용어를 기록한다. • 예: 인성, 선도, 바른생활, 공손한, 존경/공경 등			
2) 규정내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의 모호한 표현이 학생의 활동/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다룬다. • 예: 학생답지 못한, 품행, 불미스러운, 학생 신분, 불건전, 요란한, 풍기문란 등			



4. 차별금지	예	아니오	기타
1) 규정에서 차별금지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2)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			
2)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다.			
3) 학생 간의 교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다.			

## II. 교내 활동 관련 검토

항 목	점 검		
1. 학생 자치 활동	예	아니오	기타
1) 독립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 소집 등의 활동에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한 지 여부</li> <li>• 학생회 의결사항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학교장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gt; 예. + 기타 표시</li> </ul>			
2) 학생회 입후보 조건에서 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장 승인이 요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 입후보 조건으로 교사의 추천 등의 조건이 있거나, 학생의 추천 외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gt; 예</li> <li>• 상벌점이나 징계사항을 출마 제한 요건으로 두는 경우 &gt; 예</li> <li>• 선거후 학교장 승인을 조건으로 두는 경우 &gt; 예. + 기타 기록</li> <li>• 선출후 교내 징계로 인한 자격박탈의 경우 &gt; 아니오, + 기타 기록</li> </ul>			
3)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을 보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실 사용에 교사의 승인이나 열쇠를 받아야 하는 경우 &gt; 아니오</li> </ul>			

4)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이 있다. • 선도부나 (바른)생활지도부와 같은 명칭으로 학생생활지도를 대행하는 활동을 파악하며, 학생자치회 부서목록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b>2. 교내 활동</b>	<b>예</b>	<b>아니오</b>	<b>기타</b>
1) 다른 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교사 허가나 교육활동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 예 • 특별실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교내 게시나 자료 배포에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차별/혐오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게시 금지나 압수 > 아니오, + 기타 표시 • 인권침해를 예외로 하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제한을 확인한다.			
3) 온라인 단체방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4) 학내 동아리 개설 및 활동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 Ⅲ. 교외 활동 관련 검토

항 목	점 검		
1. 교외 활동	예	아니오	기타
1) 정치 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다			

<p>2)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에 따라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로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을 포함한다.</li> </ul>			
<p>3)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교외 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행동(폭력, 약물 등)의 교외 활동에 대한 제재 규정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으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gt; 해당 규정은 검토에서 제외</li> </ul>			
<p>4) 집회/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교외 활동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p>			

#### IV. 용모/복장 및 소지품 관련 검토

- 관련된 세부 항목중에서, 학생인권침해가 크면서 안전이나 학습권, 교육권 보호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 학교폭력(흡연, 음주, 약물, 절도 포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루지 않는다.

항 목	점 검		
	예	아니오	기타
<b>1. 용모/복장</b>			
<p>1) 모호한 표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표현 &gt; 기타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비싼 외투, 학생 신분엔 맞은, 과도한 등</li> </ul>			
<p>2) 머리 퍼머나 염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색( 밝은 염색) 등의 구체적 제한은 기타에 표기</li> </ul>			
<p>3) 장신구 및 화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체 금지의 경우 &gt; 예</li> <li>• 화려한 장신구, 흔들거리는 귀거리, 과도한 피어싱와 같은 제한의 경우 &gt; 예. + 기타 기록</li> </ul>			

4) 신발에 대한 제한이 있다. • 안전을 기준으로 샌달이나 높은 굽 신발 제한 > 아니요, 기타 기록				
5) 스타킹, 양말, 속옷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6) 반한 외투, 등 교복외 복장에 대한 제한이 있다. • 실내에서의 외투 탈의 등 > 예, 기타 기록				
<b>2. 소지품/ 휴대폰</b>		<b>예</b>	<b>아니오</b>	<b>기타</b>
1)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정기적, 일괄적, 비동의 소지품 검사 금지한다.				
2) 소지품 금지 물품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 안전 등을 위해 금지하는 물품외에 과도한 금지 품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예, 기타 기록				
3) 휴대폰 교내 반입을 금지/ 등교시 일괄 수거하는 규정이 있다.				
4) 규정위반하면 휴대폰 압수하는 규정이 있다.			→ IV	
4-1) 압수된 휴대폰의 반환 규정이 있다. 참고: 2회 이상 압수시 반환규정이 다른 경우, 이 기준으로 판단	별도의 반환규정이 없다	수업종료 후 반환	당일 반환	다음날 이후 반환한다

#### IV. 징계/상벌점제 관련 검토

항 목	점 검		
1. 징계	예	아니오	기타
1) 징계 대상 학생/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안내/보장 한다. • 의견서 제출이나 소명 기회 제공을 포함한다.			

2) 징계 사실이 공표된다. • 징계 사안 및 결과에 대해 학교 게시물이나 온라인 게시판등을 통해 공개된다. 익명처리된 공표도 해당된다.			
3) <i>재심 절차가 안내되고, 규정되어 있다.</i> • 징계조치결과에 대해, 학생/보호자에 통지될 때 재심절차에 대한 안내가 되어야 하며, 규정내 재심 신청, 운영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무단결석 누적 등을 사유로 퇴학조치할 수 있다. • 징계표에서, 퇴학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 흡연, 음주 등의 누적 등을 사유로 퇴학조치할 수 있다. • 징계표에서, 퇴학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b>2. 상벌점제</b>	<b>예</b>	<b>아니오</b>	<b>기타</b>
1) 상벌점제가 있다. • 생활평점제 등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1-1) 상벌점의 연도 단위 혹은 학기 단위 말소 조항이 있다. • 흡연/음주 등 일부 항목만 3년 누적으로 징계기준을 구성하는 경우> 예, + 기타 표시			
1-2) 학급단위로 출결이나 학교생활 평가를 한다. • 반 단위의 상벌점제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대한 이해보다 집단적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1-3)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 퇴학처분을 구성하고 있다. • 교복미착용, 실내화, 인사 등 가벼운 사안임에도, 단순히 누적 벌점으로 한 중징계는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			
2)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 상벌점제 등에서 벌점 감소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예	아니오	기타
1) 등학교시 자가용/택시/오토바이의 이용 제한 규정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토바이 면허증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gt; 예, 기타 기록</li> <li>• 안전을 이유로, 특정지역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gt; 아니오, 기타 기록</li> </ul>			

## 나.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학생용)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인식 사전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권보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학생(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1) 현재 학교알리미에 등록된 규정의 내용 점검과 (2) 학교규정에 대한 학생/교사/보호자의 인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점검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성되어 있는지,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지 여부를 연구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인식조사는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생들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각 학교의 해당 규정이 학생 인권을 지키는데 적절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사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에 앞서, 참여하신 분들의 여러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하기 위한 조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알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세요.

응답한 내용은 관련 법(「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비밀로 지켜지며, 이 연구 목적 외 다른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 1. 학교규칙(학생/학교생활규정) 인지

“학교규칙”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모아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학생들의 학교내 생활에 대한 규정 (복장, 활동 등)을 규정하는 것을 학생생활규정 또는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일부학교에서는 선도규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학생생활규정]으로 표현합니다.

1. 나는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일부 규정을 알고 있다	세부 규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문항1 - ①, ② 답변자 대상) 만일 학교규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답변 가능)

- ① 학교/주변에서 설명이나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 ② 규정 설명이 어려워서
- ③ 규정 설명이 모호해서
- ④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적어서
- ⑤ 기타 \_\_\_\_\_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상관없다	별 상관없다	아는 것이 좋다	알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를 포함하여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3-1. (문항3 - ①, ② 답변자 대상) 학생생활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답변)

- ① 내 행동에 대해 간섭하는 내용이 많아서
- ② 내 공부나 발전에 도움이 안되서
- ③ 교사에 따라 적용이 너무 달라서
- ④ 규정의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 ⑤ 규정에 대해 나를 포함한 학생들의 동의가 없어서
- ⑥ 기타 \_\_\_\_\_

3-2. (문항3 - ③, ④ 답변자 대상)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답변)

- ①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 ② 친구들이 지키므로
- ③ 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므로
- ④ 수업 및 학교 분위기를 위해
- ⑤ 학생과 교사 등이 함께 정해서
- ⑥ 문제를 일으키 싫어서
- ⑦ 기타 \_\_\_\_\_

4.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1. (문항4 - ① 답변자 대상) 학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참여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 ①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 ② 토론회 등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 ③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다
- ④ 교내 게시물이나 토론방 등에서 의견을 적거나 동의 의견을 적었다.
- ⑤ 기타 \_\_\_\_\_

5.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나아지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요? 간략히 제시해주세요.

6.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 환경에서 차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습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학생간 교제시 겪는 불이익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의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제시해주세요.

## II. 학생생활규정 - 복장/용모/교내활동

8.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음의 제한이나 처벌(벌점포함)조항이 있나요?

내 용	예	아니오
1) 머리 퍼머나 염색을 제한한다		
1-1) (1에서 예 답변한 경우) 탈색이나 원색/밝은색 염색을 제한한다		
2) 기초화장이나 귀볼에 붙는 귀걸이외에는 제한한다		
2-1) (2에서 예 답변한 경우) 색조화장은 허용한다		
2-2) (2에서 예 답변한 경우) 사고위험성이 있는 장신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허용하는 편이다.		
3) 등교시 용모/복장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다.		
3-1) (3에서 예 답변한 경우) 등교 지도를 학생(학생회)가 하고 있다.		

9.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음의 제한이나 처벌(벌점포함)조항이 있나요?

내 용	예	아니오
1)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 교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2) 교내 게시나 자료 배포시에 담임 등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3) 차별/혐오 및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게시는 제한되고 있다.		
4) 반이나 학교단위 온라인 단체방(채팅방) 개설이 금지되어 있거나 승인이 필요하다.		
5) 정당이나 정치/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의 가입 등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 (5에서 예 답변한 경우) 만18세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10.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제한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일과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나요?

등교시 제출하거나 보관함에 둔다	수업중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이 없다	시험기간에만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12. 규정을 위반한 휴대폰 사용시 다음 중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중복 답변 가능)

입수하지 않는다		입수당한다			
벌점 없음	벌점 있음	수업종료후 돌려받는다	하교시에 돌려받는다	다음날이후 돌려받는다	벌점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13. 휴대폰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휴대폰/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가족과 다툼 적이 있습니까?				
2) 휴대폰/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3)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폰이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참여자 정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교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특목고

4.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공립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 ① 공립 ② 사립

5.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공학여부는 어떠한가요?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6. 귀하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경남  
⑪ 경북 ⑫ 전북 ⑬ 전남 ⑭ 충북 ⑮ 충남  
⑯ 제주 ⑰ 세종

## 다.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보호자용)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조사(보호자용)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인권보장에 영향을 주는 학생(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규정에 대한 학생/교사/보호자의 인식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인식조사는 보호자분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에서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을 지키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숫자로 변환하여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

문항은 약 30개이며,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 문항들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거나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 1. 학생생활규정 인지

“학교규칙”중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규정(복장, 활동 등)을 학생생활규정 또는 학교생활규정 (또는 선도규정)이라고 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학생생활규정]으로 표현합니다.

1.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포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 ① 안내를 받은 적 없다
- ② 간단한 안내를 받았다
- ③ 규칙/규정 자료를 받았다
- ④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 ⑤ 기타 \_\_\_\_\_

2.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몰라도 된다	별 상관없다	아는 것이 좋다	알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3-1.
- ② 없다

3-1. 학교규칙/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석했습니까? (중복 답변)

- ① 설문조사 참여
- ② 토론회 등 관련 회의 참석
- ③ 회의에서 의견 제시



④ 게시물/ 토론방에서 의견제시나 동의

⑤ 기타 \_\_\_\_\_

## II. 복장/용모/교내활동 제한

4.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머리길이, 머리모양, 염색, 퍼머 등 용모 관련 제한 사항이 있다.				
2) 교복만이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자유롭다.				
3) 화장이나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4)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규정이 적절한가요?				

5. 학생생활규정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 (중복 선택)

- ① 되도록 바꾸지 않아야 한다
- ② 사회변화에 맞추어 바꾼다
- ③ 학교운영책임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 ④ 학생,보호자,교사 합의로 바꾼다
- ⑤ 학생과 교사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 ⑥ 기타 \_\_\_\_\_

6. 휴대폰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등교시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반입을 금지하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등교시 일괄수거
- ④ 기타 \_\_\_\_\_

2) 평일 자녀는 휴대폰/정보통신기기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 ① 2시간 이내
- ② 2~4시간
- ③ 4~6시간
- ④ 6시간 이상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 휴대폰/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자녀와 다툼 적이 있습니까?				
4) 휴대폰/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폰이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Ⅲ. 학교 참여

7. 학교 상황에 대한 안내 및 소통이 원활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7-1. 학교와의 소통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2개 이내 선택)

- ① 담임교사와의 통화
- ② 담임교사와 소통(상담교사 포함)
- ③ 학교 문자 메시지
- ④ 학교 안내문
- ⑤ SNS/채팅방 등
- ⑥ 기타\_\_\_\_\_

8. 보호자간의 소통이 원활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8-1. 보호자간 소통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2개 이내 선택)

- ① 학부모회
- ② 학부모 비공식 모임
- ③ 학부모 소통방(SNS 등)
- ④ 별로 소통하지 않는다
- ⑤ 기타 \_\_\_\_\_

9.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정 등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와 학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아버지/할머니 ④ 형제자매/친척 ⑤ 기타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특목고 ⑥ 모른다

4.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공립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③ 모른다

5.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공학여부는 어떠한가요?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④ 모른다

6. 귀하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경남  
⑪ 경북 ⑫ 전북 ⑬ 전남 ⑭ 충북 ⑮ 충남  
⑯ 제주 ⑰ 세종

## 라.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 설문지 (교사용)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조사(교사용)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인권보장에 영향을 주는 학생(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규정에 대한 학생/교사/보호자의 인식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인식조사는 교사분들의 학교 경험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을 지키는데 적절한지,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숫자로 변환하여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

문항은 약 30개이며,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문 문항들은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거나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평화인권교육센터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로 질문해주세요.

평화인권교육센터 \*\*\* 연구원 02-2069-1210 / phrcenter@daum.net

## 1. 학생생활규정 인지

“학교규칙”중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규정(복장, 활동 등)을 학생생활규정 또는 학교생활규정 (또는 선도규정)이라고 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학생생활규정]으로 표현합니다.

### 1. 귀하는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일부 규정을 알고 있다	세부 규정을 알고 있다
① ->1-1	② ->1-1	③	④

#### 1-1. (문항1 - ①, ② 답변자 대상) 만일 학교규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답변 가능)

- ① 학교/주변에서 설명이나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 ② 규정 설명이 어려워서
- ③ 규정 설명이 모호해서
- ④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적어서
- ⑤ 기타 \_\_\_\_\_

### 2.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몰라도 된다	별 상관없다	아는 것이 좋다	알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 3.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3-1	② ->3-1	③ ->3-2	④ ->3-2

3-1. (문항3 - ①, ② 답변자 대상) 학생생활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답변)

- ① 내 공부나 발전에 도움이 안되서
- ② 선생님마다 기준이 달라서
- ③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 ④ 나를 포함한 학생들의 동의가 없어서
- ⑤ 기타 \_\_\_\_\_

3-2. (문항3 - ③, ④ 답변자 대상)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로 답변)

- ① 학생의 의무이므로
- ② 친구들이 지키므로
- ③ 선생님이 지도하므로
- ④ 수업 및 학교 분위기를 위해
- ⑤ 학생과 교사 등이 함께 정해서
- ⑥ 문제를 일으키 싫어서
- ⑦ 기타 \_\_\_\_\_

4.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5.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5-1. 학교규칙/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효과적일까요? (보기의 기타의견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 ① 교내 설명회 및 안내
- ② 교내 게시판을 이용한 안내/투표
- ③ 온라인 토론방 운영
- ④ 설문조사 및 온라인 투표
- ⑤ 기타 \_\_\_\_\_

6.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묻습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장애학생이 겪는 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학생간 교제시 겪는 불이익이 있다.	①	②	③	④

## II. 복장/용모/교내활동 제한

7.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다음의 제한이나 처벌조항이 있나요? (별점 포함)

1) 머리 퍼머나 염색을 제한한다 (복수 선택)

- ① 제한하지 않는다
- ② 머리 길이 제한이 있다
- ③ 탈색이나 여러색 염색을 금지한다
- ④ 과도한 퍼머를 금지한다
- ⑤ 퍼머나 염색을 일체 금지한다
- ⑥ 기타 \_\_\_\_\_



2) 화장이나 장신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복수 선택)

- ① 제한하지 않는다
- ② 기초화장은 허용한다
- ③ 작은 귀걸이는 허용한다
- ④ 링 귀고리 등은 금지한다
- ⑤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 ⑥ 기타 \_\_\_\_\_

내 용	예	아니오
3) 등교시 교문지도를 하고 있다	->3-1	
3-1) 등교 교문지도시 학생(회)이 함께 하고 있다		
4) 학생이 다른 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5)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자료 배포시에 교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6) 학생들에게 반이나 학교단위 온라인 단체방 개설이 금지되어 있거나 승인이 필요하다		
7) 만16세 이상 학생들이 정당이나 정치 및 사회 활동 단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정당이나 정치 및 사회 활동 단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과도하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9.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나요?

일과중 소지 금지	수업중 사용 제한	제한이 없다
①	②	③

10. 규정을 위반한 휴대폰 사용시 다음 중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중복 답변 가능)

- ① 주의를 받는다
- ② 수업종료후 돌려받는다
- ③ 종례후 돌려받는다
- ④ 다음날 이후에 돌려받는다
- ⑤ 벌점을 받는다

12. 휴대폰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휴대폰/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3)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폰이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Ⅲ. 학생자치 및 참여 활동

13.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예	아니오
1) 학생회장이 출마하기 위해 교사나 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2) 학급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담임의 추천이 필요하다.		



## [참여자 정보]

여러분께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자율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특목고

4.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공립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5.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공학여부는 어떠한가요?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6. 귀하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경남  
⑪ 경북 ⑫ 전북 ⑬ 전남 ⑭ 충북 ⑮ 충남  
⑯ 제주 ⑰ 세종

##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쇄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 2125-9647

F A X | (02) 2125-0929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mailto:research@humanrights.go.kr)

제작 | 평화인권센터

ISBN 978-89-6114-995-2 93370 비매품